

유보통합 이후 유치원·어린이집 승급·연수체계 마련 연구

강은진·김근진·김정숙·윤민아·손형지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유보통합 이후 유치원·어린이집 승급·연수체계 마련 연구

저 자 강은진 김근진 김정숙 윤민아 손형지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강은 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근 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정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윤민아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손 형 지** 육아정책연구소 계약직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4-03

유보통합 이후 유치원·어린이집 승급·연수체계 마련 연구

발행일 2024년 11월 발행인 황옥경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한국장애인콘텐츠협회 070) 7733-2780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5941-00-0 93330



•• • 머리말

그동안 유보통합을 추진하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관리체계 일원화와 교원자격 통합이었다. 영유아의 첫 출발선에서 교육과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교원의 질이 제고되어야 함을 알기에 교원의 전문성 상향평준화를 위한 방안 은 더욱 꼼꼼히 챙겨가야 할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4년 6월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과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현행 유치원 교원과 보육교사 교직원 승급 제도 및 연수 체계의 법과 현황 비교를 통해 통합 자격 부여와 연수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시나리오를 구성해 전문가들의 구체적 의견과 고민을 나누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화된다.

유보통합을 위한 통합법이 제정되기 전에 자격통합과 연수를 위한 체계와 운영, 교원들의 이력관리 방안은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을 위한 이수 신청부터 이력 관리까지 유치원 교원과 보육교직원 간의 경력 관리와 연수의 체계가 달랐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유보통합 이후 유치원 교원과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되길 희망하며, 어렵게 연구에 참여해준 전문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본 보고서를 통해 영유아 교원 자격 통합의 방향성과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길 희망한다.

2024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황 옥 경

요	<u> </u>	1
Ι.	. 서 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 내용	10
	3. 연구 방법	11
	4. 연구의 한계	12
Π.	. 연구 배경	15
	1.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15
	2. 현행 유치원 교원과 보육교사 교직원 승급 제도 및 현황 비교 …	
	3. 현행 유치원 교원과 보육교직원 연수 체계 비교	
	4. 유보통합 후, 현직 교원 통합에 대한 선행연구	
Ш.	. 영유아교원 통합자격 부여에 대한 전문가 조사	93
	1. 통합자격 취득 계획에 대한 의견	93
	2. (가칭)영유아학교 교사 자격 기준	97
	3. (가칭)영유아학교 원감 신규 자격 기준	104
	3. (가칭)영유아학교 원장 신규 자격	110
	4. 통합자격 취득에 대한 기타 의견	115
IV.	. 영유아교원 통합 자격전환 및 연수 방안	121
	1. 종합 및 시사점	121
	2. 현직 교원의 영유아교사 자격부여 기준	
	3. 자격직급별 영유아교사 자격 통합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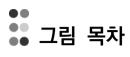
m V. 영유아교원 통합자격 및 연수를 위한 법적 검토 및 법령 개정안	135
1. 영유아교원 통합자격	135
2. 영유아교원 연수	142
참고문헌	— 1 4 8
부록	— 153
부록 1. 원감 직무 선행연구 분석표	153
부록 2. 원장 직무 선행연구 분석표	155
부록 3. 전문가 자문 설문지	158

•• • 표 목차

〈표 I-1-1〉 전문가 자문 참여 인원 수 ··································	· 12
〈표 Ⅱ-2-1〉 유치원 교사의 자격 기준	· 17
〈표 Ⅱ-2-2〉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	· 18
〈표 Ⅱ-2-3〉 유치원 교사 자격별 현황	· 19
〈표 Ⅱ-2-4〉 소지자격 취득 후 경과 연수별 교원수 ···································	·21
〈표 Ⅱ-2-5〉 보육교사 자격별 현황 ······	· 23
〈표 Ⅱ-2-6〉 보육교사 유형별 현황	· 24
〈표 Ⅱ-2-7〉자격별 설립유형별 보육교사 현황	· 25
〈표 Ⅱ-2-8〉 연령별 영유아교사 추계결과	· 27
〈표 Ⅱ-2-9〉시도별 영유아교사 추계결과	· 28
〈표 Ⅱ-2-10〉 유치원 원장 및 원감의 자격 기준	· 29
〈표 Ⅱ-2-11〉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	.30
〈표 Ⅱ-2-12〉어린이집 원장의 관련 업무 경력	.31
〈표 Ⅱ-2-13〉 유치원 원장 및 원감 현황(직위별) ····································	.33
〈표 Ⅱ-2-14〉 유치원 원장 현황(시도별) ····································	. 33
〈표 Ⅱ-2-15〉 유치원 원감 현황(시도별) ····································	. 34
〈표 Ⅱ-2-16〉 원장 자격 취득 후 경과 연수별 교원수	.36
〈표 Ⅱ-2-17〉 원감 소지자격 취득 후 경과 연수별 교원수	.37
〈표 Ⅱ-2-18〉어린이집 원장 현황	.38
〈표 Ⅱ-2-19〉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자 및 현직종사자 현황	.38
〈표 Ⅱ-2-20〉 현직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 경로 현황	. 39
〈표 Ⅱ-3-1〉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41
〈표 Ⅱ-3-2〉 연수 방법 및 시간	· 43
〈표 Ⅱ-3-3〉 연수 과정 편성	· 44
〈표 Ⅱ-3-4〉 연수 과정 편성 ···································	
〈표 Ⅱ-3-5〉 수석교사 자격 연수 예시	· 46
〈표 Ⅱ-3-6〉원감 자격 연수 예시	. 50
〈표 Ⅱ-3-7〉원장 자격 연수 예시	· 54
〈표 Ⅱ-3-8〉 유치원 교원 대상 법정 필수교육 현황	· 57
〈표 Ⅱ-3-9〉2024 자격연수 기관	. 59
〈표 Ⅱ-3-10〉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규정	· 61

⟨丑	-3-11)	〉 보육교직원 연수체계	64
⟨丑 Ⅱ	-3-12)	〉보육교사 1급·2급 승급교육 교육과정 ······	65
⟨丑	-3-13	〉원장 사전 직무교육 교육과정	68
⟨丑	-3-14)	〉 보육교사 대상 일반 직무교육 교육내용	71
⟨丑	-3-15)	〉원장 대상 일반 직무교육 교육 내용	72
⟨丑	-3-16	〉특별 직무교육 교육 내용	73
⟨丑	-3-17)	〉 장기 미종사자 대상 교육내용	74
⟨丑	-3-18	〉 보육 교직원 대상 법정 필수교육 현황	76
⟨丑	-4-1>	기존 교사 대상 한시적 자격연수 시행	80
⟨丑	-2-2>	원감과 원장의 직무	85
⟨丑	-2-3>	영유아통합기관 원장 자격 취득 기준	86
⟨丑	-2-4>	영유아통합기관 원장 자격 취득 기준	87
⟨丑	-2-5>	영유아통합기관 원감 자격 취득 기준	88
⟨丑	-2-6>	영유아통합기관 원감 자격 취득 기준	89
⟨표	-1-1>	현직교원 통합자격 취득(안) 동의 여부 및 이유	94
⟨표	-1-2>	현직교원 통합자격 취득 필요 이유	95
⟨표	-1-3>	공립교원 논의 제외 동의 여부	96
⟨표	-1-4>	가정어린이집 원장 자격논의	97
⟨표	-2-1>	유치원·보육교사 자격 규정	97
⟨표	-2-2>	교사 자격 통합 시 교직 이수 동의 여부 및 이유	98
⟨표	-2-3>	준교사와 3급 폐지 동의 여부 및 이유	99
⟨표	-2-4>	동일 경력 동일 자격 취득 동의 여부 및 이유	101
⟨표	-2-5>	통합 시 학력고려 동의 여부 및 이유	103
⟨표	-3-1>	유치원·어린이집 원감 자격 규정 ·······	104
⟨표	-3-2>	원감 자격 기준 동일 적용 동의 여부 및 이유	105
⟨표	-3-3>	보육교사 1급 승급 시 원감자격 의견	106
⟨표	-3-4>	원감 자격 신설 시 유치원 경력 산정 반영 의견	108
⟨표	-3-5>	원감자격 비용 자부담 의견	109
⟨표	-4-1>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자격 규정 ······	110
⟨표	-4-2>	원장자격 통합 시 교직이수 필요성 동의 여부 및 이유	111
⟨표	-4-3>	원장자격 통합 시 특별교원양성과정 수강 의견	112
⟨표	-4-4>	원장자격 통합 시 고경력 원장 자격전환 의견	114
⟨丑 Ⅲ	-5-1>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가 기타의견	115

〈丑 IV-1-1〉	자격통합 로드맵128
〈뮾 ∨-1-1〉	교원자격 관련 유아교육법 규정 개정안136
〈⊞ V-1-2〉	유아교육법 [별표2] 교사 자격기준(제22조제3항 관련) 개정안 · 136
⟨표 ∨-1-3⟩	교원자격검정령137
⟨丑 ∨-1-4⟩	유아교육법 [별표1] 원장·원감 자격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개정안
	139
〈⊞ V-1-5〉	유치원 교사·보육교사 경력 상호 인정140
⟨± V-1-6⟩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경력 범위 개정안141
⟨∄ ∨-1-7⟩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1]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142
⟨無 ∨-2-1⟩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별표1] 자격별 연수 시수 및 영역별 배정비율(제2조 관련) 142
⟨± V-2-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143



[그림	-1-1]	승급체계 가	H편(안) ····					 · 15
[그림	-1-2]	현직교원의	통합자격	취득(안)				 · 16
[그림	Ⅲ −1−1]	현직교원의	통합자격	취득(안)				 . 93
[그림	IV-3-11	영유아학교	교원 전문	성 단계!	별 자격	취득 기	[[준(안]	 130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24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과 유보통합실행계획으로 현직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통합과 연수에 대한 논의에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됨. 이에본 연구는 통합자격 부여 및 연수 방안 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둠.

나. 연구내용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현 승급체계 및 연수체계 규정 및 운영 현황 분석, 영유 아교원 자격별 직무 및 역량에 필요한 승급 및 직무, 영유아교원의 상급자격취 득을 위한 운영체계(안), 통합법 제정 시 개정 방안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 설문, 전문가 워크숍 및 정책실무협의회의 개최, 공동연구진 과의 협력

2. 연구 배경

가. 유보통합 실행 계획

□ 현직교원의 특별교원양성과 신편입학을 통한 통합교원자격 취득 계획을 밝히고, 개인별 기수강 과목과 수요고려해 10년간 운영할 것을 제안함.

나. 선행연구

□ 현직교사 자격통합에 대해, 유치원교사 자격증이 없는 보육교사에게는 교직 11과목과 교과교육영역의 3과목 이수 외에도 유치원 교사의 의미교육 내용을 수강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며, 반면 유치원교사 자격증만 소지한 경우는 영아 관련 교과목 수강을 제안함

□ 유치원 교원 자격체계와 달리 보육교사 자격체계에는 원감의 자격이 없어, 원장과 다른 직무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원장이 시설 및 유아관리, 경영, 조직운영관리, 교육기획 및 실행, 평가, 지역사회 협력, 교육(부모 및 교직원등), 부모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원감은 원장보좌 및 대행, 지도적 역할, 원무관리등의 관리자 역할, 조직관리, 대외 업무, 보육교육업무 등을 수행해 중간관리자로서 필요함을 알 수 있음.

다. 현행 유치원 교원과 보육교직원의 승급 제도 및 현황 비교

- □ 유치원교사 자격 현황은 국공립유치원은 정교사 1정이 사립유치원은 정교사 2 정 교사가 많은 반면, 사립유치원은 정교사 2급 교사가 많았음. 유치원 정교사 1정 소지자가 연차가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컸으며, 특히 사립유치원 교사의 퇴직이 많은 것으로 추정됨.
- □ 영유아교사 추계결과 2023년 기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담임교사가 209,700 명인 반면, 추계결과 2035년은 201,089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 □ 유치원 원장(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실제 원장(감)자격을 소지하였으나, 현재 교사 등 다른 직위로 근무하는 비중이 컸음. 원감자격 취득 후 14년 이상 경력을 지닌 원감이 많고 교사로 재직하는 경우가 많음.

라. 현행 유치원 교원과 보육교직원의 연수 체계 비교

- □ 유치원 교원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시행령)」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에서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로 구분됨. 원장, 원감, 수석교사의 경우 자격연수 대상자는 순위명부에 따라 교육청이 선정하며, 정교사 1,2급은 원장 추천자 중 경력순으로 교육청이 선정함. 연수내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함.
 - 자격연수는 표준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179호]에 따라 정교사, 수석 교사, 원감의 자격연수 총 시수는 90~135시간이며, 총 시수의 영역별 배정 비율은 기본역량 30~50%, 전문역량 50~70%임. 원장의 자격연수 총 시수는 180~270시간이며, 총 시수의 영역별 배정 비율은 기본역량 30~50%, 전문 역량 50~70%로 동일함.
 - 유치원 정교사는 기본역량 영역(30~50%)의 핵심역량은 성찰(5~15%), 교사리더십(10~15%), 자율(15~20%)로 제시됨. 성찰은 교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소양과 자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해 성찰하는 역량으로 정의

하며, 성찰 역량의 요소로 교육 철학, 교직 윤리, 자기 관리, 교직 생애 관리, 교직관을 제시함.

- 유치원 교원 직무연수는 생애단계별 맞춤 연수(입직기-성장기-발전기-원숙기로 구분 운영), 자율형 연수(수업 동아리 등 단위기관 연수과정 운영) 등으로 구분됨. 직무연수 이수는 자율이나 공립유치원 교원은 공개승진경쟁유인으로 연간 60시간 이상 추정됨.
- □ 보육교직원은 상급자격취득을 위한 승급연수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연 수로 구분됨.
 - 상급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의 대상 선정은 원장과 보육교사 공통 사항으로 현직 교원 신청자들 중에서 신청순 및 경력순으로 지자체에서 선정함. 직무 교육의 경우 일반 직무교육, 특별 직무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별로 연수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현직 원장·보육교사 신청자 중에서 신청수 및 경력수으로 지자체에서 선정함

3. 영유아교원 통합자격 부여에 대한 전문가 조사

가. 통합자격 취득 계획에 대한 의견

□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대해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양자격(유치원교사와 보육교 사)을 갖춘 자에게 통합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 공통적으로 찬성. 단, 한 가지만 가진 경우는 특별교원양성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함. 반대 입장 은 사이버대학 등이 교원승급기관으로서 부적절하며, 특별교원양성과정이 교 사자격을 남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함.

나. (가칭)영유아학교 교사 자격 기준

- □ 교사자격 통합 시 교직이수는 교원양성체계에서 필수임에 대해서는 동의함. 다 만 교직 이수과목의 적합성과 긴 교육시간에는 우려를 표함.
- □ 유치원 준교사와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의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다양한 인력으로서 준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었음.
- □ 전문가들은 승급 시 동일경력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찬성함. 다만 유치원 교사 의 경우 승급소요 시간이 지역마다 다르므로 소요시간도 반영할 것을 제안하

기도 함. 반대입장은 3년이상 근무한 현직 담임교사들 중 희망자에 한해 특별 교원양성과정이나 대학원 신편입과정을 통해 이수한 경우 동일자격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함.

□ 통합 시 학력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며, 대학원 석사학위를 2년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적용가능하다고 주장함. 다만 현장경력이나 교직이수는 전제조건임을 명확히 함.

다. (가칭)영유아학교 원감 자격 기준

- □ 현행 유치원 원감 자격 조건과 동일하게 통합 영유아원감 자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 양기관에 중간관리자는 필요하므로 통합기관 기준을 갖춘 기관부터 배치해 줄 것을 제안함. 반면 원감자격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있었으며, 통합교사 자격이 안정될 때까지 원감자격조건을 별도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함.
- □ 전문가들은 어린이집 1급 정교사에게 교육경력 3년이상이면 원감자격기준으로 조정한다는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었으나, 기존 원장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원감자격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갈등이 야기되므로, 필수이수교육 체계를 마련해 주거나, 환상인정비율을 자격기준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
- □ 원감자격은 유치원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어 통합교사 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 일정 기간과 자격연수를 통해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함.
- □ 원감자격연수 비용 부담은 초중등 교원의 교육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국비부담이 맞다는 의견과, 자격전환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므로 자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라. (가칭)영유아학교 원장 자격 기준

- □ 원장의 자격 통합시에도 교직이수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적으로 많았음. 다만 교직교과목을 영유아교원과 원장에게 맞게 조정해 이수하도록 할 것을 제안함.
- □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특별교원양성교육 시행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함. 원장 자격취득 총 경력 9년을 감안해 특별교원양성과정을 수강하도록 할 것과 대학 원 석사학위는 2년 경력으로 인정하는 안 등을 제안함.

□ 20년 이상의 고경력 원장에게 일부 교육이수 후 통합원장자격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양쪽기관을 운영했다고 해서 영유아학교 운영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원장교육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관건이라는 응답을 함.

마. 기타

- □ 일학습 병행이 가능하도록 특별교원양성과정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지만, 신뢰 로운 기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 관리가 필요함을 제안함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의 3에 따라 교원자격검 정령 개정을 하여, 통합자격전환 취득기준을 정항 한, 그 기준에 따라 1급, 수 석, 원감, 원장 등의 자격기준을 정할 것을 제안함.

3. 영유아교원 통합 자격전환 및 연수방안

가. 현직 교원 영유아교사 자격부여 기준

□ 자격기준에 학력기준 포함, 경력기준에서 양기관 경력 동일하게 인정, 대면교육으로 진행, 교육기관의 질 관리 등과 함께 적체되었던 유치원 교원 승급 자격연수 확대안을 포함함

나. 자격직급별 전환 시나리오

- □ 자격전환 로드맵을 통해 2025년에는 1단계로서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자격 모두를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자격연수를 시작해 영유아교사 자격 부여 함. 단, 전환자격증은 유치원교사 자격 급수와 근속 경력을 고려해 부여함. 2 단계: 2026년에는 특별교원양성과정을 실시함. 교사 교육기관과 원장(감)의 교육기관을 별도 승인해 충실히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 대상별 자격전환 안을 현직 교원의 자격급수, 양쪽 자격취득 여부, 현장경력을 고려해 승급 자격연수, 직무연수, 특별교원양성과정으로 구분해 제안함.

4. 영유아교원 통합자격 및 연수를 위한 법적 검토 및 법령 개정안

가. 영유아교원 통합자격

- □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 3급을 폐지하고 (가칭) 영유아교육법의 영유아교사는 정교사(1급·2급)로 구성함.
- □ 유아교육법 [별표2] 교사 자격기준(제22조제3항 관련) 개정안은 「유아교육법」을 「(가칭)영유아교육법」으로, 「유치원」을 「(가칭)영유아학교」로, 「유치원 교육 과정」을 「영유아교육전공 교육과정」으로, 「보육과 교직학점」을 「영유아교육전 공 교직학점」으로 개정하고, 유치원 준교사는 삭제함.
- □ 개정안에서 (구)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원장·원감, (구)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의 경력연수는 모두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함.
- □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서 「유아교육법」을 「(가칭)영유아교육법」으로, 「유치원」을 「(가칭)영유아학교」로 개정하고,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경력은, 「(구)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과 「(구)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함.

나. 영유아교원 연수

- □ 이에 따라 연수자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연수자 의 자부담을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연수의 지연을 방지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은 유치원 교원 뿐 아니라 초중등교원에게도 공통 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통합자격이 도입된 이후 연수 대상자 선정에 교 원의 신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특례 규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 □ 앞의 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유보통합 이후 통합자격의 연수는 교과목 편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 준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연수기관의 자율적 편성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정부조직법 제28조(교육부)와 제39조(보건복지부)의 개정(법률 제20289호, 2024. 2. 13)[시행 2024. 6. 27] 으로 영·유아 보육·교육의 업무를 교육부가 관장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등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 관리체계 일원화가 추진됨.
 -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법률 제20380, 2024, 3. 19)[시행 2024. 9. 20]의 담당도 교육부로 이관되었지만,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 관련 책임(제4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상황임. 제4조 5항〈신설 2024. 2. 6〉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 유보통합으로 인한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함.
- □ 교육부(2024. 6. 27.)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제시하며, 5대 유치원·어린이 집 통합과제로서, '통합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을 제시하며, 영유아교사 승급 경로로서 현 유치원 체계와 동일한 '2급 →1급→원감→원장'으로 개편함.
 - 신규 영유아교원은 영유아교육과로 개편, 학사학위 이상 및 대면중심 학과· 전공제로 양성하며, 비대면학점제기관은 승급기관으로의 운영 검토를 제시함.
 - 현직교원 통합자격 취득은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신편입학을 통해 통합교원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며, 현재 어린이집 원장 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자격 연수 과정을 운영해 26년에는 현직교원들이 통합자격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함.
- □ 현재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의 승급 및 연수체계의 기준과 요건이 다른 상황으로, 유보통합 이후 통합교원 자격을 취득한 후 승급 및 연수체계를 어떻게 일원화하며, 상향평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는 관건임.
- □ 또한, 5대 상향평준화 과제로서 "통합연수체계 마련"을 제시하고, 교사연수시

간을 연13시간에서 연60시간(25년 연 30시간→26년 연 45시간→27년 연 60시간)으로 단계적 확대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 역량 및 교육·보육 전문가로서의 역량 함양을 약속함.

- 교육청·지역대학과의 협력으로 양질의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추진을 골자로, 4대 분야(교육과정 실행, 영유아지원, 영유아 정서발달지원, 특별한 영유아지원) 중심 맞춤형 직무연수, 연수시간 상향 및 형태 다양화, 교원들의 연구·연수 문화 조성을 제시함. 이 외에도 0-2세 개정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연수가 계획됨(대면 8시간, 원격 15시간)
- □ 유치원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에 따라 원장 및 원감, 정교사(1 급, 2급), 수석교사의 자격기준과 표준교육과정1)(별표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교원자격검정령을 시행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 제28조(교원의 교육 및 연수)에 서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원장·원감 자격기준(별표 1), 교장 및 원장 자격기준(제23조 제1항 관련 별표 2)을 갖추고 있음. 이 기준에 따르면 정교사·수석교사·교감·원감은 총 90~135시간, 교장·원장은 180~270시간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역량과 전문역량 비율도 명시함.
- □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별표 1에 보육교사와 원장의 자격기준을 제시. 동법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는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는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하며, 직무교육은 정기적으로 40시간을, 승급교육은 80시간으로 정함.
-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합법 제정 및 관련법령 개정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현직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승급 및 연수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함.

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주요 내용을 연구하고자 함.

¹⁾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시행 2019. 4. 1.] [교육부고시 제2019-179호, 2019. 4. 1., 전부개정]은 「교육공무원법」제39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2에 따라, 자격별 연수 시수 및 영역별 배정비율을 제시함.

-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현 승급체계 및 연수체계 규정 및 운영 현황 분석□ 영유아교원 자격별 직무 및 역량에 필요한 승급 및 직무
- □ 영유아교원의 상급자격취득을 위한 운영체계(안)
- □ 영유아교원 승급체계를 위한, 현직 어린이집 및 유치원 1,2급 교사와 원장(감)의 통합자격전환 대상자 선정에 대한 안을 제시
- □ 해당 안을 기초로 통합법 제정 및 관련법령 개정안 제안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음.

□ 문헌 연구

-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직무분석 관련 선행연구를 개괄하여, 원감 및 수석 교사를 포함한 영유아학교(가칭)에서의 교원의 자격별 역할에 대해 정리
- 유치원 교원, 초등교원, 보육교사 및 원장 상급자격 취득 및 연수체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법 고찰 및 분석
- 자격 및 승급 연수, 직무연수 등 교육주체(시도교육청)별 연수운영 방식, 교육 내용 및 이수 관리 등 시도교육청 및 보육사업안내 협조를 통해 분석

□ 전문가 설문 실시

- 선행연구를 기초로 대상별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승급 및 자격연수 통합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 실시
- 현재 실시 승급체계와 직무연수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 □ 전문가 워크숍 및 정책실무협의회의 개최
 - 본 연구에서 조사한 전문가 의견과 정책 제안을 기초로 전문가 워크숍 및 이 해관계들과 간담회 실시 후 최종안 및 정책제언 도출

〈표 Ⅰ-1-1〉 전문가 자문 참여 인원 수

전문가 유형	학계(대학)	현장 전문가 (장학사/육아종합지원 센터 센터장)	총합
유아교육	16명	5명	21명
보육	12명	5명	17명
총합	28명	10명	38명

- □ 외부 전문가의 공동연구진 활용
 - 교원 연수 및 승급관련 유경험 교수 2인을 전문가 공동연구진으로 포함하여, 각각 자격승급체계와 직무연수운영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도출

4. 연구의 한계

- □ 본 연구는 현직 유치원 교원 또는 보육교사 및 원장 자격 소지자에게 신규 영 유아교사 자격 취득 요건과 방법에 대해 제안하는 연구임.
- □ 또한 원감 자격이 신설됨에 따라 현직 유치원 교사와 원감자격 체계가 없는 보육교사의 자격 부여에 대한 논의를 포함. 다만 실행계획에서 제시한 특별교원양성과정의 교과내용과 교육기관은 별도 교육부수탁과제로 진행 중이며,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음.
- □ 통합법 제정 이전이므로, 현직 유치원 교원, 보육교사 및 원장의 신규 자격 취득과 연수체계 개편은 선행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음.

연구 배경

- 01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 02 현행 유치원 교원과 보육교사 교직원 승급 제도 및 현황 비교
- 03 현행 유치원 교원과 보육교직원 연수 체계 비교
- 04 유보통합 후, 현직 교원 통합에 대한 선행연구

Ⅱ. 연구 배경

1.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²⁾

- □ 유보통합 이후 영유아교원의 양성 방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련하여 제시한 실행계획을 살펴보아야 함. 교육부는 2024년 6월 27일에 발표한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는 통합 영유아교원의 자격·양성체계 개편에 관한 계획을 포함
- □ 전체적 유보통합을 위한 추진체계 및 전략에서는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 기 좋은 나라'을 비전을 설정함.

[그림 Ⅱ-1-1] 승급체계 개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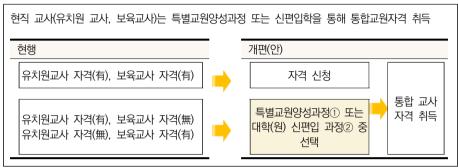
[승급체계] 영유아 정교사 승급 경로는 "2급→1급→원감→원장'으로 개편 [신규교사 양성] - 영유아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출수 있도록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 학과/ 전공제(영유아교육 전공)로 신규교사 양성 ※ 자유전공제, 마이크로디그리, 실습학기제 도입 등을 통해 영유아 교사 양성과정 혁신 전문대학, 4년제. (학위) 학사학위 이상(1)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보육 보육교사 (양성방식) 대면중심 학과·전공제 교사교육원* 등 영유아 (학과개편) 가칭영유아교육과로 * 보육교사 3급 양성은 폐지 예정 교원 개편(2) ※ 비대면·학점제기관은 승급기관 전문대학, 4년제, 으로 운영 검토 유치원교사 대학원 유아교육전공

- ① 전문대학에서도 영유아교사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50조의3) 개정
- ② 유아교육과와 아동보육 관련학과는 가칭영유아교육과로 개편을 원칙, 비사범 학과는 명칭 변경 없이 '영유아교육 전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양성정원은 별도 심사
- □ 실행계획에서는 통합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을 통해, 영유아정교사의 승급 경로를 현 유치원교사 자격체계에 맞게 '2급→1급→원감→원장'으로 개편할 것을 발표함.

²⁾ 자료: 교육부(2024. 6. 27.). 보도자료 "국민이 믿고 편안히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유보통합 실행계획 마련" 내용을 포괄 인용하여 제시함.

□ 또한, 현직교원이 특별교원양성과정과 신편입학을 통해 통합 교원자격을 취득 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그림 Ⅱ-1-2] 현직교원의 통합자격 취득(안)



자료: 교육부(2024, 6, 27.), 보도자료 "국민이 믿고 편안히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유보통합 실행계획 마련" p.17 내용을 포괄 인용하여 제시함.

- 개인별 기수강 과목에 대해 대학별로 인정하고, 수요를 고려해 10년간 운영 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야간 주말과정을 개설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밝힘.

2. 현행 유치원 교원과 보육교사 교직원 승급 제도 및 현황 비교

가.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 1)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체계
- □ 유치원 정교사 및 준교사 자격 기준
 - 유치원 교사는 정교사 1, 2급, 준교사로 구분되며 〈표 Ⅱ-2-1〉과 같이 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통령령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 받은 자임(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별표2])
 - 유치원 정교사 2급에서 1급으로 승급을 위해 필요한 재교육은 최소 90시간~ 최고 135시간의 직무연수를 필수 이수해야 함.

³⁾ 자료: (대통령령)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21조(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 등)

- 유치원 정교사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이 되는 유치원 교사 중 원장의 추천자 중에서 경력순으로 교육청이 선정함.
- 현재 승급대상 자격조건이 되더라도 소속된 유치원 원장의 추천(수락)이 있어 야 하며, 시도 교육청의 정교사 1급 승급 연수 대상자 인원이 신청자 인원보다 적으므로 승급 자격 대상 경력 연수를 충족했더라도 승급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유치원 수석교사 자격 기준

- 수석교사는 유치원 정교사 및 준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교육경력 및 우수한 교수·연구 역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4)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임(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 유치원 수석교사로 승급은 자격연수대상자 순위명부(전 자격연수 성적순 등 재)에 따라 교육청이 선정함.

〈표 Ⅱ-2-1〉 유치원 교사의 자격 기준

구분	자격 기준
수석교사	1·2급, 준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15년 이상 교육경력 및 우수한 교수·연구 역량을 갖춘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1급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급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졸업 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받은 자
준교사	1.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⁴⁾ 자료: (교육부 고시)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시행 2019. 4. 1.] [교육부고 시 제2019-179호, 2019. 4. 1., 전부개정]

□ 보육교사 자격 기준

- 보육교사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며 〈표 Ⅱ-2-2〉와 같이 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 받은 자임(영유 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786호, 2024. 8. 6., 일부개정]
- 지자체는 상위자격 취득을 원하는 신청자 중 신청순 및 경력순으로 승급자격 대상자를 선정함.
- 2024년 기준 보육교사 승급 자격요건 충족 시 승급교육을 신청할 경우 대부분 선정되며, 선정 후에는 80시간의 승급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함.

〈표 Ⅱ-2-2〉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구분	자격 기준
1급	 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2급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보육관련 대학원은

- ①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 ② ①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786호, 2024. 8. 6., 일 부개정].

2)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현황

□ 유치워 교사 자격별 현황

- 유치원 교사의 자격별 현황은 수석교사 21명, 정교사 1정 21,240명, 정교사 2정 27,421명, 준교사는 11명으로 유치원 정교사 2정 자격증 소지자가 가장 많음.

- 유치원 교사의 설립유형별 자격별 현황은 국공립유치원은 정교사 1정, 사립 유치원은 정교사 2정 소지자가 많음.
- 국공립유치원은 정교사 1정 14,022명, 정교사 2정 7,667명으로 정교사 1정 자격 교사가 6.355명 더 많음.
- 사립유치원은 정교사 1정 7,218명, 정교사 2정 19,754명으로 정교사 2정 자격 교사가 12,536명 더 많음.
- 수석교사는 국공립 19명, 사립 2명, 준교사는 국공립 1명, 사립 10명으로 설립유형에 따라 교사 수에 차이가 큼.
- 유치원 교사의 시도별 자격별 현황은 경기도가 12,834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서울이 5,427명임. 대부분 지역의 정교사 2정 교사가 정교사 1정보다 많으나 세종, 충북, 충남, 경북, 제주의 경우 정교사 1정 자격 소지자가정교사 2정보다 많음.

〈표 Ⅱ-2-3〉 유치원 교사 자격별 현황

단위: 명(%)

즈	위/자격	수석교사	정교사 1정	정교사 2정	준교사	계	
	총 계	21	21,240	27,421	11	48,693	
	국공립	19	14,022	7,667	1	21,709	
	사립	2	7,218	19,754	10	26,984	
	계	-	2,133	3,293	1	5,427	
서 울	국공립	_	913	529	_	1,442	
	사립	-	1,220	2,764	_	3,984	
	계	-	1,066	1,976	1	3,043	
부 산	국공립	_	557	381	_	938	
	사립	_	509	1,595	_	2,104	
- FII	계	-	1,100	1,433	_	2,533	
대 구	국공립	ı	538	131	_	669	
	사립	_	14,022 7,667 1 21,70 7,218 19,754 10 26,98 2,133 3,293 1 5,42 913 529 - 1,44 1,220 2,764 - 3,98 1,066 1,976 1 3,04 557 381 - 938 509 1,595 - 2,10 1,100 1,433 - 2,53 538 131 - 669 562 1,302 2 1,86 1,227 1,418 - 2,64 590 217 - 807 637 1,201 2 1,84 518 1,119 - 1,63 344 224 - 568	1,866			
01	계	1	1,227	1,418	_	2,646	
인 천	국공립	-	590	217	_	807	
	사립	1	637	1,201	2	1,841	
71	계	_	518	1,119		1,637	
광 주	국공립	- 344 224		224	_	568	
	사립	-	174	895	11 48,693 1 21,709 10 26,984 1 5,427 - 1,442 - 3,984 1 3,043 - 938 - 2,104 - 2,533 - 669 2 1,866 - 2,646 - 807 2 1,841 - 1,637	1,069	

직	위/자격	수석교사	정교사 1정	정교사 2정	준교사	계
	계	-	577	1,070	-	1,647
	대전 2 2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_	322	93	_	415
겐	사립	-	255	977	070 - 1, 93 93 - 2, 2, 2, 2, 2, 2, 2, 2, 2, 2, 2, 2, 2, 2	1,232
	계	1	354	615	-	970
	전	1	220	147	-	368
겐	사립	_	134	468	_	602
	계	-	537	414	-	951
	국공립	-	535	409	-	944
0	사립	_	2	5	-	7
	계	2	5,084	7,748	-	12,834
	국공립	1	3,580	1,865	-	5,446
[']	사립	1	1,504	5,883	-	7,388
	계	2	751	527	-	1,280
강 위	국공립	2	573	209	-	784
	사립	_	178	318	209 - 784 318 - 496 761 - 1,69 455 - 1,21 306 4 479	496
_	계	4	926	761	-	1,691
충 북	국공립	4	757	455	-	1,216
7	사립	-	169	573 209 - 7 178 318 - 4 926 761 - 1,4 757 455 - 1,5 169 306 4 4 1,494 1,163 - 2,4 1,113 460 - 1,1 381 703 4 1,1	479	
_	계	-	1,494	1,163	-	2,657
 충	국공립	_	1,113	460	-	1,573
	사립	_	381	703	4	1,088
	계	2	964	1,174	-	2,140
선부	국공립	2	800	574	-	1,376
7	사립	_	164	600	-	764
	계	5	1,008	1,172	-	2,185
선 나	국공립	5	873	755	_	1,633
	사립	_	135	417	-	- 415 - 1,232 - 970 - 368 - 602 - 951 - 944 - 7 - 12,834 - 5,446 - 7,388 - 1,280 - 784 - 496 - 1,691 - 1,216 4 479 - 2,657 - 1,573 4 1,088 - 2,140 - 1,376 - 764 - 2,185 - 1,633 - 552 - 2,891 - 1,383 2 1,510 - 3,780 1 1,907 1 1,875 - 372
	계	2	1,623	1,266	-	2,891
경	국공립	2	925	456	-	1,383
	사립	-	698	810	2	1,510
	계	2	1,615	2,163	-	3,780
경나	국공립	2	1,190	714	1	1,907
		-	425	1,449	1	1,875
TII	계	-	263	109		372
	국공립	_	192	48	_	240
	사립	- 2024) 2023년 7	71	61	_	132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4). 2023년 교육통계연보

- □ 유치원 교사 소지자격 취득 후 경과 연수별 교사 현황
 - 정교사 1정 소지자격 취득 후 연차가 지남에 따라 전체 교원수는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 국공립유치원의 정교사 1정 소지자격자는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14년 미만 의 경우 매년 400명 내외로 경과 연수별 교원수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으나 사립유치원은 경과연수가 지남에 따라 교원수가 점차 줄어듦.
 - 국공립유치원의 정교사 1정 자격소지자가 사립유치원의 정교사 1정보다 12 년 이상~13년 미만, 13년 이상~14년 미만에서는 7-8배 더 많으며, 14년 이 상의 경우에는 9배보다 더 많은 것을 고려했을 때 국공립 유치원 정교사1정 자격소지자는 고경력 교사이면서 원감 승급 대기자자 많음.
 - 정교사 2정 소지자격 취득 후 5년 미만까지는 사립유치원 정교사 2정 자격 소지자가 2,500명 이상으로 국공립유치원 정교사 2정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나, 점차 간격이 줄어들어 11년 이상 경과연수가 지나면 사립유치원 정교사 2정이 국공립유치원 정교사 2정보다 적어짐.
 - 사립유치원 정교사 2정이 국공립유치원 정교사 2정에 비해 저경력 교사가 많음.
 - 국공립유치원 정교사 2정 자격소지자는 14년 이상의 경우 2,135명, 사립유 치원 정교사 2정은 733명으로 국공립유치원 정교사 2정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1급 승급 대기자가 많음.
 - 이는 시도교육청별로 공사립유치원 1급 승급 자격 대상을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면, 2급 자격 소지자 중 사립유치원 교원은 퇴직을 많이 하기 때 문으로 추측됨.

〈표 Ⅱ-2-4〉 소지자격 취득 후 경과 연수별 교원수

단위: 명(%)

구분		합계	1년 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 이상 ~3년미만	3년 이상 ~4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수석 교사	계	21	-	1	1	2	_	2	_
	국공립	19	1	1	1	2	-	1	-
	사립	2	_	_	-	-	_	1	_
정교사 1정	계	21,240	2,667	2,963	2,205	1,520	1,417	1,071	947
	국공립	14,022	1,486	1,715	1,364	853	769	651	535
	사립	7,218	1,181	1,248	841	667	648	420	412

구분		합계	1년 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 이상 ~3년미만	3년 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계	27,421	2,691	3,193	3,281	3,099	3,048	2,584	1,977
정교사 2정	국공립	7,667	163	310	518	626	763	688	551
	사립	19,754	2,528	2,883	2,763	2,473	2,285	1,896	1,426
	계	11	3	2	2	3	ı	1	_
준교사	국공립	1	1	_	_	_	-	-	_
	사립	10	2	2	2	3	ı	1	_
구분		~	8년이상 ~ 9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1년미만	11년이상 ~ 12년미만	12년이상 ~13년미만	13년이상 ~14년미만	14년 이상
	계	2	3	3	2	4	ı	ı	1
수석 교사	국공립	1	3	3	2	4	ı	ı	1
	사립	1	-	_	_	_	ı	ı	_
TJ 11	계	776	637	534	548	603	569	525	4,258
정교사 1정	국공립	407	340	320	375	465	480	439	3,823
	사립	369	297	214	173	138	89	86	435
H =11	계	1,321	1,067	735	530	412	324	291	2,868
정교사 2정	국공립	411	375	287	244	224	193	179	2,135
	사립	910	692	448	286	188	131	112	733
	계	_	_	_	-	_	-	_	_
준교사	국공립	-	-	-	-	-	-	-	-
	사립	-	-	-	-	-	-	-	-

주: 휴직자가 포함된 수치임, 개인이 소지한 최상의 자격증 기준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4). 2023년 교육통계연보

□ 보육교사 자격별 현황

- 보육교사는 1급 소지자가 161,526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보육교사 2급 소지자 62,526명, 보육교사 3급 소지자 2,037명 순으로 나타남.
- 보육교사 자격소지 현황은 경기도가 68,082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서울 37,055명, 인천과 경남이 13,300명 내외로 유사한 수준임.

〈표 Ⅱ-2-5〉 보육교사 자격별 현황

단위: 명(%)

구분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3급	계
계	161,526	62,526	2,037	226,089
서울	26,491	10,286	278	37,055
부산	8,232	3,102	54	11,388
대구	6,756	2,354	83	9,193
인천	9,552	3,644	209	13,405
광주	4,921	1,942	25	6,888
대전	4,928	1,971	59	6,958
울산	3,414	1,498	90	5,002
세종	1,982	1,020	6	3,008
경기	48,355	19,040	687	68,082
강원	4,451	1,962	21	6,434
충북	5,165	1,981	18	7,164
충남	7,074	2,674	39	9,787
전북	5,279	1,807	37	7,123
전남	5,442	2,030	32	7,504
경북	7,126	2,732	109	9,967
경남	9,439	3,596	225	13,260
제주	2,919	887	65	3,871

자료: 보건복지부(2024a). 2023년 보육통계.

□ 보육교사 유형별 현황

- 보육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교사 유형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황은 〈표 II-2-6〉과 같음.
- 보육교사 자격소지자는 담임교사, 대체교사, 방과후 보육교사, 야간연장보육 교사(월급여형, 단시간형), 24시간보육교사, 누리과정보조교사(비담임 30시간 이상, 비담임 30시간 미만), 보조교사,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대체교직원 으로 근무하고 있음.
- 보육교사는 담임교사로 71%가 근무하여 이외 보조교사 14%, 연장보육반 전 담교사 7.8%, 누리과정보조교사(30시간미만) 2.5%, 야간연장형 교사(월급형) 1.9%순으로 근무하는 비중이 높음.

〈표 Ⅱ-2-6〉 보육교사 유형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소계	담임 교사	대체 교사	방과후 보육 교사	24시간 보육 교사	교사	야간 연장 교사 (단시간 형)	보조 교사	누리 과정 보조 교사 (30 시간 이상)	누리 과정 보조 교사 (30 시간 미만)	대체 교직원	연장 보육반 전담 교사	비담임 (선임) 교사
계	226,134	161,078	2,686	221	130	4,342	113	32,242	1,527	5,723	6	17,776	290
서울	37,063	26,622	693	59	18	717	19	5,006	243	985	0	2,631	70
부산	11,391	8,396	77	5	4	131	1	1,555	62	239	1	919	1
대구	9,198	6,803	53	24	2	123	3	1,134	39	145	0	795	77
인천	13,409	9,638	134	3	12	230	5	1,952	59	340	0	1,021	15
광주	6,891	4,941	34	33	9	66	5	1,015	30	106	1	617	34
대전	6,958	4,485	105	5	0	169	11	1,261	41	115	1	739	26
울산	5,002	3,626	54	4	2	45	0	733	37	121	0	375	5
세종	3,008	2,121	32	0	0	14	0	472	25	96	0	248	0
경기	68,095	47,677	908	6	36	1,582	47	9,770	549	1,918	2	5,590	10
강원	6,434	4,559	85	6	2	82	4	1,024	54	175	0	441	2
충북	7,165	5,277	39	0	9	203	2	853	47	229	0	491	15
충남	9,788	6,961	131	8	2	134	3	1,525	99	281	0	628	16
전북	7,124	5,079	34	25	0	218	4	973	34	158	0	598	1
전남	7,506	5,597	42	7	12	134	0	889	52	217	0	550	6
경북	9,970	7,161	84	9	3	157	2	1,548	64	176	1	760	5
경남	13,260	9,387	92	23	17	307	7	1,887	66	302	0	1,165	7
제주	3,872	2,748	89	4	2	30	0	645	26	120	0	208	0

자료: 보건복지부(2024a). 2023년 보육통계.

□ 자격별 설립유형별 보육교사 현황

- 보육교사 1급, 2급 자격 소지자의 경우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순으로 근무하는 비율이 높음.
- 보육교사 1급의 경우 2급 자격소지자에 비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2급의 경우 1급 자격소지자에 비해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비율이 약 4% 높음.
- 보육교사 3급 자격 소지자의 경우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순으로 근무하는 비율이 높음.

- 보육교사 3급 자격 소지자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16% 로 1, 2급 교사 자격 소지자에 비해 약 10% 낮으며,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33%으로 1, 2급 교사 자격 소지자에 비해 약 10% 높게 나타남.

〈표 Ⅱ-2-7〉 자격별* 설립유형별 보육교사 현황

단위: 명(%)

구 분	Й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161,526	44,795	7,836	3,234	60,542	34,975	432	9,712
1급		(27.73)	(4.85)	(2.00)	(37.48)	(21.65)	(0.27)	(6.01)
보육교사	62,526	17,533	2,985	1,207	21,230	12,882	172	6,517
2급		(28.04)	(4.77)	(1.93)	(33.95)	(20.60)	(0.28)	(10.42)
보육교사	2,037	331	65	33	857	673	4	74
3급		(16.25)	(3.19)	(1.62)	(42.07)	(33.04)	(0.20)	(3.63)

자료: 보건복지부(2024a). 2023년 보육통계를 토대로 표를 재구성함.

3) 영유아교사 추계(2025-3035)

□ 영유아교사 추계방법

- 2020-2025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 영유아수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 시도별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2년 2024. 5. 기준)를 토대로 추출함.
- 통계청 자료 수집기준일이 7월 1일이므로 12월 기준 시점 보정함. 월별 인구 변동이 일정하다는 가정으로 t년도+(t+1년도)/2 평균을 적용함.
- 2020-2023년 유치원 원아수 및 취원율은 교육통계연보(2023) 자료, 2020-2023년 어린이집 원아수 및 취원율은 2023년 보육통계(보건복지부. 2024a) 를 토대로 하여 3항 이동평균으로 취원률을 산정함.
- 2025-2035년도 이용대상이수를 토대로 취원율을 곱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원아수를 예측하여 합산함.
- 교사 대 유아 비율 고려하여 교사 수를 예측함.
- 교사 대 유아비율을 유보통합 실행안에서 발표한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0세 1:2, 1세 1:4, 2세 1:6, 3세 1:13, 4세 1:16, 5세 1:18 비율을 가정하여 적 용함.

□ 영유아교사 추계결과

- 2025년~2035년 영유아교사 수요는 2025년 186,582명, 2026년 178,986 명, 2027년 173,868명, 2028년 174,684명, 2029년 177,993명, 2030년 182,629명, 2031년 188,272명, 2032년 193,766명, 2033년 198,616명, 2034년 202,609명, 2035년 201,089명으로 예측됨.
- 영유아교사 수요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28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여 2034년에는 2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됨.
- 0-2세 영아 담당 교사 수요는 유아 담당 교사 수요보다 3~4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0-2세 영아 담당교사는 2027년까지는 감소하나 2028년부터 증가추세로 변화하며, 3-5세 유아 담당 교사는 2030년까지는 감소하나 2031년부터 증가추세로 나타남.

〈표 II-2-8〉연령별 영유아교사 추계결과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전체	186,582	178,986	173,868	174,684	177,993	182,629	188,272	193,766	198,616	202,609	201,089
0	52,445	52,442	53,759	56,485	58,610	60,416	62,091	63,341	64,293	62,005	59,903
—	49,372	46,978	45,252	46,545	48,753	50,673	52,527	54,069	55,312	56,303	54,654
2	37,298	35,080	33,025	32,202	32,973	34,498	35,932	37,203	38,292	39,186	39,518
계(0-2세)	139,115	134,500	132,036	135,232	140,336	145,587	150,550	154,613	157,897	160,494	154,075
က	17,610	16,662	15,622	14,768	14,379	14,717	15,406	16,038	16,602	17,088	18,042
4	15,074	14,184	13,371	12,588	11,886	11,568	11,847	12,396	12,902	13,356	14,963
വ	14,784	13,639	12,838	12,096	11,391	10,756	10,468	10,720	11,215	11,672	14,009
계(3-5세)	47,468	44,485	41,831	39,452	37,656	37,041	37,721	39,154	40,719	42,116	47,014

〈표 II-2-9〉 시도별 영유아교사 추계결과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186,582	32 178,986	173,868	174,684	177,993	182,629	188,272	193,766	198,616	202,609	201,089
26,816	16 25,568	24,808	25,202	26,100	27,243	28,575	29,880	31,066	32,105	30,726
9,577	9,049	8,638	8,573	8,653	8,815	9,043	9,269	9,464	9,619	966'6
8,004	7,623	7,326	7,320	7,411	7,559	7,752	7,935	8,088	8,205	8,408
11,714	11,234	10,819	10,841	11,011	11,264	11,604	11,938	12,235	12,487	12,524
5,952	52 5,706	5,602	5,636	5,758	5,930	6,116	6,289	6,434	6,543	6,452
5,751	5,506	5,380	5,422	5,550	5,728	5,940	6,151	6,339	6,495	6,305
3,992	3,781	3,616	3,563	3,553	3,563	3,583	3,598	3,602	3,594	3,943
2,491	2,453	2,433	2,479	2,556	2,651	2,757	2,858	2,951	3,030	2,836
56,991	31 54,941	53,516	53,988	55,207	56,854	58,869	60,847	62,626	64,136	62,417
5,473	73 5,301	5,202	5,232	5,322	5,447	5,591	5,729	5,845	5,933	5,834
6,272	72 6,094	5,961	6,003	6,111	6,245	6,406	6,560	6,693	6,797	069'9
8,648	8,395	8,228	8,286	8,434	8,632	8,864	680'6	9,292	9,458	9,296
5,977	5,745	2,600	5,608	5,691	5,807	5,946	6,081	6,196	6,283	6,322
6,166	36 5,910	5,726	5,689	5,709	5,753	5,813	5,866	5,901	5,913	6,208
8,445	8,059	7,828	7,775	7,816	7,909	8,027	8,142	8,234	8,294	8,637
11,253	53 10,675	10,305	10,179	10,182	10,249	10,341	10,431	10,496	10,523	11,274
246	16 227	500	195	186	177	173	176	183	189	230

나. 유치원 원장(감)과 어린이집 원장

1) 유치원 원장(감)과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체계

□ 유치원 원장 및 원감 자격 기준

- 유치원 원장은 〈표 II-2-10〉과 같이 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통령 령5)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 받은 자임(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별표1])
- 유치원 원장은 원감에서 승급을 위해 필요한 재교육은 최소 180시간~최고 270시간의 직무연수를 필수 이수해야 함.
- 유치원 원감은 정교사 1급에서 승급을 위해 필요한 재교육은 최소 90시간 ~ 최고 135시간의 직무연수를 필수 이수해야 함.
- 유치원 원장 및 원감으로 승급은 자격연수대상자 순위명부(전 자격연수 성적순 등재)에 따라 교육청이 선정함.

〈표 Ⅱ-2-10〉 유치원 원장 및 원감의 자격 기준

구분	자격 기준
원장	1.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 은 자
원감	1.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비고: 1. 원장·원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장·교감, 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 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 어린이집 원장은 〈표 Ⅱ-2-11〉과 같이 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 받은 자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5) (}대통령령)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21조(상 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 등)

- 원장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에 해당할 경우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신청한 후 80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

〈표 Ⅱ-2-11〉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

구분	자격 기준
일반 기준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정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보육교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영아 전담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아 전문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기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조건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겸임제한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을 겸임할 수 없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786호, 2024. 8. 6., 일 부개정].

- 어린이집 원장 관련 업무경력은 일반기준과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인정범위 가 다름.
- 일반기준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을 고려할 때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유치원 원장 자격을 가진 자 등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가짐.

〈표 Ⅱ-2-12〉 어린이집 원장의 관련 업무 경력

구분	내용
일반 기준의 보육 등 아동 복지 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중등교육법」제21조제 2 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대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 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임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 ボ. 「유아교육법」제23조에 따른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 지도원 또는 자립지원 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서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특수교육분야의 전문인력: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 대상자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바. 「유아교육법」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사.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제정으로 폐지되기 전「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 「남려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 재해보 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 무 경력에서 제외
가정 어린이집 원장기준의 보육 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 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임원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 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구분	내용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근로기준법」 및「산업재해 보 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영아전담 원장기준의 간호업무 경력	•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 및「산업재해보 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아동간호업무 경력에 서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2024b).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p.154-156.

2) 유치원 원장(감)과 어린이집 원장의 현황

- □ 유치원 원장 및 원감 자격별 현황
 - 유치원 원감으로 근무하는 원장 자격 소지자는 290명, 보직교사로 근무하는 원장 자격 소지자는 5명, 교사로 근무하는 원장 자격 소지자는 139명, 기간 제 교사로 근무하는 원장자격 소지자는 22명임.
 - 유치원 보직교사로 근무하는 원감 자격 소지자는 105명,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는 원감자격 소지자는 375명, 유치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원감자격 소지자는 77명임.
 - 공립유치원의 경우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원장 자격 소지자는 29명, 원감 자격소지자는 178명이며, 보직교사로 근무하는 원감 자격 소지자가 88명임.
 -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원장자격 소지자는 132명, 원감자격 소지자는 275명임.
 - 즉, 실제 원장 자격 및 원감 자격을 소지하였으나 다른 직위로 근무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수 있음.

〈표 Ⅱ-2-13〉 유치원 원장 및 원감 현황(직위별)

단위: 명

직위/지	ŀ격	원장	원감
 총 <i>캬</i>	1	4,077	2,365
국공	!립	701	1,160
사람	립	3,376	1,205
	계	3,621	-
교(원)장	공립	569	-
	사립	3,052	_
	계	290	1,807
교(원)감	국공립	101	894
	사립	189	913
	계	5	105
보직교사	국공립	2	88
	사립	3	17
	계	139	375
교사	국공립	11	101
	사립	128	274
	계	22	78
기간제교사	국공립	18	77
	사립	4	1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4). 2023년 교육통계연보

- 시도별 유치원 원장은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보다 원장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단설 유치원 수가 적으며,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장이 겸직하게 됨에 따른 것으로 보임.

〈표 Ⅱ-2-14〉 유치원 원장 현황(시도별)

단위: 명

지역	설립유형	원장수	지역	설립유형	원장수
	계	555		계	118
서 울	국공립	58	강 원	국공립	33
	사립	497		사립	85
	계	296		계	102
부 산	국공립	39	충 북	국공립	33
	사립	257		사립	69

지역	설립유형	원장수	지역	설립유형	원장수
	계	234		계	146
대 구	국공립	27	충 남	국공립	38
	사립	207		사립	108
	계	244		계	146
인 천	국공립	23	전 북	국공립	35
	사립	221		사립	111
	계	168		계	126
광 주	국공립	19	전 남	국공립	38
	사립	149		사립	88
대 전 울 산	계	166		계	229
	국공립	15	경 북	국공립	27
	사립	151		사립	202
	계	105		계	266
	국공립	19	경 남	국공립	47
	사립	86		사립	219
	계	55		계	16
세 종	국공립	53	제 주	국공립	_
	사립	2		사립	16
	계	1,105			
경기	국공립	197			
	사립	90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4). 2023년 교육통계연보

- 시도별 유치원 원감은 서울 및 광역시의 경우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보다 원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는 유치원 원감수가 공사립이 유사한 수준이며, 강원, 충청, 전라도, 경상도, 제주는 국공립유치원의 원감 수가 더 많음.

〈표 Ⅱ-2-15〉 유치원 원감 현황(시도별)

단위: 명

지역	설립유형	원감수	지역	설립유형	원감수
	계	436		계	78
서 울	국공립	170	강 원	국공립	53
	사립	266		사립	25
부 산	계	147	충 북	계	59

지역	설립유형	원감수	지역	설립유형	원감수
	국공립	53		국공립	52
	사립	94		사립	7
	계	149		계	97
대 구	국공립	40	충 남	국공립	61
	사립	109		사립	36
	계	124		계	81
인 천	국공립	56	전 북	국공립	57
	사립	68		사립	24
	계	103		계	78
광 주	국공립	27	전 남	국공립	53
	사립	76		사립	25
	계	89		계	108
대 전	국공립	25	경 북	국공립	68
	사립	64		사립	40
	계	61		계	164
울 산	국공립	34	경 남	국공립	91
	사립	27		사립	73
	계	50		계	28
세 종	국공립	50	제 주	국공립	16
	사립	_		사립	12
	계	513			
경 기	국공립	254			
	사립	259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4), 2023년 교육통계연보

□ 유치원 원장 및 원감 소지 자격 취득 후 경과 연수별 현황

- 유치원 원장 자격 취득 후 국공립유치원은 3-5년 시기에 현직 원장으로 재직하는 교원수가 가장 많았으며, 사립유치원은 9년-12년이 많음.
- 원장 자격 취득 후 경과 연수가 14년 이상에서 사립유치원 원장은 1,532명으로 국공립 8명이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경력 원장이 많음을 알수 있음.
- 유치원 원장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교사로 재직 중인 경우가 사립유치원이 국 공립유치원보다 전체적으로 많음.
- 원장 자격 취득 후 경과 연수가 2년 미만인 경우 국공립유치원 원장이 교사

로 재직 중인 경우가 더 많았으나 2년이상 부터는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을 소지하였으나 교사로 재직하는 경우가 더 많음.

-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 소지자 중 원장 자격 취득 후 경과 연수가 14년 이상 이 지났으나 108명이 여전히 원장이 아닌 직위(원감, 교사 등)로 재직하고 있음.

〈표 Ⅱ-2-16〉 원장 자격 취득 후 경과 연수별 교원수

단위: 명

	구	로	합계	1년 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illo	총계	4,077	138	226	234	240	215	170	163
		계	3,622	79	185	203	213	201	150	140
01	현 직	국공립	569	4	75	107	114	67	57	45
원 장	٦	사립	3,053	75	110	96	99	134	93	95
0	비	계	455	59	41	31	27	14	20	23
	현	국공립	132	51	29	15	6	4	2	1
	직	사립	323	8	12	16	21	10	18	22
	구	분	7년이상 ~8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1년미만	11년이상 ~12년미만	12년이상 ~13년미만	13년이상 ~14년미만	14년 이상
	구	분 계								_
			~8년미만	~9년미만	10년미만	~11년미만	~12년미만	~13년미만	~14년미만	이상
0.1	현	계	~ 8년미만 167	~9년미만 113	10년미만 169	~11년미만 178	~12년미만 148	~ 13년미만 115	~ 14년미만 138	이상 1,663
원자		계 계	~8년미만 167 150	~9년미만 113 100	10년미만 169 153	~11년미만 178 158	~12년미만 148 132	~13년미만 115 101	~14년미만 138 117	이상 1,663 1,540
원 장	현	계 계 구공립	**8년미만 167 150 36	~9년미만 113 100 20	10년미만 169 153 12	~11년미만 178 158 3	~12년미만 148 132 11	~ 13년미만 115 101 6	~ 14년미만 138 117 4	이상 1,663 1,540 8
	현 직	계 계 국공립 사립	**8년미만 167 150 36 114	**9년미만 113 100 20 80	10년미만 169 153 12 141	**11년이만*** 178 158 3 155	~12년미만 148 132 11 121	*13년미만 115 101 6 95	*14년미만 138 117 4 113	이상 1,663 1,540 8 1,532

주: 휴직자가 포함된 수치임, 개인이 소지한 최상의 자격증 기준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4). 2023년 교육통계연보

- 유치원 원감 자격 취득 후 공립유치원 원감의 경우 5년 미만의 경력을 지닌 원감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이후 급격히 감소하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경과 연수별 교원수가 매해 감소하지만 그 폭은 완만함.
- 유치원 원감 자격 취득 후 14년 이상 경력을 지닌 원감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은 25명, 사립유치원은 118명으로 사립유치원이 고경력 원감이 더 많음.
- 유치원 원감 자격 취득을 하였으나 교사로 재직 중인 경우는 국공립유치원

원감이 3년 미만까지는 사립유치원에 비해 많지만 3년 이상부터는 사립유치원 원감이 교사로 재직하는 경우가 더 높은 경향성을 보임.

〈표 Ⅱ-2-17〉 원감 소지자격 취득 후 경과 연수별 교원수

단위: 명

	귀	분	합계	1년 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1	총계	2,365	185	252	422	354	247	145	106
		계	1,807	93	145	336	325	219	114	91
원	현 직	국공립	894	13	66	267	242	145	53	35
년 감		사립	913	80	79	69	83	74	61	56
	비	계	558	92	107	86	29	28	31	15
	현	국공립	266	52	69	47	8	2	9	6
	직	사립	292	40	38	39	21	26	22	9
	귀	분	7년이상~ 8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1년미만	11년이상 ~12년미만	12년이상 ~13년미만	13년이상 ~14년미만	14년이상
		계	94	91	71	59	42	53	38	206
		계	72	67	47	50	30	46	29	143
O.	현 직	국공립	23	11	5	4	_	4	1	25
원 감		사립	49	56	42	46	30	42	28	118
	비	계	22	24	24	9	12	7	9	63
	현	국공립	11	6	12	1	5	3	5	30
	직	사립	11	18	12	8	7	4	4	33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4). 2023년 교육통계연보

□ 어린이집 원장 현황

- 어린이집 원장은 40인 이상이 12,566명, 약 43%로 가장 많으며 이어 20인 이하 어린이집, 40인 미만 어린이집으로 나타남.

〈표 Ⅱ-2-18〉 어린이집 원장 현황

단위: 명

구분	소계	20인이하 어린이집	40인미만 어린이집	40인이상 어린이집
계	28,818	11,448	4,804	12,566
서울	4,420	1,686	648	2,086
부산	1,446	470	283	693
대구	1,071	276	225	570
인천	1,640	722	217	701
 광주	874	331	161	382
대전	914	489	130	295
울산	611	197	99	315
세종	308	99	75	134
경기	8,852	4,192	1,230	3,430
강원	845	261	163	421
충북	918	294	176	448
충남	1,414	612	251	551
전북	942	290	171	481
전남	946	267	192	487
경북	1,302	438	267	597
경남	1,893	742	400	751
제주	422	82	116	224

자료: 보건복지부(2024a). 2023년 보육통계.

- 2023년 기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자 중 현직 종사자는 359,197명 중 28.818명으로 약 8%임

〈표 Ⅱ-2-19〉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자 및 현직종사자 현황

(단위: 명, '23.12월말 기준)

구분	자격증 취득자(A)	현직 종사자(B)	현직 종사비율(B/A)
어린이집 원장	359,197	28,818	8.0%

주: 2023.12월 말 기준임으로 〈표II-3-13〉의 어린이집 원장 수와 8명 차이는 시스템상 정보 미일치자에 해당함 자료: 보건복지부(2024a). 2023년 보육통계.

- 현직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경로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어린이집 원장,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

-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II-2-20〉과 같음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의 경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받은 후 일정 경력 또는 관련학과 석사학위 등을 통해 원장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21,7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유·초·중·고등 정교사, 유치원장,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원장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2,300명임.
-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의 경우 보육교사 1급, 또는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지니고 보육경력을 합산하여 원장 자격을 취득하는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Ⅱ-2-20〉 현직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 경로 현황

(단위: 명, '23.12월말 기준)

자격 종류		인원	
	보육교사 1급	보육교등 아동복지업무 경력/관련학과 석사/사회복지업무 경력	21,713
	유치원 정교사	유치원 정교사 1급 또는 2급 취득 후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463
	유·초·중· 고등 정교사	사회복지업무 경력/교육업무 경력	898
일반	유치원 원장	유치원 원장 자격자 + (사전직무교육)	408
어린이집 원장	양성 교육	시설장 양성교육과정 이수자, 자격보완교육	426
	사회 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취득 후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사회 복지업무 경력	81
	기타 자격 (간호 (조무)사, 7급 공무원, 의사)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사회복지업무 경력	24
		24,013	
가정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1급 + 보육업무 1년 + 사전직무교육	953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 보육업무 2년	887
		소계	1,840
장애아	일반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 졸업 + (사전직무교육)	130

자격 종류		자격기준				
전문	어린이집	일반자격 + 장애아어린이집 2년 이상 경력 + (사전직무교육)	299			
어린이집	원장	일반자격 +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수료	813			
원장		1,242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2005.1.29. 이전 기준 보육교사(1, 2급)	1,723			
총계						

주: 1) 위 자료는 최종 원장자격 취득 경로로 2023.12월 말 기준임. 2) 사회복지업무 경력은 2005. 1. 29. 이전 자격기준에 해당함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24), 보육 DW 시스템 통계. 내부자료.

3. 현행 유치원 교원과 보육교직원 연수 체계 비교

가. 유치원 교원

1) 연수 시수 및 내용

- □ 유치원 교원의 연수 체계 관련 법령 검토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시행령)」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에서는 유 치원 교원의 연수는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로 구분하고 있음.
 - 자격연수는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로, 자격연수 연수 과정은 준 교사, 정교사, 수석교사, 원감, 원장 등으로 구분하고, 연수자 선발은 원장·원 감·수석교사의 경우 자격연수 대상자 순위명부에 따라 교육청이 선정하며 前 자격연수 성적순을 등재하며, 정교사 1·2급의 경우 원장 추천자 중에서 경력 순으로 교육청이 선정함. 연수내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함을 명시함.
 - 직무연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 향상 필요한 자, 휴직복귀자, 그 외 교육 연구 및 직무능력 배양 필요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직무연수의 연수 과정과 내용은 연수원장이 정함을 명시함.

〈표 Ⅱ-3-1〉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조항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 목적, 연수기관 종류 및 설치, 연수원 평가, 시정명령, 연수대상(교원), 위탁 및 지정연수, 연수 종류, 연수기간, 연수비 등
	제 3조(연수대상) ▷ 연수원의 연수 대상 1. 교육연수원: 유아교육법 제 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2. 교육행정연수원: 유치원 및 학교에 근무하는 원장·원감 등
전체	제 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 ▷ (1항) 연수는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로 구분 1. 직무연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 향상 필요한 자, 휴직복귀자, 그 외교육 연구 및 직무능력 배양 필요자 2. 자격연수: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 ▷ (2항) 직무연수의 연수 과정과 내용은 연수원장이 정함 ▷ (3항) 자격연수 연수 과정은 준교사, 정교사, 수석교사, 원감, 원장 등으로 구분하고, 연수자 선발 및 연수내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함 ▷ (교육부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연수대상자의 선발), 제4조의 2(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의 선발), 제7조(연수과정 등)
	제 7조(연수기간) ▷ 자격연수의 연수 기간 및 이수 시간은 [별표1]에 의하고, 직무연수의 연수기간은 해당 연수원장이 정함 ▷ [별표1] (준교사, 정교사, 수석교사, 원감 등) - 15일 이상/90시간 이상 (원장 등) - 25일 이상/180시간 이상
	 ○ 연수 이수 실적의 기록·관리 - (1항)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 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연수실적을 학점화할 때에는 이수 시간 기준으로 15시간 당 1학점으로 함 - (2항)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 제8조의3에 따른 교원의 연수 이수 실적을 해당 교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함
제8조	제 8조(연수비의 지급 등) ▷ 연수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연수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가능
	제 8조의 2(직무연수 지침 마련 등) ▷ (1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연수기간 및 연수과정, 연수자 관리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연수원장 등에게 통보 가능
	제 8조의3(연수실적의 기록·관리) ▷ (1항) 교원 임용권자에게 소속 교원 연수 이수 실적을 학점화하여 기록·관리할 의무를 부과 ▷ (2항) 교원 연수 이수실적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에 위임

- 주: 1) (연수기관 종류)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원격교육연수
 - 2) (연수종류) 직무연수(직무수행능력 향상), 자격연수(상급자격증 취득)
 - 3) (연수기간) 직무연수(연수기관장이 정함)

 - 4) 자격연수(정교사-15일/90시간 이상, 원장-25일/180시간 이상) 5) (연수비) 연수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실비 전부 또는 일비 지급 가능 근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59호, 2021. 1. 5., 일부개정].

가) 자격연수

- □ 유치원 교원의 자격연수 시수 및 내용
 - 「유아교육법」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기준 중 하나로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을 갖고 2년 이상 경력 및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기준 중 하나로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갖고 3년 이상 경력 및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원감 자격기준으로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갖고 3년 이상 경력 및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또는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갖고 6년 이상 경력 및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원장 자격기준 중 하나로 원감 자격증을 갖고 3년 이상 경력 및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원장 자격기준 중 하나로 원감 자격증을 갖고 3년 이상 경력 및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라고 명시하여 상급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 의무 이수를 명시하고 있음.
- □ 자격별 연수 시수 및 영역별 배정 비율
 - 원장·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179 호] 에 따른 자격별 연수 시수 및 영역별 배정 비율을 살펴보면 정교사, 수석 교사, 원감의 자격연수 총 시수는 90~135시간이며, 총 시수의 영역별 배정 비율은 기본역량 30~50%, 전문역량 50~70%임. 원장의 자격연수 총 시수는 180~270시간이며, 총 시수의 영역별 배정 비율은 기본역량 30~50%, 전문역량 50~70%로 동일함.

□ 유치원 1급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기본역량 영역(30~50%)의 핵심역량은 성찰(5~15%), 교 사리더십(10~15%), 자율(15~20%)로 제시됨. 성찰은 교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소양과 자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해 성찰하는 역량으로 정의하며, 성찰 역량의 요소로 교육 철학, 교직 윤리, 자기 관리, 교직 생애 관리, 교직관을 제시함.
- 성찰 역량 연수 주제의 예시로 인문학소양, 교육관·사회관·교직관, 생애주기 자기관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언급하고 있음. 교사리더십은 미래사회 비전 및 국가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교사로서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 량으로 정의하며, 교사리더십 역량의 요소로 세계 교육 동향, 교육 정책, 교 육 현안, 사회 및 환경 변화 대응을 제시함. 교사리더십 역량 연수 주제의 예 시로 □ 미래 사회 및 환경 변화와 교육, □ 세계 주요국 교육 동향. □ 교육

정책 및 교육 현안, □ 교육 혁신 사례, □ 민주시민교육, □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을 언급하고 있음. 자율 역량은 연수기관의 자율 편성으로 안내함.

-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전문역량 영역(50~70%)의 핵심역량은 수업 (15~20%), 생활지도(10~15%), 교육공동체 참여(10~15%), 자율(15~20%)로 제시됨. 수업은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을 개선하는 역량으로 정의하며, 수업 역량의 요소로 교육과정 이해, 교수학습 설계, 학습자 특성 이해, 수업설계, 학생평가(「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라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의 전공내용 포함)를 제시함. 수업 역량연수 주제의 예시로 교육과정 재구성, 학습자 중심 수업 설계, 과정 중심 평가, 수업 혁신,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언급하고 있음. 생활지도는 학생 성장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학교 생활 적응을 유도하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을 위하여 상담·지도하는 역량으로 정의하며, 생활지도 역량의 요소로학생상담, 생활지도, 진로지도, 학생 공감을 제시함.
- 생활지도 역량 연수 주제의 예시로 □ 학생 상담, □ 진학·진로 지도, □ 학교 폭력 예방, 학교 부적응학생 지도,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장 애이해교육(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 교육 포함), *안전교육을 제시하고 있 음(*는 필수과목). 교육공동체 참여는 민주적 학교 공동체 운영에 참여하고, 학부모 및 지역 사회와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역량으로 정의하며, 교육공 동체 참여 역량의 요소로 학부모 상담, 학급운영, 학교 업무, 지역사회 참여 를 제시함. 교육공동체 참여 역량 연수 주제의 예시로 학급 담임 업무, 학부 모 상담 및 민원 대응,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학생 인권 존중, 교육 법 규 이해를 제시하고 있음. 자율 역량은 연수기관의 자율 편성으로 안내함.

□ 유치워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표 II-3-2)과 같음.

〈표 Ⅱ-3-2〉 연수 방법 및 시간

경기도교육청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계획(예시) 연수형태: 혼합(집합+원격)

계	강의	사례	실습	발표	원격	실행 학습	공연	평가
100h	33h	10h	17h	2h	18h	18h	2h	0

자료: 경기도교육연수원(2023).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내부자료

〈표 Ⅱ-3-3〉 연수 과정 편성

영역	역량	강좌명	운영방법	시수			
기보		자격연수의 이해(사전연수)	사전(줌)	2			
기본 역량	성찰	수업성찰	원격콘텐츠	1			
70		나는 유치원교사입니다	원격콘텐츠	1			
		우리들의 공감토크	대면	1			
		연수 나눔과 성찰(나눔 및 문화공연)	대면	2			
	1.1.2.1	성장하는 교사	대면	2			
	성찰	교사 자기이해와 소통	대면	2			
		교사의 지혜로운 말	대면	2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	원격콘텐츠	1			
		변화하는 시대, 코로나 이후의 유아교육	원격콘텐츠	1			
	교사 리더십	교사 스스로를 새로이 바라보다	원격콘텐츠	1			
		2023 경기유아교육정책	줌	2			
		유치원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줌	2			
기본		유치원 에듀테크 실습1,2	줌	5			
역량		미래사회와 교사 리더십	줌	2			
		갑질 예방교육: 갑질의 이해	원격콘텐츠	1			
		즐거움이 배가되는 유·초 연계놀이	원격콘텐츠	1			
		놀이를 통한 장애공감문화 조성	원격콘텐츠	1			
		청렴수행력 향상비법	원격콘텐츠	1			
	자율	모두가 행복한 통합교육	줌	2 -			
	시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유아환경교육	줌	2			
		함께하는 발돋움(문화공연)	대면	1			
		교원인사와 복무	줌	2			
		명화와 연계한 원예활동으로 마음챙김	줌	2			
		실행학습1	대면	3 ·			
	계·						

자료: 경기도교육연수원(2023).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내부자료

〈표 Ⅱ-3-4〉 연수 과정 편성

영역	역량	강좌명	운영방법	시수
		신박한 놀이 잇 아이템	원격콘텐츠	1
		유아 놀이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한 지원	원격콘텐츠	1
	수업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줌	2
		놀이와 배움을 잇는 평가	줌	2 -

영역	역량	강좌명	운영방법	시수				
		다양한 유치원 교육과정 사례	대면	2				
		놀이중심교육과정 운영사례	대면	2				
		놀이워크숍1,2,3,4	대면	8				
		바깥놀이에서의 신체활동과 안전교육	원격콘텐츠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원격콘텐츠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원격콘텐츠	1				
	생활 지도	2023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	원격콘텐츠	1				
		놀이 속에서 자라는 유아시민역량	줌	2				
		유아 바른 인성의 첫걸음, 유아인성교육	줌	2				
		유치원 성교육 및 성행동문제 대응의 실제	줌	2				
전문		뭉치고 레벨업(유치원 전문적 학습공동체)	원격콘텐츠	1				
역량		유아의 삶에서 놀이로 시작하는 마을교육과정	원격콘텐츠	1				
	교육	교원지위법 및 교육활동 보고	원격콘텐츠	1				
	공동체	자율과 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유치원	대면	2				
	참여	학부모와 행복한 동행	대면	2				
		행복한 학급 운영 및 사례	대면	4				
		교직단체의 이해	줌	1				
		초등교사가 들려주는 1학년 교육	줌	2				
		실행학습2	대면	3				
	TIO	실행학습3	대면	3				
	자율	실행학습4	대면	3				
		실행학습5	대면	3				
		실행학습6	대면	3				
	д .							

자료: 경기도교육연수원(2023).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내부자료

- □ 수석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수석교사 자격연수 기본역량 영역(30~50%)의 핵심역량은 성찰(5~15%), 수석교사리더십(10~15%), 자율(15~20%)로 제시되었으며, 정의 및 역량 요소, 예시 연수 주제는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기본역량 영역과 동일함.
 - 수석교사 자격연수 전문역량 영역(50~70%)의 핵심역량은 교육 연구(15~20%), 수업 지원(15~20%), 생활지도 지원(5~10%), 자율(15~20%)로 제시됨.
 - 교육연구는 교수직 전문가로서 교육과정, 교수-학습, 학생지도, 장학 등에 관

- 해 연구 개발하는 역량으로 정의하며, 교육 연구 역량의 요소로 교육과정 연구, 학습자 특성 연구, 교재 연구, 수업 연구, 연수, 학습공동체를 제시함.
- 교육 연구 역량 연수 주제의 예시로 □ 교육과정 재구성 연구, □ 수업 혁신 연구, □ 초임교사 멘토링 연구, □ 학습환경 조성 연구, □ 학습부진학생 지 도 연구, □ 다문화교육 연구, □ 교내 학습공동체 조직 및 운영을 안내함.
- 수업 지원은 교사들의 수업 개선 활동에 대한 컨설팅 역량으로 정의하며, 수업 지원 역량의 요소로 수업 컨설팅, 수업혁신 지원, 수업 분석 및 평가, 연구수업, 교내 장학을 제시함.
- 수업 지원 역량 연수 주제의 예시로 □ 수업 분석 및 수업 평가, □ 교내수업 개선 컨설팅, □ 교외 수업 개선 컨설팅, □ 학년별 수업 지원, □ 교과별 수업 지원을 안내함.
- 생활지도 지원은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진로지도 활동에 대한 컨설팅 역량으로 정의하며, 생활지도 지원 역량의 요소로 생활지도 컨설팅, 생활·진로지도 지원, 생활지도 분석 및 평가를 제시함.
- 생활지도 지원 역량 예시 연수 주제로 □ 학생 생활지도·상담 지원, □ 생활지도 컨설팅,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장애이해교육(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 교육 포함), *안전교육을 안내함(*는 필수과목). 자율역량은 연수기관의 자율 편성으로 안내함.
- □ 수석교사 자격 연수 예시를 살펴보면 〈표 Ⅱ-3-5〉 와 같음.

〈표 Ⅱ-3-5〉 수석교사 자격 연수 예시

영역	핵심역량	과목	시수
		명상과 자기성찰(교사 치유와 소진 회복)	2
		여행에서 찾은 인생의 길	2
		성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필수)	2
7111	성찰	감성으로 채우는 예술 산책 - 해설이 있는 음악회	2
기본 역량		모듈 1 : 실천하는 리더십 〈강의〉실천하는 리더십이란? 〈분반 토의ㅣ〉수석교사의 실천하는 리더십 (유초, 중등 분리)	2
	수석교사	소통의 힘, 성찰과 공감을 통한 건강한 관계 맺기	2
	리더십	디지털 전환과 미래 사회의 변화	2

영역	핵심역량	과목	시수
		세계 주요국 교육 동향 및 수석교사제 사례	2
		〈정책〉미래 교육을 여는 수석교사	1
		〈특강〉회복적 생활교육과 교직의 사명	2
		민주적·협력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수석교사의 역할(유초등, 중등 분리)	2
		에듀테크: 교육의 가치를 위한 현명한 의사결정	2
		교권 침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 (교권 보호 관련 법령 탐색)	2
		MZ세대가 쓴 MZ세대 사용설명서	2
	자율	〈상담 지원 및 회복적 생활 교육〉(콘텐츠) 학교폭력해결의 교육적 관점과 회복적 생활교육 관계 개선을 위한 회복적 대화	2
		〈국내체험연수〉 - 지역의 자연 생태, 문화, 예술 체험을 통한 학교의 지역사회 협력 탐색	6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필수, 콘텐츠)	1
		장애인 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필수, 콘텐츠)	1
		모듈 2: 교육과정 재구성 〈강의, 사례〉교육과정 재구성의 이론과 실제 (유초등, 중등 분리) 〈실습〉교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유, 초, 중등 분리)	4
70	교육연구	모듈 3 : 수업 혁신 I 〈강의, 시연〉학습자 맞춤형 수업 혁신 이론과 실제 (통합) 〈사례 연구〉학습자 맞춤형 수업 혁신 연구(유, 초, 중등 분리) 〈분반 토의 II〉학생 맞춤형 수업 혁신과 기초학력지원 방안(유초, 중등 분리)	6
전문 역량		모듈 4 : 수업 혁신 II 〈강의, 시연〉 AI·디지털 학습 혁명을 통한 교육과정 및 수업 변화(통합) 〈실습〉 AI·디지털 기반 수업·학급 운영 (유, 초, 중등 분리)	6
		초임교사 멘토링을 위한 메타인지 수업	2
		학교 공간 혁신과 미래 교육(콘텐츠)	2
	수업지원	모듈 5 : 수업 연구 (수업 관찰·분석·평가) 〈강의〉수업 연구(수업 관찰·분석·평가)의 이론과 실제(통합) 〈실습〉수업 관찰·분석·평가 실습 (유, 초, 중등 분리)	6

영역	핵심역량	과목	시수
		〈실습〉 수업 혁신과 과정 중심 평가 실습 (유, 초, 중등 분리)	
		모듈 6 : 효과적인 수업 컨설팅 및 교내 장학 〈사례 강의〉효과적인 수업 컨설팅과 교내 장학의 실제(통합) 〈실습〉수업 컨설팅과 교내 장학 실습(유, 초, 중 등 분리) 〈분반 토의 Ⅲ〉효과적인 수업 컨설팅 및 코칭(유 초, 중등 분리)	6
		모듈 7 : 전문학습공동체 운영 〈사례 강의〉효과적인 전문학습공동체 운영의 실 제(통합) 〈토크콘서트〉학교가 바라는 수석교사와 수석교사의 역할 모델 (통합)	4
	생활지도지원	모듈 8 : 생활지도, 진로지도 컨설팅 〈강의〉생활지도, 진로지도 컨설팅 방안 (유초등: 생활지도, 중등: 진로교육 분리) 〈시례 연구〉생활지도, 진로지도 분석 및 평가 시례 연구 (유초등, 중등 분리) 〈실습〉교사의 생활지도, 진로지도 컨설팅 실습(유 초등, 중등 분리)	6
		〈안전교육〉(필수, 콘텐츠) - 학교안전사고 주요 사례 - 학교안전사고 대응과 처리 절차 - 가정폭력의 예방 및 대응 - 상황별 응급처치	4
		기후 위기와 생태·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2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해소 (맨발 걷기의 효과와 실제)	2
		이미지 메이킹으로 수석교사 세우기	2
	자율	(국내체험연수) - 우수 운영 학교(유치원) 사례 탐방 및 공유 - 수석교사의 책무성 및 소통·공감을 통한 교육 비전 공유 - 생태·문화 체험을 통한 수석교사의 인문 소양 체험	9
		○ 평가(과정평가 포함) - 역량평가 - 국내체험연수 보고서	2
		합계	100

자료: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2024). 2024 수석교사연수 안내(pp.2-4) 내부자료

- □ 원감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원감 자격연수 기본역량 영역(30~50%)의 핵심역량은 성찰(5~15%), 원감리 더십(10~15%), 자율(15~20%)로 제시되었으며, 정의 및 역량 요소, 예시 연수 주제는 유치원 1급 정교사, 수석교사 자격연수 기본역량 영역과 동일함.
 - 원감 자격연수 전문역량 영역(50~70%)의 핵심역량은 교무 운영(15~20%), 교육 지원(10~15%), 업무 조정 및 갈등 관리(10~15%), 자율(15~20%)로 제 시됨. 교무 운영은 학교장을 보좌하여 학교 업무를 운영하는 역량으로 정의 하며, 교무 운영 역량의 요소로 학교 행정·회계 이해, 업무 절차 이해, 행정 업무 조정. 교육법 이해를 제시함. 교무 운영 역량 연수 주제의 예시로 🗆 학 교교육계획 관리, □ 학교 행정 업무시스템, □ 학교 운영 관련 법규, □ 학 교 재무·회계, □ 교무행정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학교 업무분장을 안내 함. 교육 지원은 교내 장학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역량으로 정의하며, 교육 지원 역량의 요소로 교육과정 운영, 교내 장학, 연 수 지원, 다문화·인성 교육, 수업혁신, 교수-학습 지원을 제시함. 교육 지원 역량 연수 주제의 예시로 ㅁ 학교 교육과정 운영, ㅁ 연구 수업 관리, ㅁ 자 율 장학 및 교내 연수. □ 학생 인권 존중.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역량강화 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이해교육(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 교육 포함), *안전교육을 안내함(*는 필수과목). 업무 조정 및 갈등 관리는 다양한 학내 조직을 관리하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량 으로 정의하며, 업무 조정 및 갈등 관리 역량의 요소로 조직 관리, 인사 관 리, 갈등 관리,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제시함. 업무 조정 및 갈등 관리 역량 예시 연수 주제로 □ 교원 인사·복무 관리, □ 학교계약직 및 교육공무직 관 리, 🛘 교내 위원회 관리, 🗘 교직원 갈등 관리, 🗘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대 응, 🗆 학교 민원 예방 및 대응,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강화 교육을 안내함. 자율 역량은 연수기관의 자율 편성으로 안내함.

□ 핵심역량별 예시는 다음과 같음.

- 교무 운영은 학교장을 보좌하여 학교 업무를 운영하는 역량으로 정의하며, 교무 운영 역량의 요소로 학교 행정·회계 이해, 업무 절차 이해, 행정업무 조정, 교육법 이해를 제시함.
- 교무 운영 역량 연수 주제의 예시로 □ 학교교육계획 관리, □ 학교 행정 업

- 무시스템, □ 학교 운영 관련 법규, □ 학교 재무·회계, □ 교무행정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학교 업무분장을 안내함.
- 교육 지원은 교내 장학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역 량으로 정의하며, 교육 지원 역량의 요소로 교육과정 운영, 교내 장학, 연수 지원, 다문화·인성 교육, 수업혁신, 교수-학습 지원을 제시함.
- 교육 지원 역량 연수 주제의 예시로 □ 학교 교육과정 운영, □ 연구 수업 관리, □ 자율 장학 및 교내 연수, □ 학생 인권 존중,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역량 강화 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이해교육(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 교육 포함), *안전교육을 안내함(*는 필수과목).
- 업무 조정 및 갈등 관리는 다양한 학내 조직을 관리하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량으로 정의하며, 업무 조정 및 갈등 관리 역량의 요소로 조직 관리, 인사 관리, 갈등 관리,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제시함.
- 업무 조정 및 갈등 관리 역량 예시 연수 주제로 □ 교원 인사·복무 관리, □ 학교계약직 및 교육공무직 관리, □ 교내 위원회 관리, □ 교직원 갈등 관리, □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대응, □ 학교 민원 예방 및 대응,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강화 교육을 안내함. 자율 역량은 연수기관의 자율 편성으로 안내함.
- 경기도교육청의 원감 자격 연수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Ⅱ-4-5〉과 같음.

/∓	Π-3-	-6)	워간	자겨	여스	예시
\ш	шо	U/		\sim		vii

	교육부				+	운영실타	l		시간 비율 (%)
영 역	파파구 핵심 역량	경기도 핵심역량	강좌명(주제)	학기중 쌍방향	학기중 단방향	학기중 실행 학습	방학중 쌍방향	방학중 집합	
			경기미래교육(교육감특강)					2	
		자기관리 역량 · 비전설정	경기유이교육정책, 현장을 말하다					2	
	성찰		교육철학의 중요성 및 교육철학 세우기		1				8
기본			성희롱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		1				
역량		및 공유 역량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		1				
			실행학습			1			
	교(원)감	- ' <u>-</u> 운영체제	미래 유아교육과 리더의 역할					2	
	리더십		원감 자격연수 과정의 이해	2					12

	704				;	운영실티	H		
හ හ	교육부 핵심 역량	경기도 핵심역량	강좌명(주제)		학기중 단방향	학기중 실행 학습	방학중 쌍방향	방학중 집합	시간 비율 (%)
			소통과 연결로 펼치는 경기미래학교	2					
		71141 (471	함께 성장하는 교(원)감 리더십 (부교육감 특강)					2	
			AI풀스택 시대를 준비하는 원감의 역할					2	
			실행학습			2			
		변화대응 역량 교직 전문성 개발 역량	Cantavel -음악과 여행이 있는 콘서트-					3	
			갑질,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청렴교육				2		
			교육공동체 운영 지원 사례1 (디지털 기반 교육과정)					1.5	
	710		교육공동체 운영 지원 사례2 (부모 협력)					1.5	17
	자율	자기 관리	예술, 내 삶에 깃들다					2	17
		역량	생태로 마음 잇기					2	
		교육생태계	연수 성찰과 나눔					1	
		구축 역량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실천적 유아 생태전환교육의 이해		1				
			유아에게 꼭 필요한 디지털 시민교육 1, 2		1				
			실행학습(자율기획형 체험학습)			2			
		소 ⁷	1(30-50%)	4	5	5	2	21	37
		교무학사	자율과 균형의 협력적 유치원 운영				2		
		운영역량 학교운영체제	특수교육대상 유아에 대한 이해와 통합학급 지원				2		
70	교무	역보조 3세세 구축 역량	원감으로서 알아야 할 교육 법규의 이해				2		17
전문 역량	운영		교무학사 운영과 지원				3		17
10		운영역량	유치원 회계의 이해				2		
		· 교직원 성장	유치원 감사 이해와 실제					2	
		지원 역량	모르면 나도 범죄자? -저작권법		1				
			실행학습			3			
	교육	학교	자율장학 활성화 방안				3		15

	тон				÷	운영실티	H		시간
명 역	교육부 핵심 역량	경기도 핵심역량	강좌명(주제)	학기중 쌍방향	학기중 단방향	학기중 실행 학습	방학중 쌍방향	방학중 집합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 이해와 실제					3	
		正경세세 :	원감을 위한 경제 상식					2	
		구축 역량 ·	유치원 안전사고의 유형과 사고대처방법		1				
	지원	학교교육과정 운영역량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역량 강화 교육 1,2차시		1				
		변화대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공공 부문 종사자 예방교육		1				
		역량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1, 2차시		1				
			실행학습			3			
	업무	정 구독 익당 및 학교문화 등 조성역량	교육공동체 소통대화법 -상담 기술-				2		
	조정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2		10
	및 갈등		교원인사와 복무					3	13
	관리		교육공동체 갈등관리					3	
			실행학습			3			
			기후위기대응과 지속가능발전교육				2		
		70-111	행복을 이어가는 유아 인성교육				2		
		교무학사 운영역량	다양성과 상호공 존 을 위한 다문화교육 이해 및 실제				2		
		교직 전문성 개발역량	함께 배우고 자라는 유·초 이음교육					2	
	자율	자기 관리	리더의 품격					2	18
		역량	멘토가 들려주는 원감이야기					2	
		. 교으새태게	긴급복지 신고의무교육		1				
		교육생태계 구축 역량	유아 놀이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한 지원		1				
			논술형 평가					2	
			실행학습(자율기획형 체험학습)			2			
			(50~70%)	0	17	21	24	21	63
		į	통계	4	12	16	26	42	100

자료: 경기도교육연수원(2024a). 2024 원감자격연수 안내(pp.2-3) 내부자료

- □ 원장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원장 자격연수 기본역량 영역(30~50%)의 핵심역량은 성찰(5~15%), 원장리 더십(10~15%), 자율(15~20%)로 제시되었으며, 정의 및 역량 요소, 예시 연수 주제는 유치원 1급 정교사, 수석교사, 원감 자격연수 기본역량 영역과 동일함.
 - 원장 자격연수 전문역량 영역(50~70%)의 핵심역량은 교육 기획(15~20%), 조직·인사 관리(10~15%), 학교 경영(10~15%), 자율(15~20%)로 제시됨.
 - 교육 기획은 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교육혁신 전략 및 성과를 관리하는 역량으로 정의하며, 교육 기획 역량의 요소로 교육 혁신, 학교교육 계획, 성과 관리, 학교문화 구축을 제시함.
 - 교육 기획 역량 연수 주제의 예시로 □ 학교 교육 비전 및 목표 관리, □ 국 내외 학교교육 혁신 사례, □ 수업혁신 지원 사례, □ 다문화 교육, □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 □ 학생 인권 존중, *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역량강화 교 육,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장애이해교육(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 교육 포함)을 안내함(*는 필수과목).
 - 조직·인사 관리는 학내 인사 및 조직을 관리하고, 학내 제반 상황과 분쟁을 조정·해결하는 역량으로 정의하며, 조직·인사 관리 역량의 요소로 인사 관리, 조직 관리, 갈등 관리, 분쟁 조정을 제시함.
 - 조직·인사 관리 역량 연수 주제의 예시로 □교직원 인사 관리, □학교 조직 관리, □동기부여 및 조직 혁신, □학내 갈등 관리,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강화 교육을 안내함(*는 필수과목).
 - 학교 경영은 학교의 최고 대표자로서 학교업무를 통할하고 학교경영을 혁신 하는 역량으로 정의하며, 학교 경영 역량의 요소로 시설 관리, 재무·회계 관리, 교육법 이해를 제시함.
 - 학교 경영 역량 예시 연수 주제로 □ 학교 사무관리, □학교 시설·설비 관리, □학교 재무·회계 관리, □학교 운영 관련 법규, □학부모 학교 운영참여, □ 지역사회 자원 활용, * 안전교육을 안내함(*는 필수과목). 자율 역량은 연수기 관의 자율 편성으로 안내함.
- □ 원장 자격 연수 예시(경기도교육청)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3-7〉과 같음.

〈표 Ⅱ-3-7〉 원장 자격 연수 예시

영역	핵심 역량	과목 및 교육내용	시수	운영방안	비율 (기준)	
		• 교직생애 되돌아보기	2	· 분반토의		
		· 유치원장의 역할 기대와 성찰। - 교육공동체가 바라는 원장 상		・ 강의(2)		
		· 유치원장의 역할 기대와 성찰II	6	· 분반토의(2)		
		· 유치원장의 역할 기대와 성찰III · 종합발표회(2)				
		[명사특강ㅣ] 한국 사회와 교육의 변화	6		11.5	
	성찰	- 사회적 조망	(2)		%	
	(23)	- 심리학적 조망	(2)	· 명사 특 강	(5~ 150()	
		- 기술·과학적 조망	(2)		15%)	
		- 경제학적 조망				
		ㆍ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1	· 원격컨텐츠 (교육부필수과목)		
		[멘토링] 원장 상에 대한 토의/토론	2	· 토의		
		[해외교육체험] 이상적 유치원 운영 비전 공유	6	· 체험/토의		
		[명사특강] 세상을 바꾼 리더십	6			
기본		- 국제 정세와 국가 간 관계	(2)			
역량 (70)	원장	- 세계 교육 강국의 동향과 리더십	(2)	· 명사특강		
(79) 39.5		- 역사에 나타난 리더의 자세	(2)			
%		- 문화·예술에서 리더의 창조적 혁신	(2)		16%	
	리더 : 십	· 리더십 진단 이해	1	· 강의	(15~	
	(24)	· 리더십 코칭 I (진단 분석)	3		20%)	
		· 리더십 코칭II(커뮤니케이션)	2	• 분반실습		
		· 리더십 코칭III(퍼실리테이션)	2			
		[멘토링] 원장 리더십(문제해결을 위한 소통)	4	· 강의/토의		
		[해외교육체험] 시대변화에 따른 미래교육 리더십	6	· 유치원방문		
		· 디지털 전환과 미래 교육의 변화	2	· 강의(교과명변경)		
		· 유아·놀이 중심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2	ㆍ 강의		
	자율	 디지털 리터러시 및 인공지능 도구 활용 챗GPT활용, AI영상제작, 릴스/쇼츠제작, APP 활용등 	4	· 분반강의(2)/ 분반실습(2)	16% (15~	
	(32)	· 영유아 중심 교육·돌봄의 실천과 방향	2	· 강의	20%)	
		· 기후위기와 생태환경교육	2	· 강의		
		· 해설이 있는 음악회(Story Classic)	2	· 강의/체험		
	_	· 유치원장 이미지 메이킹	2	・ 강의/체험		

영역	핵심 역량	과목 및 교육내용	시수	운영방안	비율 (기준)
		· 여행에서 찾은 인생의 길	2	· 강의/체험	
		·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마약류 예방교육 포함)	2	· 강의/체험	
		[멘토링] 에듀테크의 활용과 유치원의 변화	2	· 체험/토의	
		[현장방문] 지역사회 이해 및 소통과 협력	2	· 체험/토의	
		[해외교육체험] 체험을 통해 보는 지속가능발전교육	8	ㆍ 체험	
		· 미래 유아교육 발전 방향에 관한 고찰	2	• 강의	
		· 유치원 교육 비전 및 목표 관리	2	· 강의	
		·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 강의/사례	
		· 학생맞춤통합지원체제의 이해	2	• 강의	
		· 유·보-유·초 이음교육의 이해와 협력	2	· 강의/사례	
		· 유치원 문화예술교육의 실천 방향	2	· 강의/사례	
		· 협력 기반의 유아특수교육 실천	2	· 강의/사례	
	교육	· 장애이해교육(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교육)	2	· 원격컨텐츠 (교육부필수과목)	18%
	기획 (36)	·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역량강화 교육	2	· 원격컨텐츠 (교육부필수과목)	(15~ 20%)
		ㆍ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1	· 원격컨텐츠 (교육부필수과목)	
전문		•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1	· 원격컨텐츠 (교육부필수과목)	
역량 (121)		[멘토링] 유치원운영계획 작성 및 공유ㅣ,॥ 시도교육정책 내용 협의	8	· 사례공유/토의	
60.5 %		[해외교육체험] 교육과제 해결 방안 모색	8	· 교육기관방문(4), 특강(4)	
		· 유치원 조직 혁신과 교원 동기 부여 - 교직원 역량 개발과 학습공동체 지원	2	・강의	
		• 유치원 노사 관련 법규의 이해와 실제	2	・ 강의/사례	
		• 효과적인 인사관리 전략	2	ㆍ 강의	
		·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	2	· 강의	
	조직	· 성 인권 및 성인지의 이해	2	· 강의	13%
	인사 관리 (26)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강화 교육	1	· 원격컨텐츠 (교육부필수과목)	(10~ 15%)
	(26)	· 갈등 관리와 합리적 의사결정	2	· 원격컨텐츠활용	
		[멘토링] 유치원 조직 및 인사관리 실제	2	· 체험/토의	
		[현장방문] 조직혁신및교원의동기부여	2	· 체험	
		[해외교육체험] 함께 성장하는 우리 교육	8	· 유치원방문/ 간담회	

영역	핵심 역량		과목 및 교육내용	시수	운영방안	비율 (기준)
		법규	· 유치원운영관련법규의 이해와실제	2	· 강의/사례	
		нп	· 학교회계 관련 법규의 이해 및 회계 감사	2	・ 강의/사례	
	유치	회계	· 유치원 예산 편성·운영 - 유치원 예산 편성과 클린재정시스템의 활용	4	· 사례강의(2) + 실습(2)	
	원 경영		• 유치원 안전사고 사례 및 보상제도	2	・교육부필수과목 (강의)	13%
	(26)	안전	· 유치원 시설 설비 및 관리	2	· 강의	15%)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	· 강의	
		• 유	치원생활기록부 관리	2	・ 강의/사례	
		• 학	부모와 함께하는 유치원 경영	2	· 강의(2)	
		[멘토	링] 회계 예산 편성 실습	4	ㆍ 체험/실습	
		[해외	[해외교육체험] 유치원 경영 전략 벤치마킹		· 기업체방문	
		• 유	· 유보통합 추진 현황과 방향		• 강의	
		• 유	치원 자율성과 민주적·협력적 학교문화	2	• 강의	
		• M	Z세대가 쓴 MZ세대 사용설명서	2	· 강의	
		· 예	술인과 함께하는 교육 성찰	2	공연/토크콘서트	
		• 역	량평가	2		170/
	자율	[현징	방문]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방안	4	· 체험/토의	17% (15~
	(34)	[멘토	링] 민주적인 유치원 문화 조성 방안	4	・체험/토의	20%)
		[해외	교육체험] 체험사례 현장 적용방안 공유	8	· 토의및발표	
		통합	[통합교과ㅣ] 원장의 본질적 역할 · 분임 토의 · 분임 발표 및 종합 토의	4 (2) (2)	・ 분반토의 ・ 포럼(RP)	
		역량 (8)	[통합교과II] 유치원 교육력을 높이는 문제 해결 · 분임 토의 · 분임 발표 및 종합 토의	4 (2) (2)	· 분반토의 · 포럼(PT)	

자료: 경기도교육연수원(2024b). 2024 원장자격연수 안내. 내부자료

□ 유치원 교원의 직무연수 시수 및 내용

- 유치원 교원의 직무연수는 직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받는 연수를 의미하며, 공식 유형 구분은 없음. 다만 대상 및 형태 등에 따라 생애단계별 맞춤연수(입직기-성장기-발전기-원숙기로 구분 운영), 자율형 연수(수업 동아리 등단위기관 연수과정 운영) 등으로 구분됨.

- 직무연수 이수는 공사립 유치원 교원 모두 의무 사항이 아닌 자율이나 공립 유치원 교원의 경우 공개승진경쟁 유인으로 연간 60시간 이상 추정되며, 시 도별로 법정필수 시간 포함 여부는 상이함. 사립 유치원 교원의 경우 공개승 진경쟁 유인이 없어 연간 30시간으로 추정되며, 법정필수교육 시간을 포함함.
- 직무연수 주기는 해당 교육 필요시 자율이며,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유치원 교원 대상 신청자 중에서 학력, 경력, 연수과정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이 선정함.
- 교육내용은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교과목 구성, 교육방식(집합/원격 등), 교육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함.
- 유치원 교원 대상 법정 필수 직무 연수 교육 내용은 다음 〈표 Ⅱ-3-8〉과 같음.

〈표 Ⅱ-3-8〉 유치원 교원 대상 법정 필수교육 현황

	7174									
No	교육명	대상	이수시간 / 주기		관련 근거	미이수 시 패널티				
		부패방지청탁금지 2시간 이상 공무원 / 행동강령 매년 청탁금지법		, 처타그지번						
1	청렴 연수	교직원	갑질근절예방교육	1시간 이상 / 매년	(제19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 2),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 등					
			이해충돌방지법	30분 이상 / 매년						
			직장내 괴롭힘 예방	30분 이상 / 매년		별도 조항 없음				
2	인성교육 연수	교원	1시간 이상 / 매년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다만.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3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직원	시간 미확인	/ 매년	교원지위법	지도점검 대상이 되거나, 사고 발생 등의 상황에서				
	예방 교육	학생의 보호자	기 (세24소) _{차 기}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수	교직원	시간 미확인 / 매년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5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교직원	2시간 이상 / 매년		서울 학생인권 조례(제31조)					
6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교직원	1시간 이상	/ 매년	장애인복지법 (제25조)					

No	교육명	대상	이수시	l간 / 주기	관련 근거	미이수 시 패널티	
7	다문화	교원	교원 개인	15시간(1학점)이상 / 3년 이내	다문화가족지원		
	이해교육	. 보면	유치원 전체	2시간 이상 / 매년	법(제5조)		
8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교직원	1시간	이상 / 매년	아동복지법 (제26조)	미실시 기관의 경우 과태료 부과	
9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직원	각 1시간 이상 / 매년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법 (제5조) 성매매피해자 보호법(제5조)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미실시 기관의 경우 동법에 따른 점검 시 부진기관 선정 * (여가부) 특별교육, 학교평가 반영요구	
		교직원	15시간 0	상 / 3년마다			
10	안전교육	3년 미만 계약 체결 종사자	2시간 이상 / 매 학기 1시간 이상 / 매년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따른 고시(제4조)	별도 조항 없음 - 다만 교육을 미이수 할 경우, 지도점검 대상이 되거나, 사고 발생 등의 상황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가능	
		교육 활동 참여자			12/1(/II(+12)		
1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교직원		이상 / 매년 2시간 포함	학교보건법 (제9조의2)		
12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교직원	1시간	이상 / 매년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13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교직원	1시간	이상 / 매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별도 조항 없음. 다만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지도점검 대상이 되거	
14	정보공개제도 교육	교직원	시간 미	시간 미확인 / 매년 정5 (제6:		나, 사고 발생 등의 상 황에서 참고 자료로 활 용가능	
15	정보보안교육	교직원	서울시교육청				

No	교육명	대상	이수시간 / 주기	관련 근거	미이수 시 패널티
16	결핵예방교육	교직원	시간 미확인 / 매년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2024). 2024 서울 유아교육 계획. pp.241-242. https://buseo.sen.go.kr/buseo/bu11/user/bbs/BD selectBbsList.do?q bbsSn=1259 에서 2024. 1. 10. 인출

2) 연수 기관 및 전달체계

- □ 유치원 교원의 자격연수 기관 및 전달체계(연수대상자 선발)
 - 유치원 교원의 자격연수는 자격별 과정(원장·원감·수석교사·정교사(1급·2급) 으로 운영되며, 교육기관은 연수원(134개소: 중앙교육원(1), 시도교육연수원 (19), 교육행정연수원(1), 종합교육연수원(16), 대학부설교육연수원(80), 시도 유아교육진흥원(17))임.
 - 2024년도 17개 시도교육청별 자격연수 운영 기관은 다음 〈표 Ⅱ-3-9〉와 같음.

〈표 Ⅱ-3-9〉 2024 자격연수 기관

2024 자격연수 기관												
순번	지역	1급 정교사	수석 교사	원감	원장							
					시도정책 연수	국가정책 연수	본 연수					
1	서울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연수원	한국교원 대학교 종합교육 연수원 (위탁)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한국교원 대학교 종합교육 연수원 (위탁)					
2	경기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 위탁)		경기도교육청 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연수원							
3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교육 연수원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위탁)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교육연수원							
4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교육원							
5	충북	충청북도유아 교육진흥원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위탁)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연수원							
6	충남	충청남도교육청교육 연수원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위탁)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2024 자격연수 기관											
		1급 정교사	수석 교사	원감	원장						
순번	지역				시도정책 연수	국가정책 연수	본 연수				
7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위탁)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교육연수원						
8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위탁)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9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연수원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위탁)	경상북도교육청 연수원						
10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위탁)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11	인천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위탁)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위탁)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						
12	대구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						
13	울산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위탁)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						
14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						
15	광주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위탁)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						
16	대전	대전교육연수원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위탁)	대전교육연수원						
1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탐라교육원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탐라 교육원						

자료: 17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 교육 형태는 연수 방식(장소)에 따라 집합연수, 원격교육연수, 온·오프라인 혼합연수로 구분됨. 교육 주기는 해당 교육 필요시이고, 각 교육기관에서 수 료명단 관리 및 이수증을 배부하며 비용은 전액 지원으로 자부담은 없음. 자

격연수 성적평정은 원장, 원감,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자격 연수성적을 대 상으로 하며, 1급은 pass/non pass로 평정함.

- 자격연수 대상자의 선발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치원 1급 정교사, 원감 과정의 자격 연수 대상자는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관할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교육감이 지명함. 다만, 국립 유치원 등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원감 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인원의 범위에서 지명함.
- 또한 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교원 및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에게 연수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함. 이 경우 자격 연수 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교원 등을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에 따른 기간제 교원과 기간제 교원 외의 교원 등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른 대상자별로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명할 수 있음(개정 2019. 4. 1).

〈표 Ⅱ-3-10〉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규정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규정
제 2호	- 정교사(1급)과정의 연수 대상자: 정교사(1급)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정교사(2급)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지명할 것
제 3호	- 정교사(2급)과정의 연수 대상자: 정교사(2급)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준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지명할 것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4조 [시행 2022. 4. 27.] [교육부 령 제265호, 2022. 4. 27., 타법개정].

-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제3항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소속된 학교 또는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육 감이 공개정형을 실시하여 선발함.
- 자격연수 중 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하는 경우 국공립 유치원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순으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 등에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지명함. 또한 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

할 때에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 결과가 3급이거나 연수원에서 60시간 이상의 한국사 관련 연수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함(신설 2015. 4. 20.)

- 자격연수 중 원장과정의 연수 대상자는 원장 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같은 법 별표 1중 공모 원장으로 선발된 사람과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에 따라 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지명함. 다만 국립 유치원 등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인원의 범위에서 지명함. 원장 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할 때 국공립 유치원 등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승진 후보자 명부에 준하는 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지명함.

□ 유치원 교원의 직무연수 기관 및 전달체계

- 유치원 교원 대상 연수 주체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며, 교육기관은 연수원 (159개소: 자격 취득 연수 기관(134개소), 원격교육연수원(25개소))임. 단위 기관(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체교육도 직무연수 이수시간으로 인정함
- 교육형태는 연수 방식(장소)에 따라 집합연수, 원격교육연수, 온·오프라인 혼합연수로 구분됨
- 직무연수 비용은 공립 유치원 교원의 경우 연수원 개설 교육 시 전액 지원되어 자부담은 없으며, 민간 인가기관 개설 교육의 경우 연간 25만원 내외이며, 교육청별 지원 금액은 상이함. 사립 유치원 교원의 경우 연수원 개설 교육 시 공립 유치원 교원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되어 자부담은 없으나 민간 인가기관 개설 교육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원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교육청별지원 금액 역시 상이함.

나. 보육 교직원

- 1) 연수 시수 및 내용
- □ 보육 교직원의 연수(보수교육) 체계 관련 법령 검토
 - 보육 교직원의 연수(보수교육)는 상급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로 구분되며, 상급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는 원장 자격 취득 교육인 사전 직무교육, 보육교사(1급, 2급) 자격 취득 교육인 승급교육으로 구분되며,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는 직무교육으로 명명함. 상급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의 대상 선정은 원장과 보육교사 공통 사항으로 현직 교원 신청자들 중에서 신청순 및 경력순으로 지자체에서 선정함. 직무교육의 경우일반 직무교육, 특별 직무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별로 연수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현직 원장·보육교사 신청자 중에서 신청순 및 경력순으로 지자체에서 선정함.
 - 「영유아보육법」제23조(원장)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집합교육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보수교육 유형을 사전직무교육(원장 자격취득 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고, 보수교 육 내용에 의무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 「영유아보육법」제23조(원장)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집합교육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보수교육 유형을 사전직무교육(원장 자격취득 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고, 보수교 육 내용에 의무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또한 보수교육 기간, 방법 등을 교육부령 위임 근거 규정에 따름.
 - 「영유아보육법」제23조의 2(보육교사)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집합교육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보수교육 유형을 사전 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며, 보수교육 내용과 기간, 방법 등은 원장 보수교육과 동일하게 교육부령 위임 근거 규정에 따름.
 - 「영유아보육법」제51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권한은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 지사에게 위임이 가능하며, 제51조의 2에는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업무위탁할 수 있는 근거, 비용보조, 취소 규정이 제시되어 있음.
 - 보육 교직원의 보수교육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Ⅱ-3-11〉과 같음.

〈표 Ⅱ-3-11〉 보육교직원 연수체계	⟨₩	Π-3-1	11)	부유교진원	연수체계
-----------------------	----	-------	-----	-------	------

직무교육				승급	교육	사전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u>}</u>	특별직무교육			
보육 교사	원장	장기	영아·장애아·	1급 승급	2급 승급	원장사전 직무교육
기본 /심화	기본 /심화	미종사자	방과후	08	00	7127

주: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대체

자료: 보건복지부(2024b).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220의 표를 병합한 것임.

- □ 보육 교직원의 상위자격취득교육(승급교육, 사전직무교육) 시수 및 내용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0조에 따르면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80시간 이상을 규정하고 있음. 승급교육은 2급 승급, 1급 승급으로 구분됨. 2급 승급교육은 3급 취득 후 경력 만 1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1급 승급교육은 2급 취득 후 경력 만 2년이 경과한 자 또는 2급 취득 후 보육 관련 석사 이상 취득 및 경력 만 6개월 이상자를 대상으로 실시됨. 승급교육 이수 시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됨.
- □ 보육교사 승급교육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보건복지부, 2024).
 - 보육교사 1, 2급 승급교육의 영역(시간)은 총 4개(80시간)로 인성·소양 영역 (1급 10시간, 2급 12시간), 건강·안전 영역(1, 2급 10시간), 전문지식·기술(1급 58시간, 2급 56시간), 평가시험(2시간)임.
 - 보육교사 2급 승급교육의 영역별 교과목(시간)으로는 인성·소양 영역에서 보육과 아동권리의 이해(4시간), 직무윤리와 역할수행(4시간), 보육교사의 정신건강 이해(4시간), 건강·안전 영역에서 안전과 건강(4시간), 응급처치와 실무(2시간), 아동학대 예방과 올바른 훈육(4시간), 전문지식·기술 영역에서 영유아 관찰기록과 평가(8시간),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지원 사례(8시간), 교수학습방법의 실제(8시간), 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지도(8시간), 표준보육과정의 이해와 실제(4시간), 보육과정 장학과 실제(6시간), 특별한 보육 욕구 대상 지원(8시간), 부모상담과 가정연계(6시간)으로 명시됨.
 -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의 영역별 교과목(시간)으로는 인성·소양 영역에서 보육철학과 아동인권(4시간), 직무윤리와 역량강화(4시간), 보육교사의 정신건 강관리(2시간), 건강·안전 영역에서 영유아 안전과 건강관리(4시간), 응급처

치와 위기관리(2시간),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 양육(4시간), 전문지식·기술 영역에서 영유아 관찰기록과 평가 실행(8시간),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지원 역량(8시간), 교수학습방법 개발과 활용(6시간), 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 동 사례분석(8시간), 표준보육과정 실행과 평가(4시간), 보육장학 실행과 평 가(8시간), 특별한 보육 욕구 대상 지원과 사례탐색(8시간), 부모상담과 갈등 해결(8시간)으로 명시됨.

□ 보육교사 1, 2급 승급교육 교육과정 내용은 다음 〈II-3-12〉와 같음.

〈표 II-3-12〉 보육교사 1급·2급 승급교육 교육과정

영역	2급 승급교육		1급 승급교육	
(시간)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인성·소양 (2급 12시간, 1급 10시간)	• 보육과 아동권리의 이해 - 아동권리 이해와 보육업무 - 보육철학에 기초한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이해	4	보육철학과 아동인권 이동인권에 기초한 역할수행과 책임 어린이집의 아동인권침해 사례분석 보육철학에 기초한 포괄적 보육 서비스의 실천	4
	• 직무윤리와 역할수행 - 보육교사 직무윤리와 전문적 자질 - 보육교사의 직업 정체성과 책무 - 보육교사의 자기관리	4	직무윤리와 역량강화 무보육교사의 직무윤리와 책무성 무보육교사의 직업 정체성과 사회 인정 국내외 보육교사 역량강화 프로그 램 점	4
	• 보육교사의 정신건강 이해 - 감정노동과 스트레스 관리 - 보육환경과 감정조절능력 기르기	4	• 보육교사의 정신건강관리 - 보육환경의 정신건강 위해요인 탐 색 - 교사 상담지원과 정신건강 지원 사례	2
건강·안전 (1, 2급 10시간)	• 안전과 건강 - 안전사고 수칙과 위기대처 - 감염병 및 건강관리 - 미디어 과의존 예방	4	• 영유아 안전과 건강관리 - 안전관리 수칙과 위기관리 - 건강관리를 위한 보육환경과 지원 - 미디어 중독예방을 위한 가정양육 지원	4
	• 응급처치와 실무 - 응급처치 실시 방법 - 응급처치 대응 사례	2	• 응급처치와 위기관리 - 응급처치 실시와 사후관리 - 위급한 사고 대응 사례	2
	• 아동학대 예방과 올바른 훈육	4	•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 양육	4

영역	2급 승급교육		1급 승급교육	
(시간)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의무와 책임 - 올바른 훈육과 긍정적 양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윤리적 책 무 - 올바른 훈육과 긍정적 양육 - 학대사건의 법적·비사법적 대처와 사례탐색	
전문 지식·기술 (1급 58시간) 2급 56시간)	• 영유아 관찰기록과 평가 - 영유아 관찰법과 기록 - 놀이 및 일상 관찰을 통한 발달특성 평가 - 관찰기록과 연계한 놀이지원	8	• 영유아 관찰기록과 평가 실행 - 관찰기록에 기초한 영유아 행동 이해와 평가 - 영유아 행동 관찰과 행동발달 지 원 - 발달특성과 교수학습 연계	8
	•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지원 사례 - 긍정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 - 놀이발달 이해와 놀이지원 방법 - 놀이지원 사례	8	•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지원역량 - 효과적인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 영역을 통합한 교사 놀이지원 - 놀이지원역량 증진 사례	8
	• 교수학습방법의 실제 - 영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 - 놀이와 연계한 교수학습방법 - 블렌디드 러닝 교수학습매체	8	고수학습방법의 개발과 활용 발달특성에 적합한 개별적 교수학 습방법 전략 영유이중심 교수학습방법의 사례 연구 디지털 교수학습매체를 활용한 교 수학습방법 블랜디드 러닝을 위한 놀이콘텐츠 제작과 활용	6
	• 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지도 -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변별 - 부적응행동과 긍정적 행동지원	8	• 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사례 분석 - 긍정적 행동지원을 통한 부적응 행 동 지도 - 긍정적 행동지원 사례 - 부모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8
	• 표준보육과정의 이해와 실행 -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보육 계획 - 보육계획 실행과 평가 방법	4	• 표준보육과정 실행과 적용 -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보육계획과 실행 - 놀이계획과 실행 및 평가 - 놀이계획과 실행 우수 사례	4
	• 보육과정 장학과 실제 - 장학의 필요성과 실행 방법 - 보육과정 장학의 실제 - 보육과정 장학 우수 사례	6	• 보육장학 실행과 평가 - 보육장학의 실행과 평가 분석 - 학급운영 장학 우수 사례 - 예비보육교사 실습지도	8
	•특별한 보육 욕구 대상 지원 - 다양한 가족 특성 및 요구의	8	• 특별한 보육 욕구 대상 지원과 사례 탐색	8

영역	2급 승급교육		1급 승급교육	
(시간)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이해 -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지원 - 다문화아동을 위한 보육지원 - 조손가족을 위한 보육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이해와 적용		- 다양한 가족 특성과 요구의 이해 -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지원 사례 탐색 - 다문화아동을 위한 보육지원 사례 탐색 - 조손가족을 위한 보육지원 사례 탐 색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이해와 적용	
	• 부모상담과 가정연계 -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부모 상담 - 부모상담 우수 사례	6	• 부모상담과 갈등해결 - 어린이집 연계 가정양육지원 상담 - 부모상담 우수 사례 - 교사-부모 갈등해결 우수 사례	8
평가시험	2급 승급교육 평가시험	2	1급 승급교육 평가시험	2
 계	14과목+평가시험	80	14과목+평가시험	80

자료: 보건복지부(2024b) 2024 보육사업안내, pp.230-231.

-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 교육은 원장 사전 직무교육으로 진행되며, 원장 사전 직무교육은 3개 영역(인성, 건강·안전, 전문지식·기술) 18개의 교과목에 대하여 80시간 교육 및 평가시험을 실시함. 원장 사전 직무교육은 3개 영역 14개 교과목에 대하여 80시간 교육 및 평가 시험을 실시함. 1급 자격 취득 후 만3년 이상자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만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유치원 원장 자격을 가진 자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됨.
- □ 원장 사전 직무교육 교육과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와 같음.
 - 원장 사전 직무교육의 영역(시간)은 총 4개(80시간)로 인성·소양 영역(12시간), 건강·안전 영역(18시간), 전문지식·기술(48시간), 평가시험(2시간)임
 - 원장 사전 직무교육의 영역별 교과목(시간)으로는 인성·소양 영역에서 아동권 리와 복지(4시간), 원장의 직무이해와 직무윤리(4시간), 보육철학과 사회적 책무(4시간), 건강·안전 영역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4시간), 보건위생과 감염 대응(4시간), 건강과 영양관리(4시간),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6시간), 전 문지식·기술 영역에서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4시간), 장애통합보육의 운영 관리(4시간), 보육관련 법규와 보육정책 이해(2시간), 어린이집 조직관리와

리더십(6시간), 어린이집 재무회계 관리(6시간), 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지도(6시간), 보육교사 장학의 이해(6시간), 부모참여와 부모상담(4시간), 어린이집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원 활용(4시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및실제(2시간)로 명시됨.

□ 원장 사전 직무교육 교육과정 내용은 〈표 II-3-13〉과 같음.

〈표 Ⅱ-3-13〉 원장 사전 직무교육 교육과정

영역 (시간)	교과목	시간
	• 아동권리와 복지 – 아동권리 이해와 아동중심보육 – 어린이집 아동인권침해 사례분석	4
인성·소양 (12시간)	• 원장의 직무이해와 직무윤리 - 원장의 직무와 윤리강령 인식 - 윤리적 경영과 업무수행능력 - 원장의 자기관리	4
	• 보육철학과 사회적 책무 - 보육철학과 보육전문가로서의 직업 정체성 - 원장의 전문적 자질과 책무	4
	•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 안전사고 방지 수칙과 응급처치 -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와 평가지표	4
	•보건위생과 감염 대응 - 집단감염 예방과 위생관리 -위기대처와 사후관리	4
건강·안전 (18시간)	• 건강과 영양관리 - 급·간식 운영관리와 준수사항 - 영유아의 영양과 건강관리 - 교직원 영양과 건강관리	4
	•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환경 -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정책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와 아동학대 대처 방안	6
전문지식· 기술	•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 - 다문화아동과 가족의 실태와 보육지원 -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다문화아동 양육지원	4
(48시간)	• 장애통합보육의 운영관리 - 장애위험 영유아의 선별과 중재	4

영역 (시간)	교과목	시간
	- 장애아 통합보육프로그램 운영관리 - 장애아 가족지원과 협력	
	• 보육관련 법규와 보육정책 이해 - 보육관련 법규와 보육지침서의 이해 - 보육정책 동향과 보육행정 전달체계	2
	• 어린이집 조직관리와 리더십 - 보육교직원 인사관리와 전문성 신장 - 어린이집 조직특성 이해와 업무분장 - 보육교직원의 갈등관리와 리더십 발달	6
	• 어린이집 재무회계 관리 - 재무회계의 일반원칙과 관리 - 재무회계 운영과정	6
	• 보육과정 운영계획과 보육프로그램 개발 - 표준보육과정의 이해와 적용 -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4
	• 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지도 -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특성의 이해 - 부적응행동과 긍정적 행동지원 - 발달지연 영유아 가정 및 유관기관 연계	6
	• 보육교사 장학의 이해 - 장학의 필요성과 효과성 이해 - 장학을 통한 일과 활동 지원 - 보육교사 발달에 적합한 원내 장학	6
	• 부모참여와 부모상담 - 부모참여 운영과 실제 - 효율적인 부모상담 기술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이해와 적용	4
	• 어린이집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원 활용 - 지역사회에서의 어린이집 역할과 중요성 인식 - 보육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방안	4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및 실제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실제	2
평가시험	• 원장 사전직무교육 평가시험	2
계	18과목+평가시험	80

자료: 보건복지부(2024b) 2024 보육사업안내, pp.232-233.

- □ 보육 교직원의 직무교육 시수 및 내용
 - 보육 교직원의 직무교육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의미 하며, 3개 유형으로 구분됨.
 - 3개 유형은 일반 직무교육, 특별 직무교육, 장기 미종사 교육임.
 - 일반직무교육은 보육 일반, 원장, 교사로 구분되며, 교육 대상은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원장, 보육교사로 경력 만 2년을 경과한 자이고, 매 3년마다 무적으로 이수하는 교육임. 단 승급 교육 이수 시 일반 직무교육 이수로 간주함.
 - 특별 직무교육은 영아, 장애아, 방과후 보육으로 구분되며, 교육 대상은 현직 원장, 보육교사로 영아, 장애아,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자이고, 교육 주기는 해당 교육 필요시임. 단 특별 직무교육 이수 시 일반 직무교육 이수로 간주함.
 - 장기 미종사 교육은 보육 일반, 원장, 교사로 구분되며, 교육 대상은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이고, 교육 주기는 해당 교육 필요시임. 단 법정 필수교육 시간은 별도임.
 - 교육내용은 인성·소양, 건강·안전, 전문지식·기술 영역으로 구분되며, 이 중 인성·소양 영역은 실시간 화상방식의 비대면 교육이 가능하나 건강·안전 영 역과 전문지식·기술 영역은 대면 교육만 가능함.
 - 보육 교직원의 직무교육은 위탁 교육기관의 교과목 구성, 교육 이수시간, 교육 위상식(집합/실시간)은 동일함.
 - 일반 직무교육은 10~11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이수 시간은 40시간임. 특별 직무교육은 10~20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이수 시간은 40시간임. 장기 미종사자 교육은 10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이수 시간은 40시간임.
 - 보육 교직원의 직무교육은 위탁교육기관에 따라 교육(수업)시간 및 일정은 자율적으로(주중, 야간, 주말, 주 3회, 매일반, 연 3회 등) 운영함.
- □ 보육 교사 대상 일반 직무교육의 교육 내용은 〈표Ⅱ-3-14〉와 같음.

〈표 Ⅱ-3-14〉 보육교사 대상 일반 직무교육 교육내용

영역	일반직무교육(기본 과정)		일반직무교육(심화 과정)	
24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인성・	• 보육과 인권 I - 인권과 아동권리의 이해 - 보육철학과 직업 정체성 - 아동권리중심의 직무이해와 책무	4	• 보육과 인권 II - 인권과 아동존중의 보육철학 - 보육실무와 직업 정체성 - 아동권리중심의 직무이해와 책무	4
소양 (8시간)	• 직무윤리와 역량 - 보육교사 윤리강령과 직무윤리 이해 - 보육교사의 반성적 사고와 역량개발 - 보육교사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 조절능력	4	• 직무윤리와 역량 II - 보육교사의 윤리강령과 직무윤리 - 보육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개발 - 보육교사의 긍정적 정서와 자기효 능감	4
건강・	• 안전과 건강 I - 영유아건강 및 감염병 관리 - 안전사고와 위기대처 - 미디어 과의존 예방	4	• 안전과 건강 II - 건강관리를 위한 보육환경 - 안전사고 대처와 응급처치 - 미디어 과의존과 중독예방	4
으선 안전 (8시간)	• 아동학대 예방 I - 훈육과 학대의 변별 -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과 훈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역할과 책임	4	• 아동학대 예방 II - 훈육과 학대의 변별 -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과 사례탐색 - 피해아동 보호 절차와 법 규정	4
	• 영유아 관찰기록과 평가 I - 관찰기록과 평가방법 - 영유아의 특성 이해와 배움 지원 - 관찰기록을 활용한 부모상담	4	• 영유아 관찰기록과 평가 II - 관찰기록에 기초한 행동특성 분석 - 영유아 행동특성 평기와 배움 지원 - 관찰기록을 활용한 가정연계	4
전문지식·기 술 (24시간)	•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지원 I - 표준보육과정의 이해와 현장 적용 -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 방법 - 놀이실행과 놀이지원	4	•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지원 II -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놀이계획 과 실행 및 평가 -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 역량강화 - 통합적 놀이지원 역량강화	4
	 디지털 교수학습매체의 활용 I 영유아에게 적합한 디지털 교수학습방법 디지털교수학습매체를 활용한 가정양육 지원 	2	• 디지털 교수학습매체의 활용 Ⅱ - 디지털 교수학습매체를 활용한 교 수학습방법 개발 - 블렌디드 러닝 교수학습방법 개발과 활용	2
전문지식·기 술 (24시간)	• 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지도 I - 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의 변별 -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지도 및 부모상담	8	• 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지도 II - 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의 변별 - 부적응행동 지도 및 긍정적 행동 지원	8

영역	일반직무교육(기본 과정)		일반직무교육(심화 과정)		
84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 부적응행동 지도와 부모갈등해결		
	• 다문화아동과 가족 지원 I - 다문화아동과 가족의 실태 이해 -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지원 방법	2	• 다문화아동과 가족 지원 II - 다문화아동과 가족을 위한 지역사 회 연계 - 국제사회의 다문화아동과 가족 지 원 사례	2	
	• 부모의 양육지원 I - 부모참여와 부모상담 - 가정과 연계한 영유아지도 방안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이해와 적용	4	• 부모의 양육지원 II - 부모참여와 상담의 효과성 증대 - 부모와의 갈등 해결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이해와 적용	4	
계	10과목	40	10과목	40	

자료: 보건복지부 (2024b) 2024 보육사업안내, pp.225-226.

□ 원장 대상 일반 직무교육의 교육 내용은 다음 〈표 II-3-15〉과 같음.

〈표 Ⅱ-3-15〉 원장 대상 일반 직무교육 교육 내용

CHCH	일반직무교육(기본 과정)		일반직무교육(심화 과정)		
영역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 보육철학과 직업윤리 I - 보육철학과 보육전문가로서의 직업 정체성 - 아동인권과 직무윤리	4	• 보육철학과 직업윤리 II - 보육철학과 보육전문가로서의 직업 정체성 - 원장의 윤리강령 인식과 책무	4	
인성·소양 (8시간)	•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관리 I - 어린이집 특성에 적합한 리더십과 조직관리 - 원장의 전문성과 유능성 신장 - 보육전문가의 자기관리	4	•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관리 Ⅱ -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이해와 직무윤리 - 원장의 전문성과 교사효능감 지원 - 보육전문가의 자기관리와 사회인정	4	
7171 0171	• 안전과 건강관리 I - 안전사고 대처와 사후관리 - 감염병 및 건강관리 - 미디어 중독예방을 위한 생활 지도	4	• 안전과 건강관리 Ⅱ - 위기 대처와 사후관리 - 건강관리와 유관기관 연계 - 미디어 중독예방을 위한 가정연계	4	
건강·안전 (8시간)	•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I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원장의 책무 - 학대사건의 법적·비사법적 절차와 사후관리 - 학대예방교육 사례분석		•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II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원장의 책무 - 학대사건의 법적·비사법적 절차와 사후관리 사례 - 가정의 긍정적 양육문화 지원	4	

~~	일반직무교육(기본 과정)		일반직무교육(심화 과정)	
영역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 영유아 관찰과 평가 지원 I - 영유아 발달특성 이해와 학습 지원 - 영유아 관찰과 평가에 기초한 교사 지원	4	• 영유아 관찰과 평가 지원 II - 영유아 발달 및 학습진단의 이해 - 영유아 발달 및 학습을 위한 교사 지원 - 관찰과 평기에 기초한 학급운영 지원	4
	•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지원 중재 I - 교사와 영유아 상호작용 방법 지도 - 놀이발달과 놀이지원 중재	4	•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지원 중재 Ⅱ -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지원 전략 - 놀이지원 교사지도 우수 사례	4
전문지식· 기술 (24시간)	• 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지도 I - 긍정적 행동지원의 이해와 교사 지원 - 부적응행동 지도를 위한 교사지원 - 부적응행동 지도를 위한 부모상담	4	• 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지도 II - 긍정적 행동지원의 이해와 교사지원 - 부적응행동 지도를 위한 교사지원 사례 발표 - 발달지연 영유아 부모와의 갈등해결 사례 분석	4
	• 보육교사 장학과 평가 I - 표준보육과정 운영과 장학 -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원내 장학과 평가	4	• 보육교사 장학과 평가 II -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자율장학의 효과 우수 사례	4
전문지식· 기술 (24시간)	다양한 가족의 양육지원 I - 특별한 욕구 가족의 유형과 양육 지원 방안 -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이해와 유 관기관 연계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이해와 활용	2	• 다양한 가족의 양육지원 Ⅱ - 특별한 욕구 기족의 실태와 양육지원 사례 -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이해와 지역 사회 연계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이해와 활용	2
	• 부모-교직원 관계형성과 협력 I - 부모-어린이집 파트너십 형성 - 부모-어린이집 갈등 유형과 해결 방안	4	• 부모-교직원 관계 형성과 협력 II - 파트너십 의사소통과 협력관계 기술 - 갈등 유발요인과 해결방안 지원사례	4
	• 보육정책 동향 이해 I - 최신 보육정책 변화와 동향 분석 - 보육행정 전달체계의 쟁점	2	• 보육정책 동향 이해 Ⅱ - 국내외 보육정책 추이와 동향 분석 - 중앙과 지방 간 보육행정 전달체계 의 쟁점	2
계	11과목	40	11과목	40

자료: 보건복지부(2024b) 2024 보육사업안내, pp.227-228.

□ 특별 직무교육의 교육 내용은 〈표 II-3-16〉과 같음.

〈표 Ⅱ-3-16〉 특별 직무교육 교육 내용

영역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		
인성·소양	• 영아 인권 존중 보육	• 장애아 보육과 인권	• 현대사회 변화와 방과후보		

영역	영아보육	장애이보육	방과후보육
	• 직무윤리와 정신건강	· 장애아 보육교사의 역할과 직무윤리	육의이해 ・방과후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이동권리와 아동학대 예방
건강·안전	• 영아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 영아 건강관리와 감 염병 대처	・장애이동 건강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장애이동 학대 예방 과 권리 존중 보육	• 초등학생의 보건·위생관리 • 초등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전문지식·기술	• 영아 일상생활 지원 • 영아 놀이지원 • 영아 적응과정과 지원 • 영아 상호작용과 지원 • 영아 행동관찰과 평가 • 영아 가족 지원	・장애아동의 이해와 보육지원 I ・장애아동의 이해와 보육지원 II ・개별화교육계획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의 수립과 실행 ・장애아 보육활동 지원 ・장애아 통합보육의 운 영 실제 ・장애아 놀이권과 보육 활동 지원 ・긍정적 행동지원의 적용 ・장애영유아 가족지원의 실천	• 초등학생의 발달적 특성 •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이해 • 초등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 학습지도 • 숙제 및 과제 지도 • 놀이지도 •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II •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II •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III •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III • 창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III • 초등학생 생활지도 • 초등학생 문제행동 지원 • 초등학생 부모와의 상담 및 연계 • 방과후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연계 • 학령기 장애아동의 이해와 교사지원 • 다문화사회와 아동
계	10과목, 40시간 (과목별 시간 상이)	12과목, 40시간 (과목별 시간 상이)	20과목, 40시간 (과목당 2시간)

자료: 보건복지부(2024b)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p.234

□ 장기 미종사자 대상 교육의 교육 내용은 〈표 II-3-17〉와 같음.

〈표 Ⅱ-3-17〉 장기 미종사자 대상 교육내용

영역(시간)	어린이집 원징		보육교사		
8 1 (^ <u>1</u> 1)	교과목	시간	시간 교과목 시		
인성·소양 (8시간)	• 아동권리와 인권 - 아동복지와 인권의 이해 - 아동권리와 학대	4	•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 보육교사의 역할 - 보육교사의 윤리	4	

MM/TIZI)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영역(시간)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건강·안전 (4시간)	• 원장직무의 이해 및 윤리 - 원장직무 이해 - 원장의 윤리 경영	4	• 아동복지와 인권 - 아동복지와 인권의 이해 - 아동권리와 학대	4	
전문지식· 기술	• 영유아 건강·안전교육 - 영유아 건강·안전교육 계획 및 관리 (어린이집 성문제 대응 교육 포함) -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 친환경 급식 및 영양 관리 - 시설·설비 안전관리	4	• 영유아 건강·안전 - 영유아 건강·안전교육 (어린이집 성문제 대응 교육 포함) -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교육 - 보육교사의 건강	4	
	• 보육정책의 최신 동향 - 보육정책에 대한 관점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화, 최근 동향 및 이슈 -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	4	영유아 관찰 및 평가 영유아 관찰의 이해 영유아 평가의 이해 영유아 평가 방법의 종류 관찰법 이해 및 적용 포트폴리오 평가 이해	4	
	• 보육관련 법규의 이해 -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 법, 근로기준법 등	4	• 영유아 행동지도 - 영유아 문제행동의 이해 - 영유아 문제행동 예방과 지도	4	
(28시간)	• 어린이집 인사관리 - 인사관리의 주요 단계 및 내용 - 인력개발을 위한 교직원 재교육, 복지, 평가 등	4	• 영유아 긍정적 상호작용 -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의 이해 - 영유아 놀이 상호작용의 실제	4	
	• 재무회계 관리 - 재무회계의 중요성, 재 무회계 관리 기본 원칙 이해, 재무회계 운영과정 (예산·집행·결산)	4	• 영유아 행동의 발달적 이해 - 영아발달(신체 발달·인지 발달·정서발달) - 유아발달(신체 발달·인지 발달·정서발달)	4	
	조직관리와 리더십 어린이집 조직 특성의 이해 건강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 원장의 리더십	4	• 보육계획 수립 - 보육계획 수립의 원리 - 보육계획 수립의 실제	4	
	• 어린이집 개인정보보호 관리 및 보육통합 정보 시스템 이해	4	• 보육일지 작성의 실제 - 보육일지의 이해 - 보육일지 작성 방법	4	

CHCH(1171)	어린이집 원징		보육교사			
영역(시간)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 개인정보관리 계획수 립 및 관리점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및 실제		- 보육일지 작성 실습			
	•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보육프로그램의 특성 이해 및 운영 지원	4	표준보육과정 표준보육과정의 변천과 기초 표준보육과정의 구성과 관련 자료	4		
계	10과목	40	10과목	40		

자료: 보건복지부(2024b) 2024 보육사업안내, pp.229

□ 보육 교직원 대상 법정 필수 직무 교육 내용은 다음 〈표 II-3-18〉과 같음.

〈표 Ⅱ-3-18〉 보육 교직원 대상 법정 필수교육 현황

No	교육명	대상	이수시간 / 주기	관련 근거	미이수 시 패널티
1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모든 보육 교직원	1시간 이상 /매년	성폭력방지법(제5조)	미실시 기관의 경우 동법에 따른 점검 시 부진기관 선정 * (여가부) 특별교육, 학교평가 반영요구
2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모든 보육 교직원	1시간 이상 /매년	아동복지법(제26조)	미실시 기관의 경우 과태료 부과
3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모든 보육 교직원	1시간 이상 /매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미실시 기관의 경우 과태료 부과
4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모든 보육 교직원	1시간 이상 /매년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별도 조항 없음 - 다만 지도점검 및
5	장애인식 개선 교육	모든 보육 교직원	1시간 이상 /매년	장애인복지법(제25조),	어린이집평가에서 감점 발생 가능
6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모든 보육 교직원 (50인 이상 사업장)	1시간 이상 /매년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 2)	미실시 기관의 경우 과태료 부과
7	개인정보보호 교육	모든 보육 교직원	시간 미확인 /매년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	별도 조항 없음
8	어린이 안전교육	모든 보육 교직원	4시간 /매년 * 이론 2, 실습 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 다만 지도점검 및 어린이집평가에서 감점 발생 가능

No	교육명	대상	이수시간 / 주기	관련 근거	미이수 시 패널티
9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	모든 보육 교직원	4시간 /매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	
10	등하원 안전교육	모든 보육 교직원	시간 미확인 /매년	영유아보육법(제33조의 3), 보육사업안내(p.123)	
11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 교육	모든 보육 교직원	시간 미확인 /매년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의2)	
12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교육	^ 모든 모육 1시간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13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중독) 예방교육	모든 보육 교직원	1시간 지능정보화기본법 /매년 (제54조)		-
14	보육교직원 안전관리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모든 보육 교직원	6시간 /매년 * 안전사고 예방 3, 아동학생 예방 3	보육사업안내 (p115)	-
15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모든 보육 교직원	시간 미확인 /매년	보육사업안내 (p113)	-
16	영유아 성 행동 이해 및 성 행동 문제에 대한 대처	원장, 성교육 담당자	1시간 /매년	보육사업안내 (p.124)	-

자료: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2024). 2024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필수/의무 교육 안내. file:///C:/Users/KIC CE/Downloads/2024%EB%85%84+%EB%B3%B4%EC%9C%A1%EA%B5%90%EC%A7%81%EC%9 B%90+%ED%95%84%EC%88%98%EC%9D%98%EB%AC%B4+%EA%B5%90%EC%9C%A1%EC%9 5%88%EB%82%B4%20(1).pdf. 에서 2024. 11. 3. 인출

2) 연수 기관 및 전달체계6)

- □ 보육 교직원의 상위자격취득교육 연수 기관 및 전달체계
 - 보육 교직원의 상급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승급교육, 사전직무교육)는 매년 시·도지사가 공고를 거쳐 위탁 운영하며, 위탁기관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기관으로 구분함. 집합교육 위탁기관은 대학, 보육교사교육원, 비영리법인 등 83개소이며, 온라인교육 위탁기관은 5개소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위탁교육

⁶⁾ 교육부(2024). 유치원 교원 연수 및 어린이집 보수교육 운영 현황 비교. 내부 자료를 인용함.

기관 평가를 격년으로 실시함.

- 2024년도 시도별 집합교육 지정 위탁기관은 서울 13개소(대학부설 10, 교육원 2, 기타 1), 부산 4개소(대학부설 4), 대구 5개소(대학부설 4, 교육원 1), 인천 4개소(대학부설 3, 교육원 1), 광주 5개소(대학부설 3, 교육원 2), 대전 2개소(대학부설 1, 교육원 1), 울산 2개소(교육원 2), 경기도 18개소(대학부설 12, 교육원 6), 강원도 2개소(대학부설 2), 충청북도 3개소(대학부설 3), 충청남도 3개소(대학부설 2, 교육원 1), 전라북도 3개소(대학부설 3), 전라남도 2개소(대학부설 2), 경상북도 4개소(교육원 4), 경상남도 5개소(대학부설 2, 교육원 3), 제주도 2개소(대학부설 1, 교육원 1)임.
- 2024년 온라인교육 지정 위탁기관은 5개소(주관사: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 원, 삼성복지재단, (사)에듀케어, 안산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임.
- 교육 형태는 집합교육이 원칙이었으나 2024년 집합 대면교육과 실시간 화상 방식의 블렌디드 방식으로 전환함. 인성·소양은 실시간 화상방식의 비대면 교육이 가능하며, 건강·안전, 전문지식·기술은 대면만 가능함.
- 상위자격취득교육 대상자는 현직 교원 신청자들 중에서 신청순 및 경력순으로 지자체에서 선정함.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수요조사(시·군·구), 교육대상자 선정(시·군·구), 교육대상자 승인(시·도), 교육이수자 명단 통보(교육기관)의 절차로 진행되며 보육통합시스템으로 실시됨. 각 교육기관에서 수료명단 관리 및 이수증을 배부하며, 교육이력은 보육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함.
- 비용지원의 경우 승급교육은 전액 지원(1인당 14만원)이며, 교육부 지자체 보조 사업(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예산으로 지원됨.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승급 지원금액 및 지원 유무는 상이함(예: 서울 14만원 중 7만원 지원, 중식비 4천원/일 지원). 교사(또는 기관)가 자비로 선입금하고 교육이수 조건 완료 후 어린이집으로 환급액 입금이 가능함(지자체에 따라 상이).

□ 보육 교직원의 직무교육 연수 기관 및 전달체계

- 보육 교직원의 직무교육은 매년 시·도지사가 공고를 거쳐 위탁 운영하며, 위탁기관은 상급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와 동일하며, 온라인 교육 기관은 특별 직무교육만을 실시함.
- 교육 형태는 상급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와 동일하게 집합교육이 원칙이었으나 2024년 집합 대면교육과 실시간 화상방식의 블렌디드 방식으로 전환함.

- 직무교육 대상자는 현직 원장·보육교사 신청자 중에서 신청순 및 경력순으로 지자체에서 선정함. 각 교육기관에서 수료명단 관리 및 이수증을 배부하며, 교육이력은 보육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함.
- 비용지원의 경우 일반 직무교육은 전액 지원(1인당 8만원)이며, 교육부 지자체 보조 사업(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예산으로 지원됨. 특별 직무교육은 집합교육은 전액지원(1인당 8만원), 온라인 교육은 50% 지원(1인당 약6만원)임. 장기 미종사자 교육은 지원 없이 전액 자부담임. 단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직무교육 수요가 발생하여 교육생이 교육비용의 자비 부담을 용인하는 조건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유보통합 후, 현직 교원 통합에 대한 선행연구

가. 유보통합 현직 교사 자격연수 관련 선행연구

- □ 유보통합 이후, 신규 영유아교사의 양성교육과정에 대해 제안한 선행연구들은 은 많은 편이나, 기존 교원 또는 보육교직원의 영유아교사 자격 부여 방안에 대해 진행된 연구는 소수이나 최근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음.
 - 현직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 과정과 양성교육과정에는 차이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교직과목의 이수여부임. 유치원교사는 교직과목 11과목(22학점)과 교과교육영역의 3과목(8학점, 유아교과교육론, 유아교과 교재교구 및 지도법, 유아 교과 논리 및 논술)을 이수해야 함(교육부, 2024).
 - 김대욱(2023: 22)은 발급 자격증을 기준으로 추가이수과목, 추가이수학점, 자격연수 기관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양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교사들은 추가 이수 없이 영유아교사 자격을 발급하는 대신, 보육교사만 취득한 교사들은 추가로 14과목 30학점을 유치원 정교사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2과목 6학점을 수강하도록 제한함. 다만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에서 교사자격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시적 운영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안함(김대욱, 2023: 23).

〈표 Ⅱ-4-1〉 기존 교사 대상 한시적 자격연수 시행

발급 자격증 구분	추가이수과목	추가이수학점	자격연수기관
보육교사	전공교과과목 3과목 8학점(유아교과교육론, 유아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유아교과 논리 및 논술) 교직 11과목 22학점	14과목 30학점	기존 유아교육관련 교직이수 경험있는 학과
유치원 정교사	영아발달, 영아지도	2과목 6학점	보육교사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보육교사, 유치원 정교사 모두 소지	추가0	수없이 영유아교사 자격	발급

자료: 김대욱(2023). 유보통합을 위한 0~5세 영유아교사 자격과 영유아교육과 중심 양성체제, 그리고 기존 교원의 유 아교사 자격 부여 방안. 열린유아교육연구, 28(3), p.23 재인용

- □ 뉴질랜드는 행정부처 통합이 이루어진 다음해인 1987년 보육 및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을 3년으로 통합(류미향, 박선미, 안혜령, 2023: 287) 교사양성문제 는 1985년 국회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장관급 포럼에서 논의하며 1990년까지 다섯 가지 문제 해결을 기대
 - 첫째, 보육과 유치원 교사교육 연한 통일, 둘째, 교원양성 방법에서부터 교원 자격까지 교원행정통합, 셋째, 연수과정에 대한 핵심교과과정 통합, 넷째, 다양한 교사연수를 위한 재정보조의 형평성, 다섯째, 동일한 자격을 교사를 위한 급여의 형평성 확보(Meade & Podmore, 2010, 류미향 외, 2023: 301에서 재인용)
 - 초등학교교사의 양성기관도 3년제로 유치원과 보육시설 교사 양성교육도 초 등학교 수준과 유사하게 설계됨
 - 교사자격취득과정은 '교육 및 훈련법 2020'의 부칙 3에서 총 2단계로 규정 함. 교사 등록 신청 후 허가받아야 하며, 실제 교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추가 교사자격증을 교육위원회에 신청발급 받아야 함. 자격조건이 충족되면 6년 동안 유효한 임시교사자격증을 발급받게 되며, 임시교사자격증 소지 교사는 유아교육보육서비스 기관에서 1유형 정교사자격증을 소지한 멘토의 지도하에 2년간 일하면서 평가과정을 거친 후 3년 동안 유효한 1유형 정교사자격증을 발급받게 됨. 정교사자격증은 3년마다 평가과정을 거쳐 재발급(류미향외, 2023: 302)

- □ 싱가포르의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에 근무하기 위한 교사의 자격증은 학위를 통한 취득인지 또는 이수를 통한 취득인지, 교사의 주 교육 언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에 따라 담당할 수 있는 유아의 연령, 근무 가능 기관 제안(김길숙, 2024)
 - 구체적으로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담당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사와 6세까지의 유아를 담당할 수 있는 유아교사로 크게 나누고 유아교사의 경우 학위과정으로 자격증 취득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모든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6세까지의 영유아를 담당할 수 있는데 반해서 학위과정이외에서 자격증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3세 미만의 영아를 담당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서 근무가 가능하도록 자격증 유형을 설계 제안(김길숙, 2024)
- □ 그 외에도 현행 우리나라 유치원 정교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수학점 이외에도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은 2회 이상), 교 직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이상 통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2회 이상을 받아야 함(김길숙, 2024).
 - 반면,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이 없으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은 보육교사가 된 후에 보육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가 됨. 따라서 이수학점 이외에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이러한 요건들을 통합 교사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 강화할 것인지, 교사가 된 이후의 교사 역량 차원에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김길숙, 2024).
 - □ 이상의 내용은 유치원자격은 없고 보육교사자격만을 갖춘 경우, 14과목 30학점(전공교과과목 3과목 8학점+교직 11과목 22학점)과 함께 교원자격취득을 위해 필요한 성인지교육,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2회 통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의 교육 등도 함께 영유아교사 자격취득 기준에 포함되어야하며, 유치원교사 자격만 지녔을 경우는 2과목 6학점(영아발달, 영아지도)을 추가 이수해야 함을 의미함.
- □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과정에 대해, 고영미, 이미정, 신혜원, 임수진, 김 유미, 하지영(2024a)은 통합교사 자격 개편 안으로서 두 가지 안을 제안
 - 1안) 보육교사 자격 소지한 교사는 교직과목(22학점) 이수 + 전공 교과교육 영역(8학점) 총 30학점을, 유치원 정교사 자격 소지자는 영아관련 과 목7)(9학점) 이수 및 실습(3학점) 총 12학점

- 2만) 보육교사 자격 소지한 교사는 교직과목(22학점) 이수 총 22학점, 유치원 정교사 자격 소지자는 영아관련 과목(9학점) 이수 및 실습(3학점) 총 12학점
- 아울러, 현직교사 대상 비학위과정 운영 기관선정의 기준, 일과 학습 병행을 위한 대체교사 지원, 영아반 담임교사 직무 교육을 위한 연수 확충, 유치원교 사와 보육교사 복수자격 소지자에 대한 자격연수 과정 필요와 함께 교사의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제안함.
- □ 고영미 외(2024b: 35)는 3차에 걸친 공청회의 의견을 취합하여, 현직교사의 자격취득 관련 법령으로서 교원의 수요, 공급상 단기간에 교원양성이 필요한 경우 임시교원 양성기관과 연수기관을 설치 운영 가능함을 제안함(고등교육법 제46조)와 (고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55조)
 - 고등교육법 제46조(임시교원 양성기관 8)등) 제2항은 교육부장관이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이 고등교육법 제4조 1항의 설립기준을 충족(해당 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하고 자격종, 과목, 지역의 교육수요를 고려해 단기간에 교원 양성 필요로 인해 임시교원 양성기관을 설치하기 적합학 경우 임시교원 연수기관을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하도록 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1. 정규 교원양성기관에서 양성이 어려운 과목의 교원 양성 시, 2. 한시적으로 양성이 필요한 과목의 교원 양성 시, 3. 교원수급상 공급인원의 일시적 부족으로 단기 양성 공급 필요시, 4. 현직 초·중등교원의 복수자격 취득기회 필요시로 설치인가 허용을 규정함.
 - 현직교사가 특별교원양성과정 및 신·편입학과정을 통해 신규 자격을 취득한 사례로서, 중등교사의 초등교사 자격취득(특별학사 편입),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전문상담교사 1급: 석사학위 연계과정, 비학위과정 운영), 영양사의 영 양교사 자격취득(석사과정, 비학위과정-1, 2년과정), 중등 특별교원양성과정 으로서 살치 교사 대상 6개월(50학점) 학습 운영을 통해 정보윤리교사 자격

⁷⁾ 영아관련 이수과목에 대해 FGI 의견을 기초로, 영아발달, 영유아 사회정서발달, 영아교수방법, 영아놀이지도, 영아에게 적합한 환경구성, 영아 상호작용방법, 영아 프로그램, 건강 및 안전관련 과목, 가족관계 및 복지관련 과목, 통합기관에 대한 이해, 통합교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목 등을 제안함(고영미 외, 2024a: 31).

⁸⁾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고등교육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66호, 2024. 10. 22., 일부개정]

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4. 8. 21.] [대통령령 제34227호, 2024. 2. 20., 일부개정]

취득 사례를 제안함(고영미 외, 2024b: 36).

- 이상의 논거와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① 대면교육 원칙 학위과정(신편입)과 비학위과정(특별교원양성과정) 운영을 제안함. ② 통합교사 자격취득과정은 희망교사 원칙, ③ 현직 근무경력 3년 이상이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대상, ④ 복수자격 소지 교사는 별도 자격취득과정 없이 신청을 통해 자격 부여, 단수자격 소지의 경우 보육교사 자격만 있는 경우 교직 일부와 전공 이수, 유치원 교사 자격만 있는 경우 영아 관련 전공만 이수, 학위과정(신편입학)과 비학위과정(특별교원양성과정) 이수 교과목은 동일하게 구성함을 제안(고영미 외, 2024b: 38)

나, 원감 및 원장 관련 선행연구

1) 원감

- □ 원감의 역할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무를 관리하고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하는 자(유아교육법 제21조 제1항)임
 - 원감의 주요 역할로는 원장 보좌(대행) 역할, 지도자 역할, 관리자 역할, 조직 관리, 대외적 업무, 보육 및 교육 업무, 기타 업무로 구분됨.
 - 유아교육기관의 중간관리자는 원장과 교사 사이에 위치하며 조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며 기관의 운영 전반의 역할을 뒷받침함.
- □ 반면, 어린이집 중간관리자의 직무는 영유아보육법 상 법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화되지 않았음. 하지만, 대규모 어린이집이 증가하며 효율적인 기관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중간관리자 역할이 필요함(강신영, 문혁 준, 2018)
 - 어린이집 중간관리자는 원장과 교사의 중간적 위치에서 관리자, 지도자, 인화자, 대외관리자 역할과 더불어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과정 운영자로서 다양한 역할 수행하고 있음(강미영, 조혜진, 2017).
 - 어린이집 중간관리자로서 요구되는 직무로는 원장을 보좌 및 부재 시 역할 대행이 제시됨. 또한 기관 자체적으로 원감 또는 주임교사를 두어 교사들과 동료관계이면서 교사를 관리하고, 원장과 교사 사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루게 하는 역할 수행함(김영주, 김대욱, 2015).

- 김명순, 이소희(2016)는 어린이집의 중간관리자가 보육교직원과의 지혜로운 협력, 소통을 통해 바람직한 조직문화 형성 및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을 하며, 원장의 책임경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함.
- □ 종합해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중간관리자(원감) 모두 '유치원·어린이집 운 영'과 '교육과정 운영' 직무역량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송경희, 김태연(2023)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도 원감 제도는 물론 주임교사 나 선임교사와 같은 보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함.
 - 수석교사, 원감 등 상급 직위의 부재는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진로나 처우, 역 량 강화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의 교육과 경력 취득을 통해 더 나은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간관리자 직급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중간관리자의 직무로 원장과 교사 사이에서 적절한 중재자 역할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었으며, 교사 교육 및 장학 등의 교육업 무, 학부모 및 교사 조직관리 등의 인화적 역할이 공통적으로 강조됨.

2) 원장

- □ 원장의 역할은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 사자를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고 제시됨(영유아보육법 제 18조). 유치원 원장은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제2항에 '유치원 업무를 총 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로 명시됨.
- □ 원장의 직무로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시설 관리 및 영유아관리업무, 경영업무, 조직운영관리업무, 교육기획 및 실행 업무, 평가업무, 지역사회협력 업무, 교육업무, 부모관리업무 등이 제시됨.
 - 한국보육진흥원(2023)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소규모 조직의 장으로 조직 운용에 따르는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보육 철학 제시, 예산 계획 및 집행, 보육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 영유아 보호와 교육, 종사자 임용, 보육 교직원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 부모교육, 가정과 지역 사회 간의 연계 및 교류 등의 역할로 제시함.

- 행정관리자로서의 원장의 역할은 어린이집 운영 일반 원칙, 시·도의 어린이 집 관련 규정,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보육정책과 보육사업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재무회계를 실시하고 관리하여 운영해야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 □ 이상을 종합할 때, 원감과 원장의 직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부록 1, 2 참조)

〈표 Ⅱ-2-2〉 원감과 원장의 직무

	1	2	3	4	5	6	7	
원감	원장보좌· 대행 역할	지도적 역할	관리자 역할 (원무 관리)	조직관리 (인화/ 관계적)	대외적 업무 (부모, 지역사회 관계 포함)	보육·교육 업무 (교육과정 운영 포함)	기타	
	1	2 3		4	5	6	7	8
원장	시설관리ㆍ 영유아 관리	경영 (행정·재무 인사·운영)	조직운영 관리 (조직관리, 전문성 신장 등)	교육기획 및 실행, 평가	지역사회 협력(연계)	교육 (부모· 교직원 등)	부모 관리	기타

주: 부록 1과 2를 기초로 연구진이 구성한 표임.

3) 원장(감) 통합자격과정 구성 연구10)

- □ 영유아 통합기관 원장(감) 자격과정 구성을 위해, 영유아통합기관 원장(감)의 직무를 고려, 현직 원장(감)의 다양한 자격 및 경력을 고려해 별도 유예기한을 두어 방안을 제안함(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2024: 109).
 - 원장은 기본역량(성찰, 원장 리더십), 전문역량(교육기획, 조직·인사관리, 기관 경영)을 기준으로, 원감은 기본역량(성찰, 원감 리더십), 전문역량(원무 운영, 교육지원, 업무조정 및 갈등관리)를 기준으로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목 제안(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2024: 114).
 - 지속적 원장(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과 연계한 원장(감) 자격과정 구성 필요(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2024: 114)

¹⁰⁾ 본 절은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2024). 영유아통합기관 원장(감) 자격과정 구성 방안의 연구 결과 를 인용·발췌함.

□ 해당 연구(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2024: 120)에서는 영유아통합기관 원장의 자격 취득 기준을 '영유아통합기관 원장 직무 예정인 자, 영유아 교육·보육 경력이 최소 9년 이상인 자'로 정하되, 현장의 교육·보육 경력 기간 중행정처분 및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기준에 따라 원장 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함.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영유아통합기관 원장 자격 취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표 Ⅱ-2-3〉 영유아통합기관 원장 자격 취득 기준

구분	영유아통합기관 원장 자격 취득 기준
현직 유치원 원장 (유예기한 제공)	· 유치원 원장 자격과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모두 소지한 현직 유치원 원장
현직 어린이집 원장 (유예기한 제공)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과 유치원 원장 자격을 모두 소지한 현직 어린이집 원장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과 유치원 교사 자격을 모두 소지하고, 소정의 원장 자격과 정을 이수한 현직 어린이집 원장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소지하고 대학(원) 교직·전공 비학위과정(2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소정의 원장 자격과정을 이수한 현직 어린이집 원장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소지하고 대학원 전공심화 학위과정(34학점 이상)을 이수한 현직 어린이집 원장
신규 원장	· 영유아통합기관 원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영유아 교육·보육 경력을 가진 원감

자료: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2024). 영유아통합기관 원장(감) 자격과정 구성 방안 p.120의 〈표 -48〉 영유아통합기관 원장 자격 취득 기준을 인용함.

-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자격연수 면제 대상으로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이수(25일, 200시간)를 인정하되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3항을 준용해, 통합기관 적응 지원의 직무교육(30시간 내외) 실시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에 근거해 유치원 원장 자격만 소지한 경우,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신청해 자격 취득이 가능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근거해 원장 사전직무교육 이수(10일, 80시간을 인정하되, 원장 자격연수 기준을 충족하고자 하는 원장 자격과정 (15일, 120시간) 실시할 것을 제안함(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2024: 123).
- 영유아통합기관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전공 비학위과정 운영으로 교직 이론 12학점 이상(6교과목 이상), 교직 소양(4학점 이상, 2교과목 이상), 교육실습(현직근무로 대체) 총 16학점과 영유아 교육·보육 전공과목 6학점 이

상(원장의 기본역량강화, 전문역량강화 교과목) 총 22학점 이수 후 원장 자격 과정(120시간)을 이수해 원장 자격을 취득할 것을 제안함(한국교원대학교 유 아교육연구소, 2024: 124-125).

- 대학원 개설 전공심화 학위과정의 경우, 교육실습(3학점)과 원장의 전문역량 강화교과목 2학점을 추가해, 총 34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함(한국교원대학 교 유아교육연구소, 2024: 126).

〈표 Ⅱ-2-4〉 영유아통합기관 원장 자격 취득 기준

구분	소지 자	격	기타소지자격		취득조건		원장자격과정 이수	자격취득	직무교육
현직	유치원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	>	>>>	•	>>>	영유아통합	①원장직
유치원 원장	유치원 원장자격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	기관 원장 지격 취득	무교육(30
			유치원 원장	>	>>>	>	>>>		①원장직 무교육(30 시간)
			유치원 교사 자격 ()	>	>>>		원장자격	영유아	
현직 어린이집 원장	일반어린 이집원장 자격()	>	유치원 교사	>	대학(원) 개설 교직 전공 비학위과정 (22학점)		과정 (120시간) ►	통합기관 원장자격 취득	
			자격 ×	>	대학원 개설 전공심화 학위과정 (34학점)	>	>>>		
영유아 통합기관 원감	영유아 통합기관 원감()	>	>>>		영유아통합기 관원감경력 3년 이상	>	원장자격 과정 (200시간)	영유아 통합기관 원장자격 취득	

자료: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2024). 영유아통합기관 원장(감) 자격과정 구성 방안 pp.122-123의 〈표-49〉~〈표51〉의 표를 병합하여 제시함.

□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2024: 142)에서는 영유아통합기관 원감 자격 취득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영유아통합기관 원감 직무 예정인 자, 영유아 교육·보육 경력이 최소 6년 이상인 자'로 정하였음.

〈표 Ⅱ-2-5〉 영유아통합기관 원감 자격 취득 기준

구분	영유아통합기관 원감 자격 취득 기준
현직 유치원 원감	ㆍ 유치원 원감 자격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을 모두 소지한 현직 유치원 원감
현직 유치원 교사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을 모두 소지하고, 1급 자격 취득후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며, 소정의 원감 자격과정을 이수한 현직 유치원 교사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을 모두 소지하고, 2급 자격 취득후 교육경력이 6년 이상이며, 소정의 원감 자격과정을 이수한 현직 유치원 교사 유치원 교사 자격만 소지하고 경력 충족하는 경우, 어린이집 교사 자격을 신청하여 자격 취득이 기능함
현직 보육 교사	・ 일반 보육교사 1급 자격과 유치원 교사 자격을 모두 소지하고 1급 자격 취득 후 보육경력이 3년 이상이며 소정의 원감 자격과정을 이수한 현직 보육교사 ・ 일반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하고 1급 자격 취득 후 보육경험 3년 이상이며, 대학 (원) 교직·전공 비학위과정(22학점)을 이수한 후 소정의 원감 자격과정을 이수한 현 직 보육교사
신규 원감	· 영유아통합기관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영유아 교육·보육 경력을 가진 교사

자료: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2024). 영유아통합기관 원장(감) 자격과정 구성 방안 p.142의 〈표 -68〉 영유아통합기관 원감 자격 취득 기준을 인용함.

-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자격연수 면제 대상으로 유치원 원감 자격연수 이수(15일, 100시간)를 인정하되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3항을 준용해, 통합기관 적응 지원의 직무교육(30시간 내외) 실시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에 근거해 유치원 원감 자격만 소지한 경우, 일반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을 신청해 자격 취득 가능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2024: 144).
- 영유아통합기관 원감 자격 취득을 위한 학위과정은 교직이론(12학점 이상, 6 교과목), 교직 소양(4학점 이상), 교육실습(현직 근무로 대체) 총 16학점과 영 유아 교육·보육 전공과목 6학점 이상, 22학점을 제안함(한국교원대학교 유아 교육연구소, 2024: 147).

〈표 Ⅱ-2-6〉 영유아통합기관 원감 자격 취득 기준

구분	소지 자격 기타소지자격		격	취득조건			원감자 격과정 이수	자격 취득	직무 교육		
현직 유치원 원감	유치원원 감 자격 ()	>	보육교사 자격 ()	>	>>>	>	>>>		_	영유아 통합기관	①원감 직무교
			보육교사 자격 ×	>	보육교사 자격 취득		>>>			원감자격 취득	육(30시 간)
현직 유치원 교사	유치원정 교사1급 자격 ()		보육교사 자격 ()	>	1급 자격 취득 후 교육경력 3년 이상	>	>>>	>	②원감 자격과정 (100 시간)	영유아 통합기관 원감자격 취득	-
			보육교사 자격 ×	>		>	보육교사 자격 취득	>			
	유치원정 교사1급 자격 ×	글	보육교사 자격 ()	>	2급 자격 취득 후 교육경력 6년 이상	•	>>>	>			
			보육교사 자격 ×	>		>	보육교사 자격 취득	>			
현직 보육교 사	일반어린 이교사1 급 자격 ○	비교사1 급 자격 ▶	유치원 교사 자격 ○	>	1급 자격 취득 후 보육 경력 3년 이상	>	>>>		원감자격 과정 (100 시간)	영유아 통합기관 원감자격 취득	
			유치원 교사 자격 ×	 			③대학(원) 개설 교직· 전공 비학 위과정(22 학점)	>			
영유아 통합기 관교사	영유이통 합기관 정교사1 급()	>	>>>	>	1급 자격 취득 후 영유이통합기 관 교사 경력 3년 이상	>		>	원감자격 과정 (100 시간)	영유아 통합기관 원감자격 취득	

자료: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2024). 영유아통합기관 원장(감) 자격과정 구성 방안 pp.144-146의 〈표-69〉~〈표72〉의 표를 병합하여 제시함.



영유아교원 통합자격 부여에 대한 전문가 조사

- 01 통합자격 취득 계획에 대한 의견
- 02 신규 영유아교사 자격
- 03 (가칭)영유아학교 원감 신규 자격 기준
- 04 (가칭)영유아학교 원장 신규 자격
- 05 통합자격 취득에 대한 기타 의견

Ⅲ. 영유아교원 통합자격 및 승급에 대한 전문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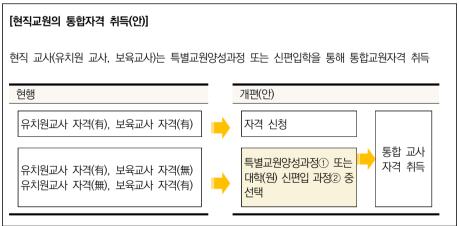
□ 본 장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자격체계 관련 규정과 영유아학교 교원로서의 신규 자격 부여 시 고려해야 할 쟁점에 따른 시나리오를 제시(부록 3 참조)하 고,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해, 정책 제언의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자 함.

1. 통합자격 취득 계획에 대한 의견

가. 쟁점 및 현재 규정

□ 가장 먼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제시한 현직 교원 통합자격 취득(안)에 대한 전무가들의 의견을 질의함.

[그림 Ⅲ-1-1] 현직교원의 통합자격 취득(안)



자료: 교육부(2024. 6. 27.).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p.17 내용을 포괄 인용하여 제시함.

나. 동의 대 비(非)동의 여부 및 근거

- 1) 현직교원 통합자격 취득(안) 동의여부
- □ 유보통합 실행계횡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음.

〈표 Ⅲ-1-1〉 현직교원 통합자격 취득(안) 동의 여부 및 이유

분야	전적으로 동의함	부분적으로 동의함	부분적으로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총계
유아교육	3명(14.3%)	4명(19.0%)	9명(42.9%)	5명(23.8%)	21명(100%)
보육	1명(5.9%)	2명(11.8%)	11명(64.7%)	3명(17.6%)	17명(100%)
총계	4명(10.5%)	6명(15.8%)	20명(52.6%)	8명(21.1%)	38명(100%)

동의 이유 비(非)동의 이유

-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사의 현재 소지 자격을 무효화할 수 없기 때문에 2종 자격을 모두 갖춘 이들에게 자격전환 찬성함
- 찬성하는 입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합교사 자격취득이 필요함. 두 개의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교사는 통합 교사 자격 취득을 바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1가지만 가지고 있는 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등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함.
- 비학위과정의 특별교원양성과정은 현직교 사를 위해 매우 필요함. 통합은 찬성하나 비학위과정과 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개편 계획에 동의하나, 특별교원양성과정 에서 보육교사가 유치원 교사 자격을 취득 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직과목 등을 비롯한 추가 학점을 체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과정 마련 필요함.
- ◆ 교원의 질적 수준 상향 조정을 위해 학사 학위, 대면중심 학과제에서 신규교사를 양 성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함. 그러나, 현직 교원의 통합교사 자격 취득 과정에 특별교

- ◆ 교원 양성방식에 있어서 '대면중심 학과전공제' 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현재 온오프라인 방식 을 혼합한 교육과정 운영이 영유아교사를 양성하 는 유아교육과 및 아동학과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바, 대면 중심의 개념 및 기준이 본 논의를 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 승급기관으로 검토되고 있는 '비대면, 학점제기 관'의 점주 설정의 명확성이 부족함. 학점제기관 및 사이버대학은 단기간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원하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기관임.
- 0-2세와 3-5세는 발달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로서 전문성도 상이하다고 생각함. 이에 영아정교사와 유아정교사로 이 원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특별교원양성과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생김. 획일적인 교육과정은 개별교사의 경력과 전문성 을 고려하지 않기에 효과성 떨어질 우려가 있음. 또한 기존 이수과목 인정 기준이 대학별로 상이 할 경우, 교사 간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 마지막 으로 교사의 시간적 제약이 있음.
- 대학(원) 신편입 과정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현직 교원 통합자격 취득의 경우. 일반 교원자격

동의 이유	비(非)동의 이유			
원양성과정을 허용하는 것은 통합 교사 자 격의 남발 초래 가능하기에 고려해야함.	취득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특별교원양성과정의 경우, 통합자격증 취득에만 초점이 맞춰지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교원으로서의 지위확보 및 실질적인 교원의전문적 직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판단됨. • 유치원 원장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어린이집 원장 자격도 인정된다는 규정에 동의하지 않음. 통합교사 자격 취득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0~5세 영유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보육 경험을 갖춘 어린이집 원장들에게는 자격 연수 과정을 요구하면서, 3~5세 유아만을 주로 담당해온 유치원 원장들에게는 추가연수 과정 없이 자동으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됨.			

- □ (부분)동의하는 전문가들은 복수자격(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을 갖춘 자에게 통합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만, 양 자격 중 한가지만 지닌 경우는 특별교원양성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단,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구분해 운영할 것을 제시함.
- □ 비동의하는 전문가들은 현재 실행계획에 제시한 대면중심의 기준과 개념이 불명확하며, 승급기관으로 제시된 사이버대학 등은 교원승급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함. 아울러 특별교원양성과정이 교사자격을 남발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측면에 문제제기 함.
 - 2) 현직교원 통합자격 취득이 필요한 이유
- □ 전문가들은 현직교원의 통합자격은 전문성 제고와 처우개선 상향을 위해 필요 하다는 데 의견을 공유함.

〈표 Ⅲ-1-2〉 현직교원 통합자격 취득 필요 이유

의견

- 교육관리 및 이력관리 일원화를 위해 통합자격 취득이 요구됨
- ◆ 동일한 자격을 갖추어야 동일직종과 동일노동의 원칙으로 처우를 균등하게 할 수 있음
- 영아 및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 제고, 교원 자격 조건 일원화를 위해
- 유보통합의 궁극적 목적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이므로 필요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교사양성체제인 만큼 교원의 전문역량 제고가 우선시 되어야 함.
- ◆ 진정한 유보통합은 교사 자격증 통합이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의 질임
- ◆ 추후 현직 교사들의 승급 연수 등에 대한 교육관리와 이력관리에 도움이 될 것임
- 영유아 교사가 현재 다른 학교급에 비해 낮은 처우와 인식을 갖고 있기에 통합자격 취득을 통한 교 사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 ◆ 보육교사는 교직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유치원교사는 0-2세 영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새로운 교육모델에서의 0-5세 통합교사는 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어야 함

3) 공립교원 논의 제외 동의 여부

□ 전문가들에게 본 설문조사에서 논의하는 내용들은 사립유치원, 국공립 등 어린 이집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공립교원들은 별도의 국가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 및 교육정 선발인원에 따라 배치되는 체계이므로 전환 논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구함. 동의와 비동의의 비율이 유사함.

〈표 Ⅲ-1-3〉 공립교원 논의 제외 동의 여부

분야	전적으로 동의함	부분적으로 동의함	부분적으로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총계
유아교육	3명(14.3%)	6명(28.6%)	5명(23.8%)	7명(33.3%)	21명(100 %)
보육	5명(29.4%)	4명(23.5%)	5명(29.4%)	3명(17.6%)	17명(100 %)
총계	8명(21.1%)	10명(26.3%)	10명(26.3%)	10명(26.3%)	38명(100%)

4) 가정어린이집 원장 자격논의

- □ 본 설문조사에서 논의하는 내용이 보육교사 1급 자격취득 후 1년 경력을 통해 취득 가능한 가정어린이집 원장 소지자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어야 한다는데 동의 여부를 질문함.(단, 현재 40인 이상의 일반어린이집 원장 자격 또는 유치원 원감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근무처가 가정어린이집의 원장인 경우 제외)
- □ 전문가들은 현직교원의 통합자격은 가정어린이집 원장 자격은 논외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비동의하는 경향이 많았음.

〈표 Ⅲ-1-4〉 가정어린이집 원장 자격논의

분야	전적으로 동의함	부분적으로 동의함	부분적으로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총계
유아교육	5명(23.8)	7명(33.3)	2명(9.5)	7명(33.3)	21명
보육	3명(17.6)	1명(5.9)	8명(47.1)	5명(29.4)	17명
총계	8명(21.1)	8명(21.1)	10명(26.3)	12명(31.6)	38명(100%)

2. (가칭)영유아학교 교사 자격 기준

가. 쟁점 및 현재 규정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규정에 대해 제시한 후, 교직 이수, 준교사 및 보육교사 3급 폐지에 대한 의견, 동일경력과 동일자격 취득, 통합 시 학력고려 에 대한 의견을 살펴봄.

〈표 Ⅲ-2-1〉 유치원·보육교사 자격 규정

	유치원 교사 자격		보육교사 자격		
유치원 준교사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보육 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 을 수료한 사람		
2급 정교사	①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전공 50학점, 교직 22학점) 또는 ② 전문대 이상 졸업 + 재학중 보육및 교직학점 취득 또는 ③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석사(유치원 교육과정 전공) 또는 ④ 유치원 준교사 + 2년 교육경력 + 자격연수 이수자	보육 교사 2급	①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②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사람 -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7과목 51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유치원 교사 자격		보육교사 자격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 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 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급 정교사	① 2급자격 + 3년 교육경력 + 자격 연수(90시간 이상) ② 2급자격 + 대학원 교육과 석사 (유치원 교육과정 전공) + 1년 교 육경력	보육 교사 1급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②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 입학 전에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도 인정. 단, 대학원 재학기준중 보육업무 경력 인정 불가

나. 동의 대 비(非)동의 여부 및 근거

1) 교직 이수

□ 가장 먼저, 교사 자격 통합 시에도 교직을 이수해, 교원으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질문함.

〈표 Ⅲ-2-2〉교사 자격 통합 시 교직 이수 동의 여부 및 이유

분야	전적 <u>으로</u> 동의함	부분적으로 동의함	부분적으로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총계
유아교육	19명 (90.5%)	2명(9.5%)	0명(0%)	0명(0%)	21명(100%)
보육	8(47.1%)	7명(41.2%)	2명(11.8%)	0명(0%)	17명(100%)
총계	27명 (71.1%)	9명(23.7%)	2명(5.3%)	0명(0%)	38명 (100%)
동의 이유				네(非)동의 이유	
• 인간의 전생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유아기 담당하는 교사기에 소양, 교직관 및 교수법, 이론 등 형성 측면에서 필요(교사 전문성)		성 증진에 기	- 교과목은 유치 여하지 못하고 있 육계가 동의하는	니다는 점은 모든	

도 다변화 하는 만큼 자격 통합 후에 새로운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공통 교과를 이수하도

되나. 많은 교육 시간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 교사의 질적 수준 유지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

록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임

부적합하다고 생각됨.

동의 이유 비(非)동의 이유 서 기초소양이 필요하다면 추가 할 수 있으나 교직과목 추가로 현 대학교육의 방향성에 해 ◆ 공교육체제에서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당하는 다전공 등의 융통성있는 학사운영이 반드시 교직과목 수강 필요 어려운 바. 전공교과목의 지나친 상향조정 부 초. 중등 교원에 준하는 방식으로 양성 필요 적절하다고 봄 (교사 자격 기준의 일관성 유지) • 이미 교육과정, 교육평가 등은 현재 이수하고 ◆ 유보통합에서 교사자격 통합 시 교직 이수의 있는 보육교사 양성 교과에서도 기본적인 내 중요성은 교육의 본질과 아동학대 예방 측면 용을 포함하고 있음. 실제 현장 경험이 중요하 에서 중요하므로 기 때문에 현장 경력이 많은 교사들에게 이론 ◆ 현재 교육부 통합으로의 교사양성체계에서 교 적인 과목 추가 이수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직을 주요한 요건으로 보고 있기에 보육교사 고 생각함 도 교직 과정 이수 필요 • 교직과정을 이수한 유치원 교사 자격 소지자 ◆ 영유아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들의 경우도 교육 패러다임이 과거와 매우 다 사회적으로도 교사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교육자의 역할

- □ 전문가들은 교사자격 통합 시 교직이수는 교원양성체계에서 필수임에 대해서는 동의함. 다만 교직 이수과목의 적합성과 긴 교육시간에는 우려를 표하며, 공통 교과목을 구성할 것을 제안함.
 - 2) 준교사와 3급 자격 폐지

운영 시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교원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교

직이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나, 영유아기

발달 특성을 골고루 고려한 내용이 교직 교과

□ 다음으로 유치원 준교사와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전문 가의 의견을 구함.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폐지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2-3〉 준교사와 3급 폐지 동의 여부 및 이유

분야	전적으로 동의함	부분적으로 동의함	부분적으로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총계
유아교육	19명(90.5%))	1명(4.8%)	1명(4.8%)	0명(0%)	21명(100%)
보육	12명(70.6%)	5명(29.4%)	0명(0%)	0명(0%)	17명(100%)
 총계	31명(81.6%)	6명(15.8%)	1명(2.6%)	0명(0%)	38명(100%)

 유치원 준교사는 현재 8명으로 사실상 40여년 전에 시행된 승급과정을 통해 거의 모든 준교사가가 구제받아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은 오랜 논의를 거쳐 보육교사교육원 신규 과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3급 자격이 사실상 폐지됨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은 교육훈련이나 사이버형 태로 취득되는 구조기에 교육의 질 관리 차원에서 자격 부여 적절하지 않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준교사 폐지가 적절함. 단, 이 같은 자격이 필요하다면 담임교사 자격이 아닌, 담임을 보조하는 보조 인력 등 별도 자격체계 갖추는 것 필요함 단기 교육과정단으로는 영유아 발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적절한 지도 능력을 갖추기 어렵고, 이는 교사의 낮은 자존감과 과도한 직무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자격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저격함함 준교사와 3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주는 것이 합당하나, 2급 정교사 및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교원들과는 차별화된 수준의 재교육이 필요함 그동안 아동학대 등으로 문제가 된 교사들은 대부분 단기 보육교사양성과정으로 배출된 경우임. 통합교사의 전문성 및 질 관리 위해 반드시폐지 필요함 이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영유아 교육의 질적 항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준교사와 보육교사 3급 자격 기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치원 준교사와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의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다양한 인력으로서 준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었음.

3) 동일 경력 동일 자격 취득

□ 유치원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소요한 시간(3년 이상+자 격연수 시간) 만큼의 경력을 감안 해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함. 유치원 교사 경력이 3년 이상이라면 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격연수(90시간 이상)를 이수하고 1급 정교사로 승급해야 하며, 유치원 교사 경력이 6년

이상이라면 자격연수(90시간 이상)를 이수하고 유치원 원감 자격을 취득해야하나 실질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자격연수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임. 이와 반대로 보육교사는 신청을 통한 자격검정으로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경력이면 동일 자격 취득이 가능한 상황임.

□ 전문가의 대부분은 동일 경력에 대해 동일 자격을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경향을 보임.

〈표 Ⅲ-2-4〉 동일 경력 동일 자격 취득 동의 여부 및 이유

분야	전적으로 동의함	부분적으로 동의함	부분적으로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총계
유아교육	8명(38.1)	4명(19.0)	1명(4.8%)	8명(38.1%)	21명
보육	9명(52.9%)	8명(47.1%)	0명(0%)	0명(0%)	17명
총계	17명(44.7%)	12명(31.6%)	1명(2.6%)	8명(21.1%))	38명(100%)

동의 이유 비(非)동의 이유

- 교사 자격 통합됨에 따른 교사 승급에 동의함. 다만, 교사 6년 경력으로 관리자인 원감자격을 한 번에 취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1단계씩 차례 승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직 연한을 기준으로 경력 반영이 필요
- 현행 교원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 법에 근거하여 경력과 자격연수과정을 필해 야함. 연구 및 교육경력 산출기준을 근무기 관 특성 고려하여 환산인정범위 책정 및 적 용 필요
- 유치원 교사의 경우 승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 육교사의 자격과 소요기간을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음
- 영아만 지도해 본 경험, 유아만 지도해 본 경험 모두 동일하게 일부 경험이 누락된 것으로 동일하게 생각하고 각자에게 필요한 경력 또는 연수 등이 추가적으로 제공 필요
- 유보통합이 되어 자격이 통합된다하더라도, 교사들이 교육계에서 근무한 전문성은 인정 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경력을 자격산정에 반 영해야함
- 보육교사의 경우,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 소지한 자는 유치원교사와 동일하게 경력 인 정하여 동일 자격 취득 가능하도록 하되, 보

- 법에 규정된 경력을 지닌 모든 교사가 승급 자 격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자격증을 과도하게 공급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 수요, 공 급 조사가 선행될 필요 있음
- 교사자격통합은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유치원 교사 또는 1급 보육교사 중 현재 기관에 근무 하는 교사 대상으로, 희망하는 자가 특별교원 양성과정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 과정을 이수 한 경우 동일 자격으로 부여해야 함.
- 일정 경력만으로 자격 부여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방해함
- 2급 정교사와 2급 보육교사는 상이한 자격조 건임. 교직을 이수한 교사의 근무 경력과 보육 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차별화되어야함. 유치원 교사 경력은 호봉으로 산정하고, 보육교사 경력은 호봉과 다른 방식으로 산정 필요함
- 경력을 고려해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다면 공,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모두 같은 조건이어 야 한
- 교사 자격 통합 시 유치원교사 자격이 있는 경 우에 한해 현재처럼 경력 인정해주되 원감 자 격의 경우는 어린이집 경력 인정 불가하다고 생각함
- 상위자격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최소 경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하여 상위자격

육교사 자격만 소지한 경우 교직이수 시간을 별도로 이수하도록 해야 함 • 경력 고려하는 것은 동의함. 다만, 기관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므로 경력 연수만을 고려하면 안됨. 법에 규정된 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유치원 교사 승급에 소요되는 실제 경력 연수 시간 평균을 적용하여 산정 필요함 • 교사들에게 합리적인 승급 체계를 제시하는 것은 교사로서의 자존감 및 업무 동기를 향상시키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함. 3년 경력이면 기본적인 교육 업무 수행에 대한 경력이 될수 있으며, 1급교사로서 한 단계 높은 업무에 대한 수행 시작 가능하다고 판단함 • 기본적으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경력반영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기적상황에서 양촉 중 일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음 • 어린이집 경력이든, 유치원 경력이든 똑같이 카운트해서 반영해야 함. 2급 자격 취득 후경력 3년 이상이면 업무 경력 있다고 보고승급교육 받은 후 1급으로 승급	동의 이유	비(非)동의 이유
	별도로 이수하도록 해야 함 • 경력 고려하는 것은 동의함. 다만, 기관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므로 경력 연수만을 고려하면 안됨. 법에 규정된 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유치원 교사 승급에 소요되는 실제 경력 연수 시간 평균을 적용하여 산정 필요함 • 교사들에게 합리적인 승급 체계를 제시하는 것은 교사로서의 자존감 및 업무 동기를 향상시키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함. 3년 경력이면 기본적인 교육 업무 수행에 대한 경험이 될 수 있으며, 1급교사로서 한 단계 높은 업무에 대한 수행 시작 가능하다고 판단함 • 기본적으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경력반영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기적상황에서 양측 중 일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음 • 어린이집 경력이든, 유치원 경력이든 똑같이 카운트해서 반영해야 함. 2급 자격 취득 후경력 3년 이상이면 업무 경력 있다고 보고	경력만 인정하고 그 외 경력 미인정 해야 함 보육교사의 현 직급 연수 경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 승급되는 데 보 다 많은 시간이 필요함 자격연수 과정만이 아니라 시험도 과정에 포함 해야함. 자격을 갖춘 후 경력을 동일하게 반영 하는 것이 적절함. 자격 통합 시 경력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수많은 변인을 모두 고려해 공정한 안을 도출

- □ 전문가들은 유치원 교사의 경우 승급소요 시간이 지역마다 다르므로 소요시간 도 계산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함.
- □ 비동의하는 전문가는 모든 교사를 승급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3년 이상 근무한 현직 담임교사들 중 희망자에 한해 특별교원양성과정이나 대학원 신편입과 정을 통해 이수한 경우 동일 자격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함. 경력이 곧 호봉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함.

4) 통합 시 학력고려

□ 전문가들에게 교사 자격 통합 시 보육교사의 학력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 질문함. 이는 유치원 자격 취득 시 대학원 학위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므로 보육교사 학력이 대학원 이상이면 이를 경력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질문임. 전문가의 대부분은 학력 인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임.

〈표 Ⅲ-2-5〉통합 시 학력고려 동의 여부 및 이유

분야	전적으로 동의함	부분적으로 동의함	부분적으로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총계
유아교육	3명(14.3%)	8명(38.1%)	7명(33.3%)	3명(14.3%)	21명
보육	13명(76.5%)	3명(17.6%)	1명(5.9%)	0명(0%)	17명
총계	16명(42.1%)	11명(28.9%)	8명(21.1%)	3명(7.9%)	38명(100%)
	동의 이유			네(非)동의 이유	

- 대학원 과정이 일부 교사 재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사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함, 단, 대학원 학위 때문에 교직 자격 미소지자에게 자격 부여하는 것은 반대임
- 학력을 경력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함. 단, 반드시 교직을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함. 교원의 지위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워칙에 예외 적용이 없도록 해야함
- 학위가 대학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분 아를 전공했는지가 고려되어야함. 자격취득 여부가 아닌 경력인정에 한정할 것을 제안
- 교육대학원 혹은 일반대학원 교육과에서 석 사학위 받는 것은 현장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의 시간, 돈, 노력을 별도로 투자하여 득한 것으로 현장경력 기간에 준하 는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사료됨(유 치원 교사 자격에 이미 적용하고 있는 바와 같음)
- ◆ 교육대학원 혹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받은 경우 2년의 현장경력으로 추가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 응용학문이라는 유아교육의 특성상 대학원 학력의 경우 100%인정이 아닌 70~80%로 비율 조정 제안(대학원 학력의 경우 이론탐 구가 주가 되므로)
- 학력사항을 경력인정 하는 것은 초중등교사 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므로 동일하게 적용 필 요함
- 보육교사가 유아교육 관련 대학원 학위를 수 여받은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해야함
- 유치원 교사가 대학원 학위를 통해 자격 취 득 시 학위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는 반면, 보육교사가 대학원 학위를 보유하고 있어도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자격 체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현재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학력기준이 아
 난 학점 기준으로 통합교사자격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음, 학력 반영 적절치 않음
- 현장 경력이 전혀 없다면, 대학원 학위만으로 경력 인정 어려움
- 보육교사가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이미 경력으로 반영되어 있어 이를 중복 인정하는 것 반대함. 단, 학위 취득을 한 후 취 업한 보육교사의 경우 고려 필요함
- 자격 통합 시 대학원 학위 기간 고려는 적절치 않음. 대학원 학위 기간 관련한 수많은 변인을 모두 고려해 공정한 안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 능함
- 현 교육법에 제시되어 있는 인정사항으로 제한 해야함
- · 자격 취득 당시 보육교사 2급은 교직이수를 하 지 않았으므로 학력인정 불가능
- 대학원 학력이 교육경력으로 인정되기에는 현재 너무 다양한 대학원이 있음. 교육대학원과 같은 교육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거나 기타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동의 이유	비(非)동의 이유
 보육교사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일 경우 이를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자격 체계에서 공정 성과 일관성 확보하는 중요한 조치임 영유아교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는 1년 경력으로, 박사학위는 2년 경력으로 인정 방 안 제안 일반대학원과 교육대학원 간의 차이를 반드 시 반영해야함. 이들 과정 간의 학문적 깊이 와 교육적 역량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교사 자격 통합 시 학력 차이를 공정하 게 반영 필요 	

□ 통합 시 학력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며, 대학원 석사학위를 2년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적용가능하다고 주장함. 다만 현장경력이나 교직이수는 전제조건이며, 모든 전공이 아닌 유아교육보육 관련 전공의 경우와 현직 교사에게만 한정됨을 제안함.

3. (가칭)영유아학교 원감 신규 자격 기준

가. 쟁점 및 현재 규정

□ 영유아교원 자격체계 중 가장 변화가 큰 직급은 원감임. 유치원에서는 원감 자격기준이 있었으나, 보육교사 자격체계에서는 없었으므로, 자격전환 시 그 기준과 요건이 필요함.

〈표 Ⅲ-3-1〉 유치원·어린이집 원감 자격 규정

유치원 원감 자격 관련 규정	어린이집 원감 자격 관련 규정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별표1 원감자격기준 ①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 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②유치 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현재 원감 자격 직급이 없어 관련 규정은 없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 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 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 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유치원 원감 자격 관련 규정	어린이집 원감 자격 관련 규정
/2 22 / / 22 // 2	[참고] 현재 원장사전직무교육 이수(80시간) 후 어린이집 원장자격을 받을 수 있음
[참고] 현재 소정의 재교육은 자격연수 90시간 적용 중임	영유아보육법 제50조(경력의 인정) ②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 후 과정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을 말한다)에 근무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보육교사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따른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나. 동의 대 비(非)동의 여부 및 근거

1) 원감자격 기준 동일 적용

- □ 통합교사 자격체게에서 영유아원감 자격 신설 시 현행 유치원 원감 자격조건 과 동일하게 하는 것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음.
 - 대부분의 전문가가 학문분야와 상관없이 유보통합의 주요 목적은 교육의 질 제고와 교원의 전문성 상향에 둔 점을 고려해, 현행 유치원 원감 자격 조건과 동일하게 통합 영유아원감 자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함.
 - 양기관에 중간관리자는 필요하므로 통합기관 기준을 갖춘 기관부터 배치해 줄 것을 제안함. 반면 원감자격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통합교사 자격이 안정될 때까지 원감자격조건을 별도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함.

〈표 Ⅲ-3-2〉 원감 자격 기준 동일 적용 동의 여부 및 이유

분야	전적으로 동의함	부 분 적으로 동의함	부분적으로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총계
유아교육	13명(61.9%)	5명(23.8%)	0명(0%)	3명(14.3%)	21명(100%)
보육	12명(70.6%)	5명(29.4%)	0명(0%)	0명(0%)	17명(100%)
총계	25명(65.8%)	10명(26.3%)	0명(0%)	3명(7.9%)	38명(100%)

동의 이유	비(非)동의 이유
 통합교원도 동일기준 적용 자격 취득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동일하게 적용 양 기관에 중간관리자는 필요하므로 유예기 간을 투어 통합기관의 기준을 갖춘 기관부터 시작하는 방안 원감자격조건을 승진이 아닌 업무로 이해한 다면, 경력을 자격 조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1급 자격받은 사항을 동일 기준으로 두고 이후 경력 산정하는 것도 필요함 단, 원감자격취득 요건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일시적으로 해당 직급의 인원이 불충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하여(유치원 원감취득의 실질적 필요 연수의 평균)동일하게 한 것이 바람직함 어린이집에 없던 자격이므로, 기존 유치원원감자격과 동일하게 하는 점은 적절. 다만아해 문항처럼 기존 어린이집 원장 자격의 조정이 필수적임 	 어린이집 원감 자격 별도 신설이유 없음 유치원 원감은 보육교사 경력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전문성 차이,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단계적 접근 필요(자격통합 이전 교사자격 취득자 유치원 원감 자격 연수와 유사한 연수과정 도입, 어린이집 경력 인정 기준 단계적 조정, 일정기간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감 자격 취득 요건 차별화 운영, 별도 예산 마련) 어린이집 원감과 통합기관 원감의 자격은 달라야함 영유아원감 자격증 발급을 위해, 각기 차별적인보수교육 제공이 필요(교육시간이나 내용 등) 통합교사 자격취득이 안정될 때까지 원감자격조건 별개로함.

2) 보육교사 1급 승급 시 원감자격

□ 전문가들은 어린이집 1급 정교사에게 교육경력 3년이상이면 원감자격기준으로 조정한다는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었으나, 기존 원장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원감자격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갈등이 야기되므로, 필수이수교육 체계를 마련해 주거나, 환상인정비율을 자격기준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함.

〈표 Ⅲ-3-3〉 보육교사 1급 승급 시 원감자격 의견

분야	전적으로 동의함	부 분 적으로 동의함	부분적으로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총계
유아교육	18명(85.7%)	1명(4.8%)	1명(4.8%)	1명(4.8%)	21명(100%)
보육	10명(58.8%)	5명(29.4%)	2명(11.8%)	0명(0)	17명(100%)
총계	28명(73.7%)	6명(15.8%)	3명(7.9%)	1명(2.6%)	38명(100%)

동의 이유 비(非)동의 이유 원감직급 신설로 자격증 상향 통합 ◆ 동일한 자격체제로 가지위해서는 반드시 필 요한 절차임 ◆ 현재 유치원은 유치원 2급 정교사 취득 후 9 통합교사 승급 요건을 결정한 후 판단, 기존 원 년 경과해야 원장자격 대상자가 되며, 이는 장직 수행자에게 원감자격으로 격하하는 것은 어린이집도 유사함. 어린이집 6년 경력은 통 갈등 증폭. 필수 이수교육 체계 마련해 사후교 합기관 원감 자격으로 저정이 적절함 육 실시 필요 ◆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동일 기준과 조건 ◆ 법적지위가 근로자에서 교원으로 변경되므로, 적용 필요. 원감이 원장직무대행 수행 가능 근로자로 일한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 원감자격 승급 시 자격연수를 받고, 다면평 적절치 않음. 환상인정비율적용해 자격기준 조 가 및 면접교사 등을 보는 부분에서도 전문 정 필요 성을 평가하는 장치가 될 것임. • 유치원 원감과 어린이집 원장을 동일선상에서 ◆ 찬성하지만, 연쇄적으로 원장 자격기준에 조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연수과정 마련 등 정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합의 필요 단계적 접근 필요 ◆ 기존체계와 달라 반발이 예상되나, 원감자격 교육법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므로 불가함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교대원(혹은 대학원 교육과) 석사학위 소유자에 ◆ 제도개편의 주 목적이 교직원의 질 향상이므 게는 2년 경력 인정하여, 전문성을 기울인 노 로, 원감, 원장이 되는 기준을 높이는 만큼, 력을 인정 필요 사회적 지위와 권위에 대해 인정받을 것임. 어린이집 원감 직급 신설 후 원감자격 취득 후 ◆ 조정이 아니라 통합기관 원감 자격을 더 취 원장자격 취득하도록 해야 함 득하는 것이라 여겨짐 기존 어린이집 원장 자격자의 역할을 충분히 인정하고, 경력과 교육적 리더십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자격 기준 조정 필요

3) 유치원 경력 어린이집 원감 자격 산정 시 반영

- □ 영유아원감자격 신설 시에는 유치원 교사의 경력을 모두 인정해 주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유치원 교원의 경험이 영아반 전문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함.
- □ 원감자격은 유치원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어 통합교사 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 일정 기간과 자격연수를 통해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함.

⟨₩	: III−3−4\) 원감 자 2	별 시설	시 유치워	경력	사정	반영	의견

분야	전적으로 동의함	부분적으로 동의함	부분적으로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총계
유아교육	10명(47.6%)	6명(28.6%)	2명(9.5%)	3명(14.3%)	21명(100%)
보육	7명(41.2%)	3명(17.6%)	5명(29.4%)	2명(11.8%)	17명(100%)
총계	17명(44.7%)	9명(23.7%)	7명(18.4%)	5명(13.2%)	38명(100%)

동의 이유 비(非)동의 이유

- 통합자격이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력과 자격 모두 인정. 현재보육교사 자격 소지시 유치원 근무경력 인정임. 통합시에도 이기준 그대로 적용 필요
- 통합교사자격을 취득한 교사에 한해 발급하는 것이 적절
- 통합체계에서는 이전 유치원 교사경력과 보육 교사 경력이 모두 인정되어야 함
- 현재 영유아보육법에도 유치원 경력을 어린이 집에서 인정하므로, 통합 영유아 원감 자격에 서도 유치원 경력 인정이 적절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력 상호인정 필요
- 경력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영유아원감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각기 차별적 보수교육이 필요
- 경력이나 자격 인정하되 70-80%로 비율 조정, 연수과정에서 어린이집 관련 업무 필수 포함
- ◆ 모든 경력 동일하게 인정
- 모든 자격에서 양 기관의 경력 인정 필요. 이런 점에서 원감자격연수에서 영아관련교육은 필 수적임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별성 존준 필요. 각 기 관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일한 경력이나 자격을 동일하게 인정해 주어야 형평성 문제가 없음
- 교직이수와 영아교육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포함한 현장연수 보안이 선제 조건임
- 영아경험 없이 유아위주 교사경험만으로 중간 관리자인 원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우 므로 통합교사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자격증 소지 유무가 아닌 재직기간이 기준이 되어야 함
- ◆ 유치원과 보육교사 자격증 모두 가지고 있을 때 통합교사 자격을 부여하므로, 통합교사 자 격을 전제로 통합영유아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함
- 유치원에서의 경력 인정으로 교사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반이 되도록 함

- 통합교사 승급요건 마련해, 통합교사자격 취 득자 중 요건에 부합한 자에게 통합영유아원 감 자격 부여
- 유치원 근무교원은 영아반 전문성 겸비했다고 보기 어려움. 경력인정비율 정해 단계적 인정 필요
-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 필요 교과목 이수 후 보육전문성 갖게 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 원감이라는 직급 신설에 의문(새로 운 직급 신설은 행정적 부담 가중, 교사 처우 개선이나 교육환경개선 등 유아에게 직접적 영향 미치는 요소에 집중 필요, 새로운 직급 신설은 자격기준, 승진체계, 보수체계 조정 등 행정절차가 추가되며, 인건비 증가로 인한 유 보통합 예산 운영에 부담을 줌.
- 유치원 1급 자격자로 일한 경력 3년있을 시 원감연수 자격이 됨
- 유치원에서 유치원교사 자격증만 가지고 일한 경력을 산정하는 것이 옳음
- ◆ 통합교사 자격이후 경력만 인정

4) 원감자격 비용 자부담

□ 원감자격연수 비용 부담에 대해 팽팽한 의견의 대립이 있었는데, 기존 유치원 교사 승급 자격연수가 국비부담이며, 초중등 교원의 교육과의 연계성 측면에 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자격전환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므로 자부담으로 이루어지는게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표 Ⅲ-3-5〉 원감자격 비용 자부담 의견

분야	전적으로 동의함	부분적으로 동의함	부분적으로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총계
유아교육	4명(19.0%)	8명(38.1%)	1명(4.8%)	8명(38.1%)	21명
보육	3명(17.6%)	6명(35.3%)	5명(29.4%)	3명(17.6%)	17명
총계	7명(18.4%)	14명(36.8%)	6명(15.8%)	11명(28.9%)	38명(100%)

동의 이유 비(非)동의 이유

- 자비부담으로 국가재정 부족으로 인한 자격연 수 규모 제한 없어질 것임
- 승급 시 자비부담 원칙
- 자격전환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므로, 현실적 재원마련 여부 고려해 모든 비용 지불은 한계 가 있음
- 자격연수는 국가에서 비용 부담하므로 동일하게 운영되는 것이 필요함. 통합기관기준을 갖춘 원부터 원감 배치 방식으로 추진
- 국고 부담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필요가 발생할 경우, 영유아기관, 개인, 국가, 지자체가 분담하되, 점진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부담을 늘기면 좋겠음
- 연수기회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자비부 담 필요
- ★ 뉴질랜드는 자격갱신 비용을 교사 개인이 부
 담. 승급에 대한 일부 자비부담 필요
- 승급은 필수가 아닌 선택의 영역이므로 자비 부담이 좋음
- 교육부 예산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자비부담 필요
- 교육부가 자격연수를 각 교육청을 통해 자체 적으로 진행한다면 일부 자비부담 전환이 필 요할 것임

- 초중등교사 자격연수와 일관성 고려해 전액 국비부담
- ◆ 예산확보 통해 국비부담이 원칙
- 연수비용 부담이 교사의 사기 저하를 낳고,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공이익을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국비로 연수비용지워 필요

동의 이유	비(非)동의 이유
 현행 보육교사 승급교육 80시간에 해당하는 비용보다 많고, 원장사전직무교육 비용 보다 적게 책정하고, 현행 유치원 원감자격 연수 90시간에서 80시간을 뺀 비용을 국가가 부담 하게 하면 됨. 자비부담이 되지 않으면 예산에 따른 교육물 량이 정해지고 반복되는 정체에서 벗어날 수 없음. 특히 통합자격 안정기까 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하는 경력자 모두에게 상급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연수가 개방될 필요가 있음 	

4. (가칭)영유아학교 원장 신규 자격

가. 쟁점 및 현재 규정

□ 현재 유치원 원장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 규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Ⅲ-4-1〉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자격 규정

유치원 기준	어린이집 기준
① 원감자격 + 3년 교육경력 + 자격연수(180시 간 이상) ② 학식·덕망 높은 자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기준 해당자*) * (전문대졸 또는 동등학력) ▲ 5급이상 공무원+5 년이상 교육·교육행정경력 또는 ▲ 장학관(연구 관)+5년이상 교육·교육행정경력 또는 ▲ 9년이 상 교육·교육행정경력, (학력기준 없음) 15년 이상 교육·교육행정경력	■일반기준 ①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보육 등 이동복지업무 경력(이하 경력)' ②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③ 유치원 원장 자격 ④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⑤ 사회복지 1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⑥ 간호사 면허 취득 후 7년 이상 경력 ② 국가 또는 지자체 7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경력 + 사전직무연수(80시간)

나. 동의 대 비(非)동의 여부 및 근거

- 1) 원장자격 통합 시에도 교직 이수
- □ 원장의 자격 통합 시에도 교직이수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적으로 많았음. 다만 교직교과목을 영유아교원과 원장에게 맞게 조정해 이수하도록 할 것을 제안함. 반면 원장자격은 현행 교육법상 승급체계를 가진 사람이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원장은 유치원 원장으로 통합될 수 없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음. 교직보다는 경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보육쪽 입장도 있었음.

〈표 Ⅲ-4-2〉 원장자격 통합 시 교직이수 필요성 동의 여부 및 이유

분야	전적 <u>으로</u> 동의함	부분적으로 동의함	부분적으로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총계
유아교육	15명(71.4%)	4명(19.0%)	2명(9.5%)	0명(0)	21명(100%)
보육	8명(47.1%)	4명(23.5%)	3명(17.6%)	2명(11.8%)	17명(100%)
총계	23명(60.5%)	8명(21.1%)	5명(13.2%)	2명(5.3%)	38명(100%)

동의 이유 비(非)동의 이유

- 학교체제 관리자로서 교직 이수 중요. 운영 차원의 교육철학, 신념, 소양 포함
- 교육부 교원자격조건에 교직 이수는 필수임.
 현실적 상황이나 요구 면밀히 검토해 반영 필요
- 초중등교장 자격과 동일하게 유지
- 교직 이수 포함, 양 기관 원장 모두 보수교육 필요
- 교직교과목을 영유아교사에게 맞제 조정한 후. 원장에게 교직이수 실시
- 교직뿐만 아니라, 영유아교육기관 업무 수행
 에 필수적 요소들의 교육도 필요
-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취득 과정이 상이하므로. 특히 교직 이수 필수
- 최소 과목, 기간 등을 정해 질적수준을 높인 교육 필요
- 교직 이수는 교원의 전문성, 실무경험, 교육철학 및 가치관 형성, 윤리적 책임감 형성에 필수 적임. 원장 역량강화를 위해 교직 이수 필요

- 교직과목은 주로 교육학 이론, 교육심리, 교육 철학으로 원장의 리더십, 행정능력, 재정관리 능력을 키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통합교사 자격 취득자에 한해 원장자격을 동일 하게 해야함.
- 원장자격은 현행 교육법 승급체계를 거친 사람이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원장이 유치원 원장으로 통합될 수 없음
- 통합 영유아기관 원장은 통합 원장 자격 취득 적절하나, 교직이수보다 현재 경력을 우선시 해 야함.
- 유치원, 어린이집 구분없이 학식과 덕망 높은
 자와 같은 모호한 규정 삭제 필요
- 교육내용 체계화, 일원화 필요
- 현재 교직은 원장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유아교육기관 장으로서의 교육적 리더십과 교 육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필요

동의 이유	비(非)동의 이유
 교직은 교원 자격을 위한 기본 과정임. 특별 과정 마련 통해 교직이수 제공 필요 유치원자격이 없는 자는 교직이수조건 충족 후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1의 2에 의해 경력 인정 필요 	 원장의 역할은 교육기관 운영과 교직원 관리 등 포괄적임. 경력이 충분한 경우 추가 교직이 수는 타당하지 않음. 교직이수는 교사자격 통합 시 요구되나 원장자 격 시에는 적용 필요 없음 실질적인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2) 어린이집 원장 경력 기준 정해 특별교원양성교육 시행

□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특별교원양성교육 시행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함. 원장 자격취득 총 경력 9년을 감안 해 특별교원양성과정을 수강하도록 할 것과 대학원 석사학위는 2년 경력으로 인정하는 안 등을 제안함. 반대로 기존 자격자에게 새로운 자격제도를 도입해 자격을 박탈하는 일은 없으며, 교원자격검정령제8조 1의 2에 준해 어린이집 원장을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해 통합기관장의자격연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음.

〈표 Ⅲ-4-3〉 원장자격 통합 시 특별교원양성과정 수강 의견

분야	전적으로 동의함	부 분 적으로 동의함	부분적으로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총계
유아교육	6명(28.6%)	9명(42.9%)	3명(14.3%)	3명(14.3%)	21명(100%)
보육	7명(41.2%)	7명(41.2%)	2명(11.8%)	1명(5.9%)	17명(100%)
총계	13명(34.2%)	16명(42.1%)	5명(13.2%)	4명(10.5%)	38명(100.0%)

동의 이유 비(非)동의 이유

- 교사자격 일원화의 목적이 균등하게 질 높은 교원 양성체계를 갖추는 것이므로 상향 조정 픽요
- 원장자격취득 총 경력 9년은 기준으로, 기준 미만일 때 특별교원양성과정 수강 찬성
- 어린이집(혹은 통합) 원감 자격이 1급 + 3년 으로 결정된다면, 이에 따라 원장 자격은 1 급 + 6년 혹은 원감 + 3년의 조건이 요구되는 것이 합당함. 현재 어린이집 원장이 경력이 부족하여 (통합)원감 자격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 과거에 교대원(혹은 대학원 교육과)석사학위가 있으면 2년의 경력을 인정하고
- 현재 원장자격을 갖추고 역할을 수행하는 자에 게 원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갈등을 유발 함. 유예기간을 두어 원장직무대리로 하고 일정 교육과 경력을 보완해 원장으로 정식 승급하도 록 하는 것이 타당함.
- ◆ 현직교원의 직급은 그대로 인정 필요
- 환산인정률을 고려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특별교원양성과정 관리체계에 대한 엄격한 평가 규정이 준수될 때 질적 내실화 가능
- 경력산정 시 동일기준 적용은 필요하나 특별교 원양성과정 교육 이수의 자격에 대한 추가 논 의 필요

1년의 경력을 더 쌓은 후 원장 자격을 받도록 하거나, 특별교원양성과정을 수강하도록하는 것도 대안임. 단, 특별교원양성과정이 3년의 경력에 준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할

 특별교원양성과정 운영 시 교사와 다른 원장 역할에 필요한 교육내용 운영 필요

것임.

동의 이유

- 형평성을 고려해 유치원 원장이 원감자격을 취득하는데 소요한 시간을 인정해 주되, 3+3+자격연수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요 시간의 평균(약 6년+6년+자격연수시간)을 적용. 특별교원양성과정 역시 교직을 포함하 여 유치원(또는 어린이집) 업무 모두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 필요
- 자격연수 시간을 경력과 동일하게 하는 것 불가능. 특별교원양성과정 수강이 필요하며, 대면교육으로 진행 필요
- 어린이집 원장자격 3년은 통합 시 원감자격 으로 조정, 단, 유치원 원장 승급 기준에 준 해 6년 이상인 자에 한해 특별교원양성과정 수강 후 자격 인정
-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모두에게 특별교원 양성과정 필요
- 어린이집 원장이 원장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 이를 유치원 원감 자격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자격 통합 시 특별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경력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자격 통합 과정에서 교육적 질과 전문성을 유지하는 합 리적인 방안
- 필요한 과정이라 여겨짐. 유예기간을 두어 개인이 선택하게 할 필요 있음
- 원장자격 3년이면 자격통합시 원감자격에 준하므로, 이에 해당되는 특별교원양성과정 수강이 필요함
- 유치원 원장의 자격취득 과정과 유사한 경력
 조건 반영은 형평성과 전문성 보장

비(非)동의 이유

- 경력의 질적 차이와 형평성 문제 고려 필요. 단순히 경력 연수만으로 유치원 원감과 동일 자격 부여는 형평성에서 벗어남
- 어린이집 원장 자격과 통합 원장 자격은 달라
 야 할 것으로 보임.
- 자격 통합 시 경력을 고려하는 것은 공정한 안을 도출하기 불가능함.
- 교사경력으로 자격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 연수 자격 획득을 위한 정당한 절차 밝는 것 필요(특 별교원양성과정은 아님)
- 승급에 걸리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 필요
- 어린이집 원장 경력 감안은 필요하나, 특별교원 양성과정 만으로는 안되며, 교직이후 필수 후 원감자격에 준하는 경력 이후 원장자격 부여 필요
- 상위자격 취득 경력 산정을 단순한 경력 계산 방법으로 해서는 안됨
- 특별교원양성과정이 아니라 연수 등 방식 활용 이 타당함
- ◆ 특별연수로 통합원장 자격취득 용이성 확보 필 Ω
- ◆ 유치원 승급 기준 까다로우므로 이에 맞출 필 요 있음
- 기존 자격자에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며 자격을 박탈하는 일은 없음. 교직, 통합기관 특성에 필요한 과목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 자격통합 원감을 취득한 자의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을 인정하여(교원자격검정령, 제8조1의2) 자격 통합 기관장의 자격연수의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 ◆ 경력 상향 조정

3) 고경력 어린이집 원장은 직무교육으로 통합원장 자격 취득

□ 20년 이상의 고경력 원장에게 일부 교육이수 후 통합원장자격을 부여하는 부 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양쪽기관을 운영했다고 해서 영유아학교 운영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원장교육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관건이라는 응답을 함.

□ 이와 반대로 각 기관의 20년 경력은 인정하되, 필요 역량은 모두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고 함.

〈표 Ⅲ-4-4〉 원장자격 통합	시 고경력 원장 자격전환 의견
-------------------	------------------

분야	전적으로 동의함	부분적으로 동의함	부분적으로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총계
유아교육	4(19.0%)	6(28.6%)	7(33.3%)	4명(19.0%)	21명(100 %)
보육	7(41.2%)	7(41.2%)	3(17.6%)	0(0.0)	17명(100 %)
총계	11명(28.9%)	13명(34.2%)	10명(26.3%)	4명(10.5%)	38명(100.0)

동의 이유 비(非)동의 이유

- 20년 이상 근무교원의 전문성 인정 필요. 최 소한의 교육이수 후 자격 전환
- 40인 이상 규모 어린이집의 20년 이상 원장에 대한 경력 인정. 단 자격 발급 이후 필수 직무연수 이수 필요
- 현직의 기여도 고려는 필요함. 소정의 교육 이수에 동의
- 원장경력 20년 이상의 경우 자격전환 동의하나 최소 200시간 이상 재교육 필요
- 경력과 전문성 고려 측면에서 20년 이상의 원장 경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추가적 교육 이 수 후 자격전환하는 것은 합리적 방안
- 20년 이상이라는 기준의 명확한 근거 제시 필요
- 영유아학교 운영에 필요한 원장교육을 무엇으로 구성하느냐가 중요함. 양쪽 기관을 운영한거지 통합된 기관을 맡아 본 것은 아니기 때문임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기준에 의하면, 학력 기준 없을 경우 '1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고, 교원 자격검정령, 제 8조 1의 2에 의하면 어린이 집 원장과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 경력 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15년으로 낮추는 것을 제안

- 통합교사자격을 갖추었는지 우선 고려 필요. 통합교사자격 취득 후 현장경력 바탕으로 승급 필요
- 환상인정비율 산출 필요, 교육이수 방식에 대한 합의 필요
- 각 기관에서의 20년 이상 경력에 대한 인정 필요. 다만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역량 강화하도록 교육이수 의무화 필요
- 교육부 일원화 교원자격기준에 준한 통합원장 자격 부여가 원칙. 교직이수 등 별도과정 필요
- ◆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전화되어야 함
- ◆ 통합 시 경력 고려는 불가능함
- 연수자격 획득을 위한 정당한 절차(학위취득과 정의 다양화(대학편입, 전문대학교 전공심화과 정, 대학원 과정)에 초점)
- 통합기관원장자격을 위해서는 경력만으로 기여 도 판단 어려우므로, 어린이집 원장은 교직과 정 보수교육을, 영아반 운영 및 영아발달 이해 보수교육 실시 필요
- ◆ 현직에서의 경력만으로 자격 부여는 어려움
- 현직 경력만으로 보기는 어려움 기관유형별, 경력 연수별로 자격전환 기준 달리할 것을 제안
- 동일 자격을 받는데, 경력에 따라 다른 과정을 거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경력이 짧은 원 장들은 원감연수를 받거나 특별교원양성과정을 거쳐햐 하는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것임.

동의 이유	비(非)동의 이유
	통합기관은 교육기관이므로, 교직 이수 및 적절한 자격부여 필요 현장기여도 인정해 유치원 원장에 준하는 교육이수 후 자격 전환 양기관 모두 별도의 연수를 통해 자격 전환 필요 기간만으로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 자격을 주는 것은 부적절 자격기준을 경력이면 경력 등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되 예외를 만들지 않도록 할 것 제안

5. 통합자격 취득에 대한 기타 의견

- □ 전문가들은 일학습 병행 모델을 추진할 것, 신뢰로운 기관에서의 통합자격전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초중고등학교 교원과의 연계차원에서 승급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 등을 제안함.
- □ 유치원 교원의 경우 승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현장의 실질적 현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교사, 원감, 원장의 자격을 위해 요구되는 소양이 무엇인 지 정리해, 해당 요건에 따라 기존 자격에 대해 평가하는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될 것을 제안함.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의 3에 따라 교원자격검 정령 개정을 하여, 통합자격전환 취득기준을 정항 한, 그 기준에 따라 1급, 수 석, 원감, 원장 등의 자격기준을 정할 것을 제안함.
- □ 본 의견은 통합교원 예상 시나리오에 대한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가감없이 보여주기 위해 연구자가 재가공하지 않고 제시한 것임.

〈표 Ⅲ-5-1〉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가 기타의견

유아교육

-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인 현재 자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자격전환을 추진하는 것. 유치원과 보육교사 승급의 경우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보안할 방안이 적 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즉, 통합교사 자격 취득 후 현장 경력을 기준으로 1급, 원감, 원장 등 승급하도록 하며, 승급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영유아통합교사 1급, 원감, 원장 승급 교육을 이수 하도록 함
- ◆ 현장교원에 대한 자격전환이 필요하며 일-학습 병행이 가능한 모델인 평일 1~2일,

토요일 1일 모델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력이 아닌 학점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유치원교사가 없는 보육교사는 25학점 이내, 보육교사가 없는 유치원교사는 9학점 이내가 적정함.

-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보수 및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 통합자격 논의 시 기본적인 방향은 초·중등 교사 자격과의 일관성을 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영유아교사-초등교사-중등교사로 이어지는 교육부 소속 교원으로서의 조건과 자격, 승급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면 함. 현직교사들의 매우 다양한 경력, 학력 관련 배경을 가지고 있음. 수많은 경력, 학력 관련 변인들을 모두 고려한 공정한 인정(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됨. 현재 보유한 자격에 포커스를 맞춰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 유보통합의 영유아교육의 커다란 전환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자격통합의 과정일 것임. 앞서 제시한 2급→1급→원감→원장의 승급과정을 원칙으로 두고이 과정에 합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데 필요한 유예 기간 확보와 학위취득과정의 다양화(대학편입, 전문대학교 전공심화과정, 대학원 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보육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유치원 교사에 비해 덜 인정받고 자격도 강등되거나 취득이 늦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어 불리하다는 불만에 휩싸일 수 있음. 통합된 기관의 자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라 생각되지만,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교사들이 개정되는 제도가 한 측에만 유리하게 편향되어있다고 느끼게만 해서도 안될 것이라 사료됨. 이미 현장에서 쌓은 경력의 수치는 바꾸기 어렵지만, 석사학위를 2년 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적용한다면 보육교사들이 상대적으로 자격취득이 늦어지고 손해보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느낌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들인 수고가 정당하게 인정받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함
- 교사들에 대한 특별양성교육 뿐 아니라 원감, 원장 등을 위한 보수교육에 대한 준비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어린이집에서의 교육과 유치원에서의 교육에서 겹치는 부분은 분명 있지만 차별되는 부분도 분명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수교육은 기관의 운영을 책임지는 상위 직급의 교사들에게 더 필요할 수 있음
- 통합교원 양성 및 자격 체계를 개편함에 있어서 다른 학교급 체계에 준하는 기준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함. 그렇게 할 때 유아학교로서의 위상과 교원으로서의 위상도 제고되지 않을까 생각함
- 30년 이상 이원화된 체계에서 존재해온 차이를 일시에 통합하는 것에는 많은 무리가 있을 수 있음. 하지만, 자격을 통합(취득)하는 것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이익이며 궁극적으로 유아대상 교원의 지위 향상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라면한 수준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작부터 자격 취득 체계가 달랐던(기초선이 달랐던) 두 개의 자격이 유보통합이라는 상황에 봉착하여 현장경력 연수 등 만으로 일원화 된다는 것은 성실히 유아교육에 전념해온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음.
- 법적 기준만이 아닌 현장의 실질적인 현황에 대한 분석이 세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예를들어 유치원 교원의 경우 실제 승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6년 이상임, 어린 이집의 경우 평균 3년이면 승급함/(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원장의 경우도 교사 경 력이 있는 원장과 그렇지 않고 운영만 하는 원장이 있음/20인 미만의 가정어린이집 원장과 교원출신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원장자격을 취득한 원장이 있음 등등)
-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 교원양성체계에서 요구하는 필수 요소들을 반드시 이수할 필요가 있음(특별/일시적 구제가 아닌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에 입각하여 제대로 이수)

- ◆ 유치원 교원과 보육교직원의 자격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 특히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원감자격 대상자가 되기 위해 1급 정교사를 취득하고도 15년 이상의 시간을 노력함. 그렇더라도 원감 자격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는 교사들도 허다함. 그에 비해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원장, 원감 자격을 취득하는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음.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원장, 원감 자격을 취득하고 공립유치원에 임용되는 사례도 종종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큼. 유보통합 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은 것은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임. 정말 이러한 많은 격차를 해소하고 유보통합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임. 업무담당자들의 충분한 숙의 과정과 의견수렴과정이 있길 기대함
-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가지고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과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어린 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해주는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 제2호부 터 개정되어야 함. 자격취득 방법이 상이한데 상위자격(정교사 1급)취득을 위한 교 육경력을 동일하게 인정해주는 법령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 유치원 교사 자격과 보육교사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통합자격신청으로 통합자격을 취득하는 것보다는 소정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그 이유는 유치원 교사 자격과 보육교사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두 기관을 모두 경험한 경 우는 많지 않으므로 유치원 근무 경력만 있는 경우에는 0~2세에 대한 교육, 어린이 집 경력만 있는 경우에는 3~5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원감 이상의 자격 즉 원감, 원장 자격에 대한 부분은 더 통합교사 자격취득보다 더 많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어린이집 원감 자격 신설은 동의하지만 유치원감과 같은 자격으로 간주할 수 없음. 경력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임. 유치원장 자격과 어린이집 원장 자격은 취득 과정부터 경력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두 자격 통합은 많은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유치원과 보육교사 및 원감, 원감 자격 기준을 잘 알 수 있도록 비교하여 제시해주어 많은 참고가 되었음

자격을 맞추기 위해 원감, 원장 연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원 장과 원감이 필요한 기관의 적정 규모도 필요하고, 각 직급에서의 역할과 일의 양도 어느 정도 맞추어 져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국적으로 인구밀도가 밀집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서의 상황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국공립과 사립/민간의 기관 유형 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할 부분이라고 보여짐. 작은 기관들은 몇 곳을 함께 관리 감독하는 원장을 두는 것도 방법이라도 생각됨.

◆ 초등학교에 비하여 유아교육기관은 그 규모가 작고 수가 많아 통합교사 체계를 위해

보육

- 2급-1급-원감-원장의 연한이나 승급을 위한 연수기간과 내용도 다시 검토되었으면 좋겠음. 원감, 원장의 경우 관리자의 역할로서 일반교사와는 다른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는 연수도 필요할 것이고, 관리자로 넘어가기 전에 수석교사 등의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 등도 검토 되면 좋을 것 같음
- 교사, 원감, 원장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내용인데, 자격을 통합하는 과정은 현장의 특수성과 개인의 사전 경험 등에 따라 매우 복잡하거나 다양한 양식을 가지 고 있음. 따라서 자격조건을 통합함에 있어 유예기간에 내 순차성을 가지고 다양한 트랙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한편 통합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통합 후 교 사, 원감, 원장의 처우를 포함한 구체적인 비젼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 이에 따라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 통합과정의 어려움을 상쇄할 동기가 생길 것임
- 현재 제시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통합 교원 양성이 시작된 이후에 제시될 기준에 대해 그 이전에 본인의 경력/ 경험에 비추어 적절/부적절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그동안 교사 양성체계가 이원화되고 그 안에서도 매우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 때문에 모두의 경험을 동일하게 만들어 출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 교사, 원감, 원장의 자격을 위해 요구되는 소양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리하고, 해당 조건에 비추어 기존 자격에 대해 평가를 하는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기를 바람.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할 때, 대상 별로 조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통합된 자격 안에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가 만족할 수가 없을 것임. 하지만 자격통합에 대한 쟁점이 있지만 영유아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점은 모두 동의하는 임장임. 따라서 10월18일 실시되는 정책포럼과 같이 함께 모여 쟁점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더욱 많이 있어야 함. 즉 유아교육과 보육 각계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경청하는 자리가 앞으로도 많이 있어야 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원감, 원장의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를 비교해서 방안을 도출할 것이 아니라 교사의 질 제고라는 전제 하에 영유아학교의 통합교사 자격, 원 감자격, 원장 자격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 안이 있은 후에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상관없이 이 방향에 부합되게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심플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예를 들어 영유아학교의 원장은 박사학위 학력, 현장경력 10년 이상(2급교사3+1급교사3+수석교사2+원감2)이라는 구체적 안이 도출되고 이 기준에 맞추어 자격조건을 갖추도록 요구함
- 영유아교육 현장은 교원 복지 측면에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현직 교원뿐만 아니라 휴직 중인 교원이나 더 나은 역량을 쌓으며 복직을 준비하고 있는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러한 지원은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교원 복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임
- 현장교원(교사, 원감, 원장)의 이야기를 읽다보니 이원화된 교사양성체계가 일원화된 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됨 제시된 내용 외에도 개인별 사례가 매우 다양할 수 있어 이를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나 대의를 생각하고 방향을 세워야하지 않을까 생각함. 어차피 이원화 과정에서 개개인이 처한 모든 상황을 들어줄 수는 없으며, 최소한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됨
- 원칙을 먼저 정하면 좋을 것 같음. 예를 들면,
 - 1. 자격기준에 학력기준을 포함시킨다.
 - 2. 경력기준은 양 기관에서의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한다.
 - 3. 자격 취득의 방향을 공급자 중심으로 할 것인지 수요자 중심으로 할 것인지 정해 야 합니다. 유치원의 승급은 현장의 수급 필요에 따라 자격연수가 탄력적으로 공급자(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바가 있었고, 어린이집의 승급은 수요자(학습자) 중심으로 승급이 이루어졌습니다.
 - 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56조(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의 3에 따라 교원자격검정 령 개정을 하면 됩니다.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정하고, 여기서 통합자격전환 취득 기준을 먼저 정한 후, 이 기준에 따라 1급, 수석, 원감, 원장 등의 자격기준을 정하면 합니다.)
 - 5. 자격전환교육도 양성교육과정과 같이 대면교육으로 한다.
 - 6.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자격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W

영유아교원 통합자격전환 및 연수 방안

- 01 종합 및 시사점
- 02 현직 교원의 영유아교사 자격부여 기준
- 03 자격직급별 영유아교사 자격 통합 시나리오

Ⅳ. 영유아교원 통합 자격전환 및 연수 방안

1. 종합 및 시사점

- 가. 현행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교(직)원 승급 제도 및 현황 시사점
- 1)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체계의 시사점
- □ 유치원 준교사 자격은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 2023년 기준 전국에 12명만이 근무하고 있으며 더 이상 해당 자격은 발급하지 않고 있음. 반면 어린이집 3급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전체 보육교사의 10%미만에 해당함.
 - 이는 유보통합 실행방향에서 영유아교사 자격으로 통합시 3급 교사자격 발급
 은 폐지하고 대학의 정규과정을 통한 영유아교사 양성이 적합한 것으로 보임.
 - 유치원 정교사 1급으로 승급을 위한 자격조건과 보육교사 1급 승급을 위한 자격조건은 법령에는 2급 교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및 재교육으로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재직중인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유치원 교사의 소지자격 취득 후 경과 연수별 교사 현황을 보면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 취득자 중 4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정교사 2급 자격에 머물리 있는 경우가 만 명 이상으로 매우 많음.
 - 따라서 실제 유치원 교사의 경우 법령상의 자격경력 연수가 지나도 유치원 교사 1급 자격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음.
 - 유치원 교사의 경우 수석교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는 없는 자격으로 추후 영유아교사 통합자격 시 수석교사제도의 지속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현황

-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경과연수별 교사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원감 자격 취득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많으며, 국공립유치원

- 은 경과 연수별 교원수가 5년 이상~14년 미만의 경우 매년 400명 내외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으나 사립유치원은 경과연수가 지남에 따라 교원수가 점차 줄어듦을 고려했을 때 퇴직자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유치원 및 보육교사 자격별 현황(2023년 기준)을 살펴보면 유치원은 정교사 1급은 21,240명, 정교사 2급은 27,421명으로 정교사 2급 소지자가 약간 많으나,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급 161,536명, 보육교사 2급 62,526명, 보육교사 3급 2,037명으로 자격 급수에 따라 인원 차이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음.
- 보육교사의 경우 전체 226,134명 중 담임교사로 근무하는 비율이 161,078 명으로 약 71%정도임을 고려했을 때 실제 보육교사 자격을 소지하였으나 담임교사가 아닌 형태로 근무하지 않는 비율도 30%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보육교사 3급 자격 소지자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16% 로 1, 2급 교사 자격 소지자에 비해 약 10% 낮으며,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33%으로 1, 2급 교사 자격 소지자에 비해 약 10% 높게 나타남.

□ 영유아교사 추계

- 2025년~3035년까지 영유아교사 추계 결과, 영유아교사 수요는 2025년 186,582명, 2026년 178,986명, 2027년 173,868명, 2028년 174,684명, 2029년 177,993명, 2030년 182,629명, 2031년 188,272명, 2032년 193,766명, 2033년 198,616명, 2034년 202,609명, 2035년 201,089명으로 예측됨.
- 2023년 기준 유치원교사 48,672명(유치원 교사 1,2급 정교사, 수석교사 제외), 보육교사 161,078명(담임교사만 포함. 그 외 교사 유형은 제외)을 고려했을 때 총 209,700명으로 2025년~3035년까지 영유아교사 수요보다 높음.
- 교사 수요 예측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치원 및 보육교사의 이직 비율, 정책 요인 등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신규 교사가 지속적으로 양성되므로 현직 교사 수요와 더불어 예비교사 양성 과정에서의 공급 데이터를 함께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영유아교사 수급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함.

2) 유치원 원장(감)과 어린이집 원장 자격체계의 시사점

□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에 비해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은 매우 다양하므로 추

후 영유아 원장 통합자격 발급 시 기존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경로의 허용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어린이집 원장은 원감의 자격체계가 없으므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유치원 원감 자격 취득(유치원 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동일함.
- 따라서 영유아 원감 통합자격 신설 시 기존 어린이집 원장 중 유치원의 원감 자격 범위에 있는 경우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1년~3년인 경우 원감 자격 또는 원장 자격 부여의 적합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도 가능하며, 유치원 교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교육경력 후 원감자격 취득, 이후 3년 이상의 교육경력 후 원장 자격 취득이 가능함.
- 따라서 기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추후 원장 통합자격 발급시 법령 상 교육경력, 실제 원감 또는 원장이 되기까지 소요된 기한, 원장이 된 이후 교육경력 등을 고려하여 자격 인정 범위 등에 대한 면 밀한 검토가 필요함.

□ 유치원 원장(감)와 어린이집 원장 현황

- 유치원의 경우 교사 등의 직위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원장 자격증 소지자는 6.5%, 원감 자격 소지자는 23.5%로 나타났으며, 원장 및 원감 자격을 소지하였으나 비현직 현황을 고려했을 때도 자격 소지와 관계없이 해당 직위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어린이집의 경우 관련 현황이 파악되지 않으나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원장 자격을 소지하였으나 교사로 근무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2023년 기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자 중 현직 종사자는 8%임.
- 따라서 원장 및 원감 자격 기준을 현재 법령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의 적절성, 상향조정의 필요성 여부, 또는 실질적으로 승급을 원하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자격연수를 실시하여 현직 종사자 비율 증대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현직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 경로 현황을 살펴보면 법령상에 제시된 것처럼 다양한 자격취득 경로로 실제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취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영유아 원장 통합자격 발급 시 현재 자격취득 경로를 그대로 지속할 지, 현직 원장의 경우 원장 자격취득 경로에 따른 맞춤형 연수과정 등이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나. 유치원 교원과 보육교직원 연수 체계 비교 시사점

- 1) 연수 체계 관련 법령 비교 시사점
- □ 유치원 교원의 연수 체계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은 원장·원감·수석교사의 경우 자격연수 대상자 순위명부에 따라 교육청이 선정하며, 정교사 1·2급의 경우 원장 추천자 중에서 경력순으로 교육청이 선정함. 직무연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 향상 필요한 자, 휴직복귀자, 그 외 교육 연구 및 직무능력 배양 필요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직무연수의 연수 과정과 내용은 연수원장이 정함을 명시함.
 - 반면 보육 교직원의 상급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는 상급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의 대상 선정은 원장과 보육교사 공통 사항으로 현직 신청자들 중에서 신청순 및 경력순으로 지자체에서 선정함. 직무교육의 경우 일반 직무교육, 특별 직무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별로 연수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현직 원장·보육교사 신청자 중에서 신청순 및 경력순으로 지자체에서 선정함.
 - 정리하면 유치원 교원의 자격연수는 교육청에서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육 교직원의 상급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는 현직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음. 이에 유치원 교원은 법에 명시된 경력(예: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은 2급 자격증을 갖고 3년 이상 경력) 이상이어도 원장의 추천을받지 못하거나 경력순에 따라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함. 그러나 보육 교직원은 현직 교원의 신청으로 이루어져 법에 명시된 경력(예: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대상은 2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이 되면 승급교육 대상자로 선정됨. 즉, 동일한 경력을 가져도 유치원 교원과 보육 교직원의 상급자격 취득 가능 경력 기간이 상이하므로 유보통합 후 통합자격 논의 시 보유자격 외에 경력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현직 유치원 교원 대상 상급 자격취득 적체 현황 파악을 선행하여 이를 고려해야할 것임.

□ 연수 시수 및 내용 비교 시사점

- 유치원 교원의 자격연수 교육내용의 경우 교육부 표준교육과정(연수 시수, 영역별 배정 비율, 역량의 요소, 연수 주제 예시 등 제시)에 준하여 선정·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자율 역량의 경우 연수기관에서 교과목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연수기관에서는 운영 기수 및 회기마다교과목을 달리 편성·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즐거움이 배가되는 유·초 연계놀이」(예: 경기도교육연수원 2023년도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예: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2024년도 수석교사 자격 연수), 「유아에게 꼭 필요한 디지털 시민교육 1, 2」(예: 경기도교육연수원 2024ā 원감 자격 연수), 「디지털 리터러시 및 인공지능 도구 활용」(예: 제주도교육청 2024년도 원장 자격 연수) 등과 같이 최근 강조되고 있는 교육 이슈를 반영하고 있음.
- 반면 보육 교직원의 상위자격취득교육 교육내용의 경우 승급교육 1, 2급, 원장 사전 직무 교육 모두 영역 및 시간, 영역별 교과목 및 시간이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에 명시되어 있음. 이에 운영 기수 및 회기가 달라도 동일한 교과목을 편성·운영하고 있음.
- 정리하면 유치원 교원의 자격연수는 표준교육과정에 준하여 기본역량과 전문역량에 따른 핵심역량을 반영하여 교육내용을 연수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함. 그러나 보육 교직원의 상위자격취득교육은 연수기관이 달라도 교육내용은 동일함. 동일한 교육내용으로 자격연수를 진행하는 경우 교육의 질관리·보장은 가능하나 최신 교육 이슈나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보통합 후 통합자격 취득 연수 내용은 표준 사항은 통일하되 연수기관의 자율적 편성·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임.

□ 연수 기관 및 전달체계 비교 시사점

- 유치원 교원의 자격연수는 자격별 과정(원장·원감·수석교사·정교사(1급·2급) 으로 운영되며, 교육기관은 연수원(134개소: 중앙교육원(1), 시도교육연수원 (19), 교육행정연수원(1), 종합교육연수원(16), 대학부설교육연수원(80), 시 도유아교육진흥원(17))임. 직무연수 교육기관은 연수원(159개소: 자격 취득 연수 기관(134개소), 원격교육연수원(25개소))임. 단위기관(유치원)에서 이루 어지는 자체교육도 직무연수 이수시간으로 인정함. 비용은 자격연수는 전액 지원이며, 직무연수는 공립 유치원 교원의 경우 연수원 개설 교육 시 전액 지원되어 자부담은 없으며, 민간 인가기관 개설 교육의 경우 연간 25만원 내외이며, 교육청별 지원 금액은 상이함. 사립 유치원 교원의 경우 연수원 개설 교육 시 공립 유치원 교원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되어 자부담은 없으나 민간 인가기관 개설 교육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원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교육 청별 지원 금액 역시 상이함.

- 반면 보육 교직원의 연수 기관은 매년 시·도지사가 공고를 거쳐 위탁 운영하며, 위탁기관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기관으로 구분함. 집합교육 위탁기관은 대학, 보육교사교육원, 비영리법인 등 83개소이며, 온라인교육 위탁기관은 5개소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위탁교육기관 평가를 격년으로 실시함. 비용 지원의 경우 승급교육 및 일반 직무교육은 전액 지원이 원칙이나 지자체예산 상황에 따라 자부담비가 있음.
- 정리하면 유치원 교원의 자격연수 기관은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하나 민간 인가기관(직무교육만 운영)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없으나 보육 교직원의 승급교육 및 직무교육 기관은 위탁 운영 방식으로 선정되어 민간 인가기관에서도 운영이 가능함. 비용은 공립 유치원 교원의 경우 자격연수, 직무연수 모두 지원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립 유치원 교원의 경우 연수원 개설 교육 시전액 지원이 되나 민간 인가기관 개설 교육은 지원이 없음. 보육 교직원의 경우 연수 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가 많음. 이에 유보통합 후 통합자격 취득 연수기관은 연수 전문성이 보장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질 관리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연수 비용 지원은 자격연수는 전액 지원 원칙을 보장하고 직무연수는 자부담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유보통합 후 연수를 위한 행정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통합법 제정이 선행되어 야 할 것임. 유치원 교원과 보육 교직원의 연수 체계가 다름에 따라 연수신 청 및 자격발급, 연수이력관리 등 혼선이 예상되므로, 통합법 이전이라도 적 극행정을 통해 원활한 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맞추어가는 노력이 필요함.

2. 현직 교원의 영유아교사 자격부여 기준

- 1) 현직 교원의 영유아교사 자격부여 시 고려사항¹¹⁾
- □ 현재 유보통합실행계획(안)에 따르면 신규 영유아교사는 2027년 신입생 입학을 통해 2031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현직교사의 통합교사 자격부여는 실질적으로 통합법이 시행된 이후 가능한 상황임.
 - 이를 위해, (가칭)영유아학교 교원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그에 맞는 예비 교사, 초임 교사, 경력 교사, 원장(감)의 리더에게 필요한 전 문성과 직무의 단계적 접근에 따라,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의 교육과정 구성이 필요할 것임.
 - 유보통합을 통해 영유아교사의 전문성 상향평준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현재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보수교육 표준안에 국한 하지 않고 미래 교원으로서 역량을 갖추도록 영유아교원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한 공론의 장 마련이 필요할 것임.
- □ 본 연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동질성과 함께 이질성을 지니고 있어,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각 대상별 시나리오를 구성한 뒤,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자 하였음. 유아교육과 보육학계 전문가의 공통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학문적 배경에 따른 입장차이도 있었음. 이는향후 본격적인 유보통합 후 신규 자격 부여나 승급을 위한 자격 및 직무연수등에 참조가 될 것이라고 봄.
- □ 기본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경력기준은 양 기관에서의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한다. (경력산정 시 담임 교사 경력을 중심으로 산정한다)
 - 둘째, 자격전환교육도 양성교육과정과 같이 대면교육으로 한다.
 - 셋째, 자격전환교육을 수행하는 기관(특별교원양성교육기관 또는 대학원)에 대한 질적 평가를 통해 동일한 자격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¹¹⁾ 해당 절은 선행연구 및 전문가 집중 워크숍을 통해 구성하였음.

- 넷째, 영유아교원은 교원체계에 계열성있게 포함되어야 하므로, 교직과목 및 교 원에게 필요한 역량 등을 이수하도록 한다.
- 다섯째, 자격전환은 개인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며, 10년 유예기간을 통해 경로를 선택하도록 한다. 교육비용 중 국비와 자비부담을 병행한다.
- 여덟째, 그동안 적체되어 왔던 유치원 교원의 승급 자격연수의 대상을 확대해 보 육교사 자격 승급 소요기간과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한다.
- 일곱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56조(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의 3에 따라 교원 자격검정령 개정한다.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정하고, 1급, 수석, 원감, 원장 등의 직무역량을 정하고 자격취득 기준을 정한다.

3. 자격직급별 영유아교사 자격 통합 시나리오

가. 자격통합 로드맵

□ 자격통합은 1단계(2025년), 2단계(2026년), 3단계(2027년)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음. 1단계는 통합법 제정 이전이므로, 영유아교사 양성학과에 대한 사전 승인, 복수자격소지자에 대한 직무연수 과정 구성, 특별교원양성 교육기관(비학위과정)과 자격승급대학(학위과정)에 대한 선정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 Ⅳ-1-1〉 자격통합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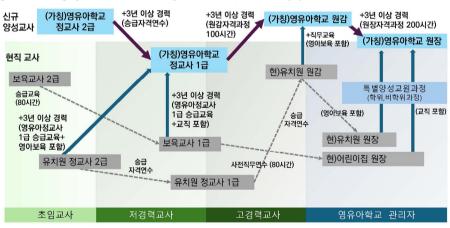
대	상	2025(하반기)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신 영유0	규 아교사	영유아교사 양성 학과 사전승인 심사	영유아교사 양성 학과 사전승인	3단계: 신규 영유아교사 양성시작		신규 영유아교 사2급 배출		
현직 교사 영유		1단계: 복수자격 소지자 신규자격 취득	2단계: 단일자격 소지자 - 특별교원양성과정 교육 시작					
아 교원 자격 취득	교사	유치원 교원 승급 자격연수 확대 및 예산확보	- 원	- 원감 승급교육 시 영아관련 내용포함				

대	상	2025(하반기)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원장	특별교원양성 교육기관 심사 및 선정 (비학위과정)	- 특별교원양성교육 대상 모집 및 통합자2				자격 부여	l 시작
	[학위 과정] 교사/ 원장	자격 승급 대학 원 승인 심사 및 선정			학			

- □ 1단계: 2025년 하반기에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자격 모두를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영유아교사 자격을 부여함. 단, 원칙적으로 통합법이 2026년부터 시행된 이후 법에 따른 조건을 이행한 경우 영유아교사 자격 부여가 가능한 상황임. 예외 규정을 두어 통합법 내에 2025년 실시한 자격과정을 이수한 자에대해 소급할 수 있음을 명시할 것을 제안함. 통합자격증은 유치원교사 자격 급수와 근속 경력을 고려해 부여함.
 - 또한 특별교원양성교육 실시를 위해 기관 심사 및 실사를 통해 임시교원양성 기관으로서의 요건을 심의함. 대상별 교육대상 기준과 직무(2급, 1급 정교사, 원감, 원장)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개발함.
 - 이와 동시에 현직 유치원 교원의 승급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자격연수 대상을 확대함.
 - 자격연수 및 승급교육이 실시될 대학원에 대한 승인절차도 2025년 기준마련을 실시함.
 - 별도로, 영유아학교 교원의 전문성에 대해 직급별 역량에 대한 논의를 통해 특별교원양성과정의 교육과정 구성 및 교육기관 심의 기준 마련. 이를 기초 로 2026년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용을 위한 예산 마련
- □ 2단계: 2026년에는 특별교원양성과정을 실시함. 교사 교육기관과 원장(감) 기관을 별도 승인해 충실히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대상별로, 교사의 자격전환을 먼저 실시한 후, 통합된 영유아교원 자격을 갖춘 교사가 영유아원감, 영유아원장으로 승급하는 체계에 맞추도록 함.

나. (가칭)영유아학교 교원자격 경로 및 기준(안)

- □ 영유아학교 교원 신규 영유아교사 2급 정교사 자격은 2031년에 첫 발급되며, 현재 유치원교사나 보육교사 자격취득자의 영유아교사 자격 취득은 통합법 이 후 실질적으로 가능함.
 - 영유아교사 신규자격과 함께 유예기한을 10년으로 두어 현 자격체계로도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5년에는 기반 조성을 갖추고, 복수자격을 지닌 현직교사에게 우선적으로 영유아교사 자격증을 수여할 것을 제안함.
 - 다양한 신규 자격취득 경로를 두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승급 및 직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할 것을 제안함.



[그림 Ⅳ-3-1] 영유아학교 교원 전문성 단계별 자격 취득 기준(안)

- □ 영유아학교 교원 신규 자격 중 영유아교사 2급 정교사 자격은 신규 양성교사로 제한하고, 현직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현재 지닌 자격증과 경력을 고려해 승급교육을 통해 영유아학교 정교사 1급을 취득할 것을 제안함.
- □ 영유아학교 원감 신규 자격은 영유아교사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의 경력을 갖추고 원감자격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하며, 현재 유치원 정교

사 1급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거나, 유치원 정교사 2급 취득 후 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중 유치원 원감 자격 대상자로서 신규 영유아학교 원감 자격과정을 거친 경우 취득하도록 제안함. 단, 영유아학교 원감은 영아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질적 역량이 필요하므로, 자격과정에 영아보육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여 이수할 것을 제안함.

- □ 영유아학교 원장 신규 자격은 영유아학교 원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원장자격과정을 이수한 자에 부여하며, 현재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 현장경력을 고려해 요건이 충족된 자에 대해 (가칭)영유아학교 관리자로서의 전문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함. 유치원 원장에게는 영아보육관련 교과목,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교직 관련 교과목을 개설해 학위과정이나 비학위과정을 통해 제공할 수 있음. 이상의 과정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제시하는 특별교원양성과정을 통해 제공될 수 있으나,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특별교원양성과정 운영 기관 및 학위과정 담당 대학에 대한 선정심사와 모니터링 과정이 후속될 필요가 있음.
- □ 이상의 안은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될 필요가 있으며, 현직 교사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칭)영유아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안함. 원감 자격이 보육교사 자격체계에는 없었던 것만큼 교사의 역량을 고려한 전문성 단계를 고려해 (가칭) 영유아학교 원감 자격 연수 시부터 영유아학교의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함.

V

영유아교원 통합자격 및 연수를 위한 법적 검토 및 법령 개정안

01 영유아교원 통합자격

02 영유아교원 연수

V. 영유아교원 통합자격 및 연수를 위한 법적 검토 및 법령 개정안

1. 영유아교원 통합자격

- □ 교육부가 2024년 6월 27일 발표한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 통합 실행 계획(안)」에서 제시한 시범사업에서 통합기관의 명칭은 (가칭)영유 아학교로 진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통합한 법률의 명칭 은 (가칭)영유아교육법으로 규정함.
 - 여기서는 유아교육법 중 교원자격 및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가칭)영유아교육법 의 관련 규정으로 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의 기존 규정은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함.

가. 교원 자격

- □ 영유아정교사의 승급 경로는 현 유치원교사 자격체계와 동일하게 '2급→1급→ 원감→원장'으로 구성함.
- □ 앞에서 살펴본 영유아교원 통합자격 및 연수를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보면 유치원 준교사 및 보육교사 3급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함.
- □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 3급을 폐지하고 (가칭)영유아교육법의 영유아교사는 정교사(1급·2급)로 구성함.

〈표 V-1-1〉 교원자격 관련 유아교육법 규정 개정안

현 행(유아교육법)	개 정 안((가칭)영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 ① 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가칭)영유아교육법 제00조(교원의 자격) ① 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 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 람이어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 다.	(가칭)영유아교육법 제00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 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한다.	(가칭)영유아교육법 제00조(교원의 자격)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 유아교육법 [별표2] 교사 자격기준(제22조제3항 관련) 개정안은 「유아교육법」을 「(가칭)영유아교육법」으로, 「유치원」을 「(가칭)영유아학교」로, 「유치원 교육 과정」을 「영유아교육전공 교육과정」으로, 「보육과 교직학점」을 「영유아교육전 공 교직학점」으로 개정하고, 유치원 준교사는 삭제함.

〈표 V-1-2〉 유아교육법 [별표2] 교사 자격기준(제22조제3항 관련) 개정안

구분	내용	개 정 안((가칭)영유아교육법)
정교사 (1급)	3년 이상의 교육경력 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가칭)영유아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 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 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유아교육전

구분	내용	개 정 안((가칭)영유아교육법)
	교육경력이 있는 자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정교사 (2급)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 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 함한다)졸업 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 을 받은 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학교와「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졸업 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영유아교육전공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유아교육전공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준교사	1.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삭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 □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제21조(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 등)·제23조(교장·원장의 자격인정)에서 「유아교육법」을 「(가칭)영유아교육법」으로 개정함.
-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에서 "「유아교육법」별 표 2의 준교사"를 삭제함.

〈표 V-1-3〉 교원자격검정령

구분	내용	개정안
교원자격검정 령 제18조(무 시험검정의 대 상)	및「초·중등교육법」별표 1에 의한 교 장·교감의 자격검정 2.「유아교육법」제22조제3항 및「초·중등 교육법」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 의 자격검정	수석교사의 자격검정 3. (가칭)「영유아교육법」 별표 2 및 「초·중 등교육법」 별표 2에 의한 교사의 자격검

① 제18조제1호 및 제3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별표 1・별표 2 또는 「초 · 중등교육법」병표 1・별표 2 또는 「초 · 중등교육법」병표 1・별표 2 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②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교육경력, 수석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및 연수 이수 결과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제10조조제3항의 교육경력, 수석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및 연수 이수 결과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대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인 (가칭)「영유아교육법」 제20조제이항 및 초 · 중등 전에 한다. 시합 검정의 방 1. 교육대화 또는 보험대화를 졸업한 사람법 및 합격기 2. 교육대화 또 또는 교육부강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화원 또는 대화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4. 법률 제7068호 초 · 중등교육법 존개정법 등 학수 교육대화원 또는 대화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4. 법률 제7068호 초 · 중등교육법 존개정법 등 학수 교육부강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화원 또는 대화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5. '유이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초 · 중등 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초 · 중등 교육법 및 별표 2의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6.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6.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6.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6. 교사양성투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6. 교사양성투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7. '교육학생 및 발표 1 · 별표 2 또는 「초 · 중등 교육법 및 별표 1 · 별표 2 또는 「조 · 중등 교육법 및 별표 1 · 별표 2 또는 「교육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 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인수로 한다. ② 제18조절에 따라 무사험검정으로 상급자격 전용 위한 자교육 또는 강습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 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인수로 한다. ③ 대원자격검정 경 제23조(교육법) 별표 1 · 불표 2 또는 경 · 중등 교육법 및 별표 1 · 별표 2 또는 경 · 중등 교육법 및 별표 1 · 별표 2 또는 경 · 중등 교육법 및 별표 1 · 별표 2 및 자격기준에 따른 자교육 또는 강습은 「교원 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 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인수로 한다. ③ (우) (구칭) 영유아교육법 및 별표 1 · 물 2 또는 경 · 중등 교육법 및 별표 1 · 별표 2 또는 경 · 중등 교육법 및 별표 1 · 별표 2 또는 경 · 중등 교육법 및 별표 1 · 별표 2 또는 경 · 중등 교육법 및 별표 1 · 별표 2 또는 경 · 중등 교육법 및 별표 1 · 별표 2 또는 경 · 중등 교육법 및 별표 1 · 별표 2 또는 경 · 중등 교육법 및 별표 1 · 결 · 중등 교육법 및 표 1 · 결 · 조등 교육법 및 표 1 · 절 · 교장관 제2호 및 목 · 학교의 교장관 제2호 및 원 · 자격인정기준은 별표 2의 교장관 제2호 및 일 · 공학교의 교장관 제2호 및 원 · 자격인정기준은 별표 2의 교장관 제3호에 따른 자격인장기준은 별표 2의 교장관 제3호에 따른 자격인장기준은 별표 2의 교장관 제3호에 따른 자격인장기준은 별표 2의 교장관 제3호에 따른 자격인정기준은 할 단 · 일 · 교장관 제3호에 따른 자격인정기준은 별표 2의 교장관 제3호에 따른 자격인정기준은 발표 2의 교장관 제3호에 따른 자격인정기준은 발표 2	구분	내용	개정안
교원자격검정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유아 교육법」 별표 1 · 별표 2 또는 「초 · 중등 교육법」 별표 1 · 별표 2 또는 「초 · 중등 교육법」 별표 1 · 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른 재교육 또는 강습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연수로 한다. ① 「유아교육법」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은 병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와 「초 · 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와 「초 · 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와 「초 · 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와 「초 · 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와 「초 · 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와 「초 · 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와 「초 · 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와 「초 · 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와 「초 · 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와 「초 · 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와 「초 · 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와 「초 · 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와 「초 · 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와 「초 · 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와 「초 · 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와 「초 · 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와 「초 · 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와 「최 · 장리와 자격인정기준으로 별표 2의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으로 함단 및 원장 자격인정기전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으로 함단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으로 함단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으로 함단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으로 함단 및 원장 자격인정기주 및 원장 전 관계 및 원장 자격인정기주 및 원장 자격인정기주 및 원장 전 관계 및 원장 자격인정기주 및 원장 전 관계 및 원장 자격인정기주 및 원장 관계 및 원장 전 관계 및 원장 전 관계 및 원장 관계 및	령 제19조(무 시험검정의 방 법 및 합격기	「유아교육법」별표 1・별표 2 또는「초·중등교육법」별표 1・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② 제18조제2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초·중등교육법」제21조제3항의 교육경력, 수석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및 연수 이수결과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4 레종조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5. 「유아교육법」별표 2의 준교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1) 세 18 조세 1호 및 세 3호의 부시험감정은 (가칭) 「영유아교육법」 별표 1 · 별표 2 또는 「초 · 중등교육법」 별표 1 · 별표 2 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2) 제 18 조제 2호의 무시험검정은 (가칭) 「영유아교육법」 제 20 조제 3항의 교육경력, 수석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및 연수이수 결과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3)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 18 조제 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제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4. 법률 제 7068호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 3조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초 · 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또는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교원자격검정	령 제21조(상 급자격증 취득 을 위한 재교	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유아 교육법」 별표 1・별표 2 또는 「초・중등 교육법」 별표 1・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른 재교육 또는 강습은 「교원 등의 연 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	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가 칭)「영유아교육법」 별표 1 · 별표 2 또는 「초 · 중등교육법」 별표 1 · 별표 2의 자 격기준에 따른 재교육 또는 강습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2
	령 제23조(교 장 · 원장의 자	준란 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 의 교장란 제2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에 따른 자격인정기준은 별표 2의	자격기준란 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초 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에 따른 자격인정기준은 별 표 2의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으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교원자격검정령[시행 2024. 10. 2.] [대통령령 제34925호, 2024. 10. 2., 일부개정].

나. 원장·원감 자격

- □ 앞에서 살펴본 영유아교원 통합자격 및 연수를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보면 원감 자격은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춘 경우, 원장 자격은 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춘 경우에 부여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함.
 -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 [별표1] 원장·원감 자격기준(제22조제1항 관련)를 (가 칭)영유아교육법 [별표1]로 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의 원장 자격 관련 규정은 폐지함.
 - 앞에서 살펴본 영유아교원 통합자격 및 연수를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보면 유치워 및 어린이집 경력은 상호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함.
- □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 (구)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원장·원감, (구)영 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의 경력연수는 모두 교육경력으로 인 정하는 것으로 규정함.

〈표 V-1-4〉 유아교육법 [별표1] 원장·원감 자격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개정안

구분	내용	개 정 안((가칭)영유아교육법 [별표1]))
원장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 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부장관의 인정 을 받은 자 	1. (가칭)영유아학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부장관의 인정 을 받은 자
원감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1. (가칭)영유아학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가칭)영유아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비고	1. 원장·원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장·교감, 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 구관·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 연수로 볼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다. 교육경력

- 1)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경력 상호 인정
- □ 영유아보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는 유치원 교사·보육교사 경력 상호 인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유치원 교사 자격 보유자에 대해 서는 어린이집 근무경력을 유치워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함.
 -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수업과정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자격 보유자에 대해서 유치워 근무경력을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함.
 - 교원자격검정령에서는 유치원 교사 자격 보유자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 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함.

〈표 V-1-5〉 유치원 교사·보육교사 경력 상호 인정

구분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	①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자 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어린이집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②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 치원을 말한다)에 근무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 여는 유치원에서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따른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 의 범위)	①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2.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80호, 2024. 3. 19., 일부개정]과 교원자격검정령[시행 2024. 10. 2.] [대통령령 제34925호, 2024. 10. 2., 일부개정].

2) 교육경력 인정 범위

□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치원 교사·보육교사 경력 상호 인정을 상호 인정하고 있고, 영유아교원 통합자격 및 연수를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에서도 유치원 교사·보육교사 경력을 상호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함.

□ 이에 따라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서 「유아교육법」을 「(가칭)영유아교육법」으로, 「유치원」을 「(가칭)영유아학교」로 개정하고,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경력은, 「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과 「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함.

〈표 V-1-6〉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경력 범위 개정안

구분	내용	개정안
교원자격검정 령 제8조(교육 경력의 범위)	이성의 인근 학교를 문화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포함한다)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공무원임 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 령」 제19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 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의 경력 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2.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	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가칭)'영유아교육법」제00조제0호,에 따른 (가칭)'영유아학교, 「구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교육공무원법」제22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포함한다)으로서 전임으로근무한 경력. 다만, 「공무원임용령」제19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제19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시간을 근무한 교육의 경력은 근무시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교원자격검정령[시행 2024. 10. 2.] [대통령령 제34925호, 2024. 10. 2., 일부개정].

- □ 앞에서 살펴본 영유아교원 통합자격 및 연수를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 자격 통합 시 학력 사항을 경력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함.
- □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별표1]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대학원 학위 취득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함.

〈표 V-1-7〉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1]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화산율표 적용 기준

경력 구분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대학원에서 학위취득 경 력(10할)	- 대학원(법령에 의해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수업연한으로,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인정. 다만, 박사학위는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경력기간은 학기단위로 계산함. (1학기: 3.1.~8.31./2학기: 9. 1.~2.28)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교육공무원 호봉확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시행 2024. 3. 22.] [교육부예규 제88호. 2024. 3. 22.. 일부개정].

2. 영유아교원 연수

- □ 추후 자격요건이 변경되면 연수관련 규정이 후속되어 변경되어야 하므로 연수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음.
- □ 영유아교원 연수 총시수는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 준교육과정」[별표1] 자격별 연수 시수 및 영역별 배정비율(제2조 관련)을 적용하여 총시수는 정교사·수석교사·원감은 90~135시간으로 규정하고, 원장은 180~270시간으로 규정함.

〈표 V-2-1〉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별표1] 자격별 연수 시수 및 영역별 배정비율(제2조 관련)

총시수	701 7173	총시수의 영역별 배정 비율	
☆ ^ ⊤	교원 자격	기본역량	전문역량
90~135시간	정교사·수석교사· 교감·원감	30~50%	50~70%
180~270시간	교장·원장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시행 2019. 4. 1.] [교육부고시 제2019-179호, 2019. 4. 1., 전부개정].

□ 앞에서 살펴본 영유아교원 통합자격 및 연수를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보면 워감 자격 비용은 일부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함.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8조는 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에 필요한 실비(實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연수자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연수 자의 자부담을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연수의 지연을 방지하 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은 연수의 종류를 직무연수와 자격연 수로 구분함.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은 별 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하고, 직무연수의 기간은 해당 연수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함.

〈표 V-2-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구분	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유아교육법」제22조,「초·중등교육법」제21조,「고등교육법」 제46조 및「교육공무원법」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 관의 설치·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수 대상)	① 연수원의 연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연수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2. 교육행정연수원: 제1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에 근무하는 원장·원감·교장·교감 및 「교원자격검정령」제23조에 따라 교장·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3. 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 ②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은 그 직위와 직무 내용에 따라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③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 대상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연수원에서 연수할 사람을 선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	① 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로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연수 가. 제18조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 항상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연수 나.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복직하려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 시하는 직무연수 다. 그 밖에 교육의 이론 · 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

구분	내용
	한 직무연수 2. 자격연수: 「유아교육법」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초·중등교육법」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별 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
제7조(연수기간)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하고, 직무연 수의 기간은 해당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8조(연수비의 지급 등)	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에 필요한 실비(實費)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급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59호, 2021. 1. 5., 일부개정].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¹²⁾ [별표 1]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제 7조 관련)은 정교사(1급), 정교사(2급), 수석교사, 원감의 자격연수 기간을 15일 이상, 이수 시간을 9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원장의 자격연수 기간을 25일 이상, 이수시간을 180시간 이상으로 규정함.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은 초중등교사를 포함한 교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영유아교사가 교원으로 규정될 경우 영유아교사에게도 이기준이 적용될 것임.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¹³⁾ 제4조1항은 직무연수 대상자는 관할 교육감이 지명하되, 교육감은 연수과정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또는 공사립유치원장으로 하여금 연수 대상자를 지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2항은 정교사(1급), 정교사(2급), 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는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교육경 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관할 교육장 또는 원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교육감이 지명한다고 규정함.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3항제1호는 직무연수의 연수 대

¹²⁾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59호, 2021. 1. 5., 일부개정].

¹³⁾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22. 4. 27.]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타법개정]

상자는 학력, 경력, 연수과정의 내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지명할 것, 제2호는 정교사(1급)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정교사(2급)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지명할 것, 제3호는 정교사(2급)과정의 연수 대상 자: 정교사(2급)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준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지명할 것을 규정함.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은 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하는 경우 국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 등에 관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지명한다고 규정함.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8항은 원장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국공립학교등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장 · 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지명한다고 규정함.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¹⁴⁾ 제4조의2제1항은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는 해당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소속된 유치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공개전형을 실시하여 선발한다고 규정함.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은 유치원장은 이러한 추천을 하려면 해당 유치원의 수석교사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함.
- 앞의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규정은 보육교직원의 상급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는 원장과 보육교사 모두 현직 교원 신청자들 중에서 신청순 및 경력 순으로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것과 차이가 있음.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은 유치원 교원 뿐 아니라 초중등교원에게도 공 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통합자격이 도입된 이후 연수 대상자 선정에 교원의 신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특례 규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¹⁴⁾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22. 4. 27.]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타법개정]

- □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15)의 [별표2] 정 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제3조 관련), [별표3] 수석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제4조 관련), [별표4] 교감·원감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제5조 관련), [별표 5] 교장·원장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제6조 관련)은 앞의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치원 교원의 자격연수 교육내용이 영역, 핵심역량, 정의 및 역량요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제(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교과목 편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규정은 보육교직원의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의 교과목이 보육사업안내 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음.
- 앞의 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유보통합 이후 통합자격의 연수는 교과목 편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연수기관의 자율적 편성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¹⁶⁾ 제11조의2제1항은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은 보육교직원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은 보육교사 승급교육의 교육시간은 80 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함.
- □ 유치원 교직원의 경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¹⁷⁾ [별표 1]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제7조 관련)은 정교사(1급), 정교사(2급), 수석교사, 원 감의 자격연수 이수 시간을 9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원장의 자격연수 이수시간을 180시간 이상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어린이집 원장의 사전직

¹⁵⁾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시행 2019. 4. 1.] [교육부고시 제2019-179호, 2019. 4. 1., 전부개정]

¹⁶⁾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24. 10. 22.] [교육부령 제341호, 2024. 10. 22., 일부개정]

¹⁷⁾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59호, 2021. 1. 5., 일부개정]

무교육 및 보육교사 승급교육의 교육시간은 모두 80시간 이상으로 차이가 있음.

- □ 통합자격 도입 후 자격연수 시간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별표 1]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제7조 관련)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18) [별표 7] 보수교육 실시기준(제20조제4항 관련)은 직무교육(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승급교육의 구분 및 대상자를 규정함.
- 직무교육의 경우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치원 교원의 경우 직무연수 이수가 의무가 아닌 자율인 것과 차이가 있음.
-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b)에는 교육구분별 보수교육 대상자를 규정하였는데, 장기 미종사자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 사전 직무교육의 경우 대상자를 「이수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치원 교원의 경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과 차이가 있음.
-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b)에는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원장 일반직 무교육, 장기 미종사자 일반직무교육, 보육교사 승급교육, 어린이집 원장 사 전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는데, 앞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교과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유치원 교원의 자 격연수 내용을 규정하는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 육과정」[시행 2019. 4. 1.] [교육부고시 제2019-179호, 2019. 4. 1., 전부 개정]에서 교과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과 차이가 있음.
- □ 이상과 같이 유치원 교원과 보육교직원 간의 연수 운영 기준 및 체계가 다르므로, 향후 직무연수 및 자율연수, 직무교육 등에 대한 용어통일과 함께, 영유아학교교원의 역량과 전문성 단계를 고려한 연수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며, 연수운영기관에 대한 확대 및 인증 방법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¹⁸⁾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24. 10. 22.] [교육부령 제341호, 2024. 10. 22., 일부개정]

•• •• 참고문헌

- 강미영, 조혜진(2017).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간관리자의 직무역량 교육요구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 81-99.
- 강신영, 문혁준(2018). 보육교사가 인식한 주임의 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임파워먼 트, 직무만족도,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7(4)**, 95-115.
- 강현경, 조형숙(2011). 유아의 문제행동 지도 과정에서의 원장의 어려움 및 바람 직한 역할모색. **유아교육학논집**, **15(6)**, 353-376.
- 고영미, 이미정, 신혜원, 임수진, 김유미, 하지영(2024a). 주제발표 3.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과정(안). 영유아 성장과 발달을 위한 미래 영유아교사자격과 양성 체제 개편 권역별 토론회(영남·강원권) 자료집, 2024. 11. 12. 주최: 교육부, 주관: 육아정책연구소, 한국교원대학교.
- 고영미, 이미정, 신혜원, 임수진, 김유미, 하지영(2024b). 발표 1. 영유아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편 방안 연구. 영유아의 평등한 교육·보육 지원을 위한 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 의견수렴 공청회 자료집(pp.15~41), 2024. 12. 27. 주최: 교육부, 주관: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교원대학교, 아이행복연구자문단.
- 교육부(2024. 6. 27.).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교육부(2024). 202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교육부.
- 김길숙(2024). 유보통합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자격 통합 방안 연구: 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17), 181-191.
- 김남연, 김현주, 안혜준(2008). 초임유치원 원감 되어가기: 초임 원감의 자전적 문화기술지. 유아교육학논집, 12(3), 195-217.
- 김대욱(2023). 유보통합을 위한 0~5세 영유아교사 자격과 영유아교육과 중심 양성체제, 그리고 기존 교원의 영유아교사 자격 부여 방안. 열린유아교육연구, 28(3), 1-27.
- 김동례(2017). 어린이집원장의 건강과 소진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 심교과교육연구, 17(19), 361-379.
- 김명순, 이소희(2016). **어린이집 중간관리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김시영(2024). 유치원 교사가 인식하는 리더로서의 원장 역할: 기대와 경험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29(2)**, 331-359.
- 김영주, 김대욱(2015). 코칭 리더십 활동을 통해 본 어린이집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변화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9(5), 501-524.
- 김정희(2011). 유아교육기관장의 직무수행 실태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1).** 77-98.
- 김정희, 조숙영(2023).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수행효능감, 직무열의, 창의적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4(1),** 2049-2060.
- 김종미, 부성숙(2021).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역량이 보육교사의 직무수행 효능감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30(3)**, 89-107.
- 류미향, 박선미, 안혜령(2023). 뉴질랜드 유보통합 추진 과정과 영유아교육 체제 탐구. **유아교육연구**, 43(2), 277-323.
- 모아라, 김소현(2017). 어린이집 원장이 기대하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탐색. 한국가족복지학, 22(1), 169-184.
- 박양인, 박은혜(2000). 유치원 원감의 역할지각과 역할수행에 대한 연구. **교육과 학연구. 31(1).** 21-36.
- 박찬옥, 이춘복(2010). 사립유치원 중간관리자의 직무인식과 직무수행분석. 유아 교육학논집, 14(4), 91-117.
- 보건복지부(2024a). 2023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24b).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 서문희, 이미화, 구미진(2006).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실태 분석.** 연구보고 2006-05. 여성가족부
- 손영희, 백지혜(2021). **사립유치원 원감의 역할 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한국 열린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305-311.
- 송경희, 김태연(2023). 유보통합에 대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자격의 현황 및 과제. 한국영유아보육학, 139, 25-45, 10.37918/kce.2023.3.139.25
- 심현정, 김현주, 김남연(2009). 어린이집 주임교사의 역할 수행 및 어려움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3(5)**, 5-26.
- 오교선, 이병환(2020).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열린교육연구, 28(1),** 323-342.

- 유해미(2011).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의 법적 지위와 책무의 재정립. **육아정책 포럼**, **27**, 16-24.
- 이명순, 이명옥(2010). 보육시설장의 역할 수행 및 요구 조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1), 207-225.
- 이윤경, 임충기(2005). 유치원 원장의 역할수행에 대한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 (교) 장과 교사의 지각 및 기대의 차이와 유치원의 조직효과성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5(3), 177-201.
- 이춘복, 박찬옥(2011). 사립 유치원 중간관리자의 정서지능과 직무수행. **유아교육학논집, 15(2),** 189-217.
- 임난주(2015).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원장의 역할.**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논 문집, 597-598.
- 임예지(2022). 어느 사립 유치원 원감의 역할 경험 이야기: 내러티브 탐구. 교육 과학연구, 53(4), 37-58.
- 임예지, 엄정애(2022). 사립 유치원 원감의 역할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육아지원 연구**, **17(3)**, 39-68.
- 임은정(2009). 유아교육기관장 역할역량 평가 척도 개발. **흘리스틱융합교육연구**, **13(3).** 87-108.
- 정은경(2009). 세 유치원 원감의 교직 역할 수행에 관한 이야기. **유아교육연구**, **29(5)**, 141-162.
- 정효정(2020). 어린이집 원장의 일반직무 보수교육 운영체계의 논점과 제언. **한** 국영유아보육학, 124, 169-202.
- 조혜진(2012). 유아교육기관장의 직무역량 분석 연구. **유아교육연구**, **32(5)**, 471-494.
- 조혜진, 김수연(2013). 어린이집 신규 원장의 직무역량 교육요구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8(2)**, 199-220.
-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2024). 영유아통합기관 원장(감) 자격과정 구성 방안.
- 한국교육개발원(2024). 2023년 교육통계연보.
- 한미경, 염지숙(2009). 어린이집 원장의 교직경험 이야기. **열린교육연구, 17(3),** 169-191.

- Decker, C.A., & Decker, J. R.(2001). Planning and administering early childhood programs. NJ: Prentice-Hall.
- Meade, A., & Podmore, V. (2010). Caring and learning together: A case study of New Zealand. UNESCO.

【참고 사이트】

- 서울특별시교육청(2024). 2024 서울 유아교육 계획. https://buseo.sen.go.kr/buseo/bu11/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Sn=1259 에서 20 24. 11. 10. 인출
-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2024). 2024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필수/의무 교육 안내. file:///C:/Users/KICCE/Downloads/2024%EB%85%84+%E B%B3%B4%EC%9C%A1%EA%B5%90%EC%A7%81%EC%9B%90+%E D%95%84%EC%88%98%EC%9D%98%EB%AC%B4+%EA%B5%90%E C%9C%A1%EC%95%88%EB%82%B4%20(1).pdf 에서 2024. 11. 10.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22).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 시도 2024. 5월 기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 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 do%3Fconn_path%3DI2%26tblId%3DDT_1BPA001%26orgId%3D10 1%26 에서 2024. 10. 15. 인출
- 한국보육진흥원(2023).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https://chrd.childcare.go.kr 에서 2024. 9. 11. 인출.

【내부 자료】

경기도교육연수원(2023).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내부자료 경기도교육연수원(2024a). 2024 원감자격연수 안내. 내부자료 경기도교육연수원(2024b). 2024 원장자격연수 안내. 내부자료 교육부(2024). 유치원 교원 연수 및 어린이집 보수교육 운영 현황 비교. 내부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24), 보육 DW 시스템 통계. 내부자료.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2024). 2024 수석교사연수 안내. 내부자료

【참고 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66호, 2024. 10. 22.,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4. 8. 21.] [대통령령 제34227호, 2024. 2. 20., 일부개정]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24. 10. 2.] [대통령령 제34925호, 2024. 10. 2., 일부 개정]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59호, 2021. 1. 5., 일부개정]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 4. 27.]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타법개정]
-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시행 2019. 4. 1.] [교육부고시 제2019-179호, 2019. 4. 1., 전부개정]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시행 2024. 3. 1.] [대통령령 제33528호, 2023. 6. 13.,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시행 2024. 3. 22.] [교육부예규 제88호, 2024. 3. 22., 일부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80호, 2024. 3. 19., 일부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786호, 2024. 8. 6., 일부개정]
-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8. 21.] [대통령령 제34229호, 2024. 2. 20., 일부개정]
- 정부조직법 [법률 제20289호]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289호, 2024. 2. 13.. 타법개정]



부록 1. 원감 직무 선행연구 분석표

	1	2	က	4	2	9	7
원감 선행연구	원장보좌· 대행 역할	지도적 역할	관리자 역할 (원무관리)	조직관리 (인화/관계적)	대외적 업무 (부모,지역사 회 관계 포함)	比等・ 日 20日 (日 9 9 1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윤
 모이라, 김소현(2017). 어린이집 원장이 기대하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탐 색. 한국가족복지학, 22(1), 169-184. 		0		0			원장과 교사의 대변자/중재 자 역할
2) 임예지, 엄청애(2022). 사립 유치원 원 감의 역할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육아 지원연구, 17(3), 39-68.		0	0	0	0	0	
3) 임예지(2022). 어느 사립 유치원 원감 의 역할 경험 이야기: 내러티브 탐구. 교육과학연구, 53(4), 37-58.		0	0	0	0	0	
4) 박양인, 박은혜(2000). 유치원 원감의 역할지각과 역할수행에 대한 연구. 교육 과학연구, 31(1), 21-36.	0	0	0	0	0	0	
5) 01촌복, 박찬옥(2011). 사립 유치원 중 간관리자의 정서지능과 직무수행. 유아 교육학논집, 15(2), 189-217.		0	0	0	0	0	

	1	2	က	4	2	9	7
원감 선행연구	원장보좌· 당행 역할	지도적 역할	관리자 역할 (원무관리)	조직관리 (인화/관계적)	대외적 업무 (부모,지역사 회 관계 포함)	보용・	冲
6) 박찬옥, 이춘복(2010). 사립유치원 중간 관리자의 직무인식과 직무수행 분석. 유 아교육학논집,14(4), 91-117.		0	0	0	0	0	경영자
7) 정은경(2009). 세 유치원 원감의 교직 역할 수행에 관한 이야기. 유아교육연 구, 29(5), 141-162.		0	0	0	0	0	
8) 김남연, 김현주, 안혜준(2008). 초임유 치원 원감 되어가기: 초임 원감의 자전 적 문화기술지. 유아교육학논집, 12(3), 195-217.		0	0	0	0	0	
9) 강미영, 조혜진(2017). 유치원과 어린이 집 중간관리자의 직무역량 교육요구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 81-99.			0	0	0	0	정보화 소양 개발
10) 심현정, 김현주, 김남연(2009). 어린이 집 주임교사의 역할 수행 및 어려움에 관한 연구. 유이교육학논집, 13(5), 5-26.		0	0	0	0	0	
11) 김명순, 이소희(2016). 어린이집 중간 관리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서 울시 여성가족재단.	0		0	0			
12) 손영희, 백지혜(2021). 사림유치원 원 감의 역할 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 집, 305~311.	0	0	0	0	0	0	

부록 2. 원장 지무 선행연구 분석표

	1	2	က	4	2	9	7	8
원장 선행연구	시설관리· 영유아관리	경영 (행정·재무 인사·운영)	조직운영 관리(조직관리, 전문성 신장 등)	교육기획 및 실행, 평가	지역사회 협력(연계)	교육 (부모· 교직원 등)	부모광	기타
1) 김정희(2011). 유아교육기관장의 직무 수행 실태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 학화지, 18(1), 77-98.	0	0	0	0			0	
2) 유해미(2011).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 의 법적 지위와 책무의 재정립. 육아정 책포렴, 27, 16-24.	0	0	0					
3) 김정희, 조숙영(2023).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수행효능감, 직무열의, 창의 적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4(1), 2049-2060.	0	0		0	0		0	
4) 김동례(2017). 어린이집원장의 건강과 소진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7(19), 361-379.	0	0	0	0	0		0	
5) 정효정(2020). 어린이집 원장의 일반적 무 보수교육 운영체계의 논점과 제언. 한국영유01보육학, 124, 169-202.	0	0			0	0	0	
6) 김종미, 부성숙(2021). 어린이집 원장 의 직무역량이 보육교사의 직무수행 효 능감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아동 교육, 30(3), 89-107.	0	0		0				
7) 조혜진(2012). 유아교육기관장의 직무 역량 분석 연구. 유아교육연구, 32(5), 471-494.	0	0	0	0	0	0	0	

	-	2	က	4	വ	9	7	∞
원장 선행연구	시설관리· 영유아관리	경영 (행정·재무 인사·운영)	조직운영 관리(조직관리, 전문성 신장 등)	교육기획 및 실행, 평가	지역사회 협력(연계)	교육 (부모· 교작원 등)	부모관리	7時
8) 임난주(2015).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원장의 역할.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 회논문집, 597~598.			0	0		비 수 아 아 아 애 애		SNS H H OH OH OH III III
9) 김사영(2024). 유치원 교사가 인식하는 리더로서의 원장 역할: 기대와 경험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29(2), 331-359.		O 비전 제시	0					
10) 오교선, 이병환(2020). 유치원과 어린 이집 원장의 직무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열린교육연구, 28(1), 323-342.	0		0					
12) 이윤경, 임충기(2005). 유치원 원장의 역할수행에 대한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 (교) 장과 교사의 지각 및 기대의 차이와 유치원의 조직효과성과의 관 계. 유아교육연구, 25(3), 177-201.	0	0 시설 및 작무관리	0	0 교육과정 및 학습지도	0 지역사회 및 대외관계 유지 및 평가			
14) 이명순, 이명옥(2010). 보육시설장의 역할 수행 및 요구 조사. 미래유아교 육학회지, 17(1), 207-225.	0		0	0	0		0	
15) 조혜진, 김수연(2013). 어린이집 신규 원장의 직무역량 교육요구에 따른 직 무교육과정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8(2), 199-220.	0	0 비전 관리	0	0	0			

	1	2	က	4	2	9	7	8
원장 선행연구	시설관리· 영유아관리	경영 (행정·재무 인사·운영)	조직운영 관리(조직관리, 전문성 신장 등)	교육기획 및 실행, 평가	지역사회 협력(연계)	교육 (부모· 교직원 등)	는 다 다	기타
17) 서문희, 이미화, 구미진(2006). 보육 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실태 분 석. 연구보고 2006-05. 여성가족부	0	0		0	0		0	
18) 강현경, 조형숙(2011). 유이의 문제행 동 지도 과정에서의 원장의 어려움 및 바람직한 역할모색. 유야교육학논집, 15(6), 353~376.	0		0			0		
19) 한미경, 염지숙(2009). 어린이집 원장 의 교직경험 이야기. 열린교육연구, 17(3), 169-191.			0	0	0			
20) 임은정(2009). 유아교육기관장 역할역 량 평가 척도 개발. 흘리스틱융합교육 연구, 13(3), 87-108.	0		0	0	0		0	
21) 한국보육진흥원(2023). 보육교직원 통 합정보. https://chrd.childcare.go.kr에서 2024년 9월 11일 인출	0	0	0	0	0	0		
22) Decker, C.A., & Decker, J. R.(2001). Planning and administering early childhood programs. NJ: Prentice-Hall.	0	0	0	0	0			

부록 3. 전문가 자문 설문지

현재 유보통합 실행계획('24. 6) 발표에 따르면, 신규 영유아교사 양성에 관련된 방안과 함께, 기존 유자격 교사 즉, 현직교원들의 영유아교사 자격 취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시나리오 형식의 델파이조사표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정해진 안은 없으며,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질문을 구성하였습니다.

별도로 제시된 기준은 현재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의 교원 및 교사 자격 기준. 유사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 등을 기초로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전문가님들의 동의여부와 그 이유, 대체 및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가감없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전문가 및 현장교원들의 워크숍 내용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확정된 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조사가 아니며, 의견을 구하는 데이터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다시한 번 기탄없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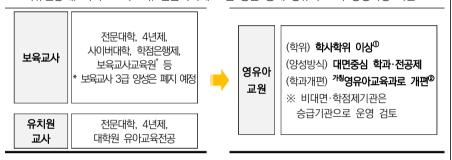
2024. 10. 육아정책연구소 ※ 현재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제시된 교원 승급체계와 현직교원 통합 자격취득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 통합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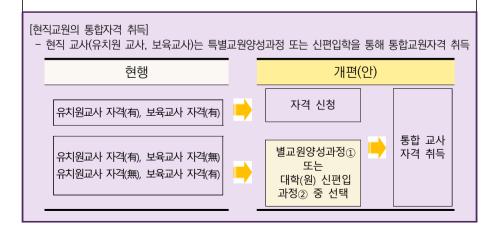
[승급체계] 영유아 정교사 승급 경로는 '2급→1급→원감→원장'으로 개편

[신규교사 양성]

- 영유아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출수 있도록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 학과/ 전공제(영유아교육 전공)로 신규교사 양성
- ※ 자유전공제, 마이크로디그리, 실습학기제 도입 등을 통해 영유아 교사 양성과정 혁신



- ① **전문대학**에서도 **영유아교사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50조의3) **개정**
- ② 유아교육과와 아동보육 관련학과는 ^{가칭}영유아교육과로 개편을 원칙, 비사범 학과는 명칭 변경 없이 **'영유아교육 전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양성정원은 별도 심사



- ① 대상자격·운영과목 및 내용·학점은 '24년 정책연구 통해 결정, 개인별 기수강 과목(학점)은 대학별로 인정하되 수요를 고려하여 10년간 운영 검토
- ② 야간:주말 과정 개설, 해당 기관에 정원 외 특별 정원 허용 및 영유아교육 학위 수여
- (원장) 어린이집 원장 자격소지자 대상 자격 연수 과정 운영
- ※ 유치원 원장 자격자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부칙)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자격 旣 인정
- 1. 현재 제시된 현직교원 통합자격 취득(안)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 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동의하는 편이다 ③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1. 위에서 응답하신 결정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다음 질문은 1번 질문에 대한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 2. 현직교원 통합자격 취득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예: 유보통합기관 교원의 전문역량 제고, 교육관리 및 이력관 리 일원화, 처우개선 동반 등)

L			

- 3. 본 설문조사에서 논의하는 내용들은 사립유치원, 국공립 등 어린이 집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공립교원들은 별도의 국가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 및 교육청 TO에 따라 배치되는 체계이므로 전환 논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동의하는 편이다 ③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4. 본 설문조사에서 논의하는 내용들은 보육교사 1급 자격취득 후 1년 경력을 통해 취득 가능한 가정어린이집 원장 소지자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단, 현재 40인 이상의 일반어 린이집 원장 자격 또는 유치원 원감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근 무처가 가정어린이집의 원장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동의하는 편이다 ③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다음 설문은 교사, 원감, 원장의 각각 사례를 듣고, 관련 기준과 법 에 근거해 최선의 안을 도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신 후 고견을 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사례의 구성은 통합 자격취득의 조건을 위해, 교직, 경력, 학력 등의 기준에 따른 입장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설문조사 및 면담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며, 실제 개별 교원의 이야기를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판단기준이 되는 참고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도출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였 사오니, 이에 대한 동의여부와 의견을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장 교사의 이야기]

유치원 A 교사: "나는 유치원 1급 정교사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모두 가졌는데, 보육교사 자격만 있는 어린이집 교사와 자격이 같아진다고 요?"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거나 교직을 이수한 사람만할 수 있어요.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아동학과를 졸업하거나 학점은행제로보육 관련 교과목 17개만 들어도 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교직과목도 듣지않고, 온라인 강의로 쉽게 자격을 딴 사람들과 내가 똑같은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유치원 B 교사: "나는 교사경력 총 6년이지만 아직 유치원 2급 정교사에 요. 똑같이 6년 경력으로도 어린이집에서는 원장 자격을 받는다던데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은 6년 이상 근무해도 1급 정교사 자격을 대부분 못 받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어린이집 선생님은 6년 교사로 근무하고 난 후에 보육교사 1급도 아니고 어린이집 원장이 되었어요. 같은 경력이라도 자격이 다른 게 현실이에요. 나는 아직 1급 정교사 자격도 못 받았는데 현재 자격으로 통합자격을 일률적으로 준다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C 교사: "나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은 없지만 전문성을 갖췄는데 통합기관 교사 자격에 합당하지 않다고요?"

나는 보육교사 경력 4년 차이지만 우수한 대학의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박사과정을 다니며 교사로서 전문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어요! 개정 누리과정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도 듣고, 유아반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학습공동체도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비록 교직을 듣지는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영유아를 깊이 알고 잘 교육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유치원 교사가보육교사보다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학력에 대한 고려없이 자격만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 참고자료]

	유치원 교사 자격		보육교사 자격
유치원 준교사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 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 정을 수료한 사람
2급 정교사	①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전공 50학점, 교직 22학점) 또는 ② 전문대 이상 졸업 + 재학중 보육 및 교직학점 취득 또는 ③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석사(유치원 교육과정 전공) 또는 ④ 유치원 준교사 + 2년 교육경력 + 자격연수 이수자	보육교사 2급	①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②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7과목 51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서람

	유치원 교사 자격		보육교사 자격
1급 정교사	① 2급자격 + 3년 교육경력 +자격연수 (90시간 이상) ② 2급자격 + 대학원 교육과 석사(유치원 교육과정 전공) + 1년 교육경력	보육교사 1급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②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 입학 전에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도 인정. 단, 대학원 재학기준 중 보육업무 경력 인정 불가

5. 다음의 입장을 들으며, 교사 자격통합을 위해 교직 이수여부, 승급 연차 및 연수시간, 현직경력 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건은 무 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이야기를 읽고 교사의 자격통합 시 필요한 조건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통합자격 취득의 조건		동의	여부	
1. 교사 자격 통합 시에도 교직을 이	전혀 동의안함	부분적 으로 동의안함	부분적 으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수해, 교원으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	를 구체적	으로 적어	 주세요]
2. 유치원 준교사와 보육교사 3급 자 격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전혀 동의안함	부분적 으로 동의안함	부분적 으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하다. 특히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보육교 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 이유	 를 구체적	으로 적어	주세요]
3. 교사 자격 통합 시에는 유치원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소요한 시간(3년 이상+자격	전혀 동의안함	부분적 으로 동의안함	부분적 으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연수 시간) 만큼의 경력을 감안해 인정할 필요가 있다. 즉, 유치원 교 사 경력이 3년 이상이라면 법에 규 정된 바와 같이 자격연수(90시간 이상)를 이수하고 1급 정교사로 승 급하도록 한다. 나아가 유치원 교사 경력이 6년 이상이라면 자격연수(90 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유치원 원감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다.(보육교사	교사 자	를 구체적 격 통합 - 것이 바	시 경력을	: 어떻게
는 신청을 통한 자격검정 으로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경력이면 동일 자격 취득이 가능한 상황임)				

통합자격 취득의 조건		동의	여부	
4. 교사 자격 통합 시에는 보육교사 의 학력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즉, 유치원 자격 취득 시 대학원	전혀 동의안함	부분적 으로 동의안함	부분적 으로 동의함	전적 <u>으로</u> 동의함
학위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 므로 보육교사 학력이 대학원 이 상이면 이를 경력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교사 자	를 구체적 격 통합 - 것이 바	시 학력을	- 어떻게

[원감의 이야기]

사립유치원 A 원감: "나는 1급 정교사가 되고 나서도 10년을 기다려이게야 원감 자격을 땄는데, 어린이집 원감 자격을 경력 3년이면 준다고요?"

어린이집에 원감이 있어야 한다는건 나도 동의해요. 법에 원감이라는 직급은 없지만 실제 어린이집에서 원감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고 실제 필요하니까요. 그치만 지금까지 법 규정대로 유치원 교사 1급 자격받고 3년 지나바로 유치원 원감이 되신 분은 한분도 없을걸요? 실제 유치원 교사 1급 자격도 3년 만에 받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원감이 되려면 실제 교육경력이 훨씬 더 많은 죠.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들은 3년 만에 바로바로 상위자격을 딴다고 들었는데 유치원과 똑같이 어린이집 원감을 1급보육교사 자격이 있다고 3년 지나면 원감 자격을 딸 수 있게 법을 만드는건 말이 안되죠. 법과 달리 실제로 지금껏 쌓아온 교육경력이 차이가 있잖아요.

어린이집 B 원장(원감대상자): "원장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원감이 된다고요?"

어린이집 1급 교사 자격에 3년 실무경력을 채워서 원장자격 연수받고 이제 막 원장이 되는지 알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유치원 1급 교사 자격이 있고 경력 3년이 되야 원감자격이라고 어린이집도 이제부터 원장이 안되고 원감부터 하라는건데. 그럼 지금 1년차, 2년차 원장하시는 분들도 다원감이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몇일차이로 되고 안되고가 말이 안되요. 그럴 거면 저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서 정교사 1, 2급 자격도 있고 현장경력도 6년이나 있었는데, 보육교사 자격증은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고 경력단절되서 나중에 어린이집 쪽으로 이직을 하니까 경력인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보육교사 1급 자격 따고 다시 경력을 채워서 원장 되려고 했는데 그게 안된다면, 자격통합도 되었으니 이전에 유치원 정교사 자격에 현장경력 6년으로 적용하면 원감자격을 갖춘거고, 어린이집 경력도 추가 있으니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있는거잖아요!

사립유치원 C 원감 연수 대상자: "원감 자격연수를 받는데 돈을 내야한다고요? 지금까지 정부에서 연수비용을 100% 지원해줬는데, 어린이집 원감

연수 때문에 내라는건 말이 안되죠!"

유치원 원감 연수는 정부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주다보니 매해 예산범위안에서 연수대상자 수가 조정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한참을 기다려이제 막 원감 연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돈을 내라니요. 원감자격 통합해야해서 어린이집에 원감 만들고 연수해야 하는데 정부가 예산이 없다고 갑자기 유치원 쪽에 자비 충당? 그건 말이 안되지요! 물론 100% 자비는 아니지만 30%든, 50%든 어린이집 원감과 통합자격을 한다고 지금부터 우리보고 돈을 내라는건 불공평해요. 그동안 어린이집 승급 교육이 교육대상자가일부 충당했다고 해서 그걸 우리쪽에도 적용한다는거에 동의할 수 없네요!

[※ 참고 법률]

유치원 원감 자격 관련 규정	어린이집 원감 자격 관련 규정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별표1 원감자격기준 ①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 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 교육을 받은 자, ②유치원 정교사(2 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현재 원감 자격 직급이 없어 관련 규정은 없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참고] 현재 소정의 재교육은 자격연 수 90시간 적용 중임	[참고] 현재 원장사전직무교육 이수(80시간) 후 어린이집 원장자격을 받을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50조(경력의 인정) ②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 수업과정을 운영하

유치원 원감 자격 관련 규정	어린이집 원감 자격 관련 규정		
	고 있는 유치원을 말한다)에 근무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u>보육교사의 자격</u> 을 <u>가진 자에 대하여는</u> 유치원에서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따른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그 단 0 단 기 .		

6. 현장교원 이야기와 법 규정을 참고하여, 원감 자격 통합 시(어린이 집 원감자격 직급 신설 포함) 경력,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통합의 조건		동의정도			
1.	어린이집 원감 자격(또는 통합 영	전혀 동의안함	부분적 으로 동의안함	부분적 으로 동의함	전적 <u>으</u> 로 동의함	
	유아 원감 자격) 신설 시 유치원의					
원감 자격 조건과 동일하게 한다.		[그 이유	를 구체적	으로 적어	[주세요]	
2.	어린이집 1급 정교사에 교육경력 3년이상이면 기존의 어린이집 원	전혀 동의안함	부분적 으로 동의안함	부분적 으로 동의함	전적 <u>으로</u> 동의함	
장 자격 대상자의 기준에서 원감 자격 기준으로 조정한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3.	3. 어린이집 원감 자격(또는 통합 영 유아 원감 자격) 신설 시 보육교 사 자격증 소지 없이 유치원에서		부분적 으로 동의안함	부분적 으로 동의함	전적 <u>으로</u> 동의함	
일한 경력이나 자격을 모두 인정 해준다,		[그 이유	_ 를 구체적	으로 적어	 주세요]	

자격 통합의 조건		동의	정도	
4. 어린이집 원감 자격(또는 통합 영 유아 원감 자격) 신설 후 모든 원 감자격연수 비용을 일부 자비부담	전혀 동의안함	부분적 으로 동의안함	부분적 으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으로 전환한다.	[그 이유	들 구체적	으로 적어	수세요]

[원장의 이야기]

사립유치원 A 원장: "나는 교육경력 30년에 10년차 원장인데, 보육경력 10년도 안된 어린이집 원장하고 자격이 같아진다고요?"

유치원 원장은 법 규정과 다르게 실제 원감 이후 3년 만에 승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반면 어린이집은 규정에 맞게 원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유치원에 있는 교사도 어린이집 원장자격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나랑 어린이집 원장이 같다고요? 원장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은 같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B 원장: "나는 원장경력 3년차, 보육경력 총 10년이지만 전 문성을 갖췄는데 통합기관 원장 자격에 합당하지 않다고요?"

나는 원장경력 3년차, 보육경력 총 10년되었어요. 우수한 대학의 석사를 졸업해 규모가 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여 전문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자부해요! 영아를 돌보는 전문성도 교직의 중요성 못지 않아요. 유치원 원장이 교직 들었다고 뛰어난건가요? 유치원 원장도 2-3년제 졸업자도 많지 않나요? 왜 어린이집 원장을 무시하나요?"

어린이집 C 원장: "나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경력이 다 있는 총 25년, 10년차 어린이집 원장이에요"

교직을 들었으니 교원으로서의 전문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미리 어린

이집으로 이직하는 바람에 원감자격을 갖기 못했어요. 그래도 어린이집 국 공립 원장을 하며 원장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어요. 그런데 통합기관 원장자격 갖는게 무리라고요?

[※ 참고 규정]

유치원 기준	어린이집 기준
① 원감자격 + 3년 교육경력 + 자격연수(180시간 이상) 또는 ② 학식·덕망 높은 자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기준 해당자*) * (전문대졸 또는 동등학력) ▲5급 이상 공무원+5년이상 교육교육행 정경력 또는 ▲장학관(연구관)+5 년이상 교육교육행정경력 또는 ▲9년이상 교육교육행정경력, (학	■일반기준 ①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하 경력)' ②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③ 유치원 원장 자격 ④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⑤ 사회복지 1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⑥ 간호사 면허 취득 후 7년 이상 경력 ⑦ 국가 또는 지자체 7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경력+ 사전직무연수(80시간)

7. 현장교원 이야기와 법 규정을 참고하여, 원장 자격 통합 시(어린이 집 원감자격 직급 신설 포함) 경력,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통합의 조건	동의정도			
1.	원장자격 통합 시에도 교직을 이	전혀 동의안함	부분적 으로 동의안함	부분적 으로 동의함	전적 <u>으</u> 로 동의함
	수해, 교원으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	를 구체적	으로 적어	[주세요]
2.	원장자격 통합 시에는 유치원 원장이 원감자격을 취득하는데 소요	전혀 동의안함	부분적 으로 동의안함	부분적 으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한 시간(3+3년+자격연수 시간) 만				
큼 어린이집 원장의 경력을 감안 해 인정할 필요가 있다. 즉, 어린 이집 원장 자격 3년이라면 자격통 합 시 원감자격에 준하므로, 이에 해당되는 특별교원양성과정을 수 강하도록 한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3. 원장자격을 통합하는데, 현직에서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하다. 유		전혀 동의안함	부분적 으로 동의안함	부분적 <u>으로</u> 동의함	전적 <u>으로</u> 동의함
	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경력이 20				
년이상인 원장은 영유아학교에 필 요한 교육이수 후 자격을 전환해 주도록 한다.		[그 이유	를 구체적	으로 적어	주세요]

8.	기타	현장교원	이야기에	담지	못한	사례나	판단기준에	대한	고견
	들려?	주시면 감사	사하겠습니	다.					

[응답자 배경]

1.	성별: 남 () 여 ()
2.	연령: 만 세
3.	최초 자격취득 학력: ① 보육교사교육원 ② 2-3년제 전문대학 ③ 4년제 학사학위 ④ 석사학위 이상
4.	최초 자격취득 전공: ① 아동(심리)학 ② 보육학 ③ 유아교육(학) ④ 사회복지 ⑤ 기타()
5.	최종 학력: ① 최초 자격취득 학력과 동일 ② 4년제 학사학위 취득 ③ 석사학위 취득 ④ 박사학위 취득
6.	현직 교육보육 경력: 총 경력 어린이집 경력 년, 유치원 경력 년 교육청(또는 교육부) 전문직 경력 년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보육진흥원 경력 년
7.	현재 근무지 ① 대학교원 ()② 교육청 전문직 ()③ 육아종합지원센터 () ④ 공립유치원 ()⑤ 유관 연구소 ()⑥ 기타 ()

※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유보통합 이후 유치원·어린이집 승급·연수체계 마련 연구



